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문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최동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제 출 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Contents

I	평가개요	1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3
1)	평가 목적	3
2)	평가 추진방향	3
2.	평가 개요	4
3.	평가단계와 절차	7
II	평가지표	9
1.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11
1)	지표체계	11
2)	배점기준	11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13
2.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45
1)	지표체계	45
2)	배점기준	45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47
3.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87
1)	지표체계	87
2)	배점기준	87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89

Ⅲ 청소년수련시설 실태분석 111

1. 청소년수련원 실태분석	113
1) 평가대상 시설 주요 현황	113
2)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	118
2. 유스호스텔 실태분석	122
1) 평가대상 시설 주요 현황	122
2)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	127
3. 청소년야영장 실태분석	131
1) 평가대상 시설 주요 현황	131
2)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	135

Ⅳ 평가결과 분석 139

1. 청소년수련원 평가결과	141
1)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개요	141
2) 시·도별 청소년수련원 평가결과	142
3)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결과	143
4)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144
2. 유스호스텔 평가결과	174
1)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개요	174
2) 시·도별 유스호스텔 평가결과	175
3)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결과	176
4)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177

3. 청소년야영장 평가결과	210
1)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개요	210
2) 시·도별 청소년야영장 평가결과	211
3)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결과	212
4)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213

V 요약 및 결론 237

1. 요약	239
2. 결론	253

표 목차

표-Ⅱ-1-1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11
표-Ⅱ-1-2 운영 및 관리체계(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3
표-Ⅱ-1-3 운영 및 관리체계(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14
표-Ⅱ-1-4 운영 및 관리체계(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15
표-Ⅱ-1-5 운영 및 관리체계(회계 관리의 체계성)	16
표-Ⅱ-1-6 운영 및 관리체계(시설의 홍보 수준)	17
표-Ⅱ-1-7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18
표-Ⅱ-1-8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의 안전 관리)	19
표-Ⅱ-1-9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21
표-Ⅱ-1-10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22
표-Ⅱ-1-1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24
표-Ⅱ-1-12 인사 및 조직(직원 확보의 수준)	25
표-Ⅱ-1-13 인사 및 조직(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26
표-Ⅱ-1-14 인사 및 조직(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27
표-Ⅱ-1-15 인사 및 조직(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30
표-Ⅱ-1-16 인사 및 조직(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31
표-Ⅱ-1-17 인사 및 조직(직원의 복리후생)	32
표-Ⅱ-1-18 시설 및 안전(시설기준)	33
표-Ⅱ-1-19 시설 및 안전(생활관의 쾌적성)	35
표-Ⅱ-1-20 시설 및 안전(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36
표-Ⅱ-1-21 시설 및 안전(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37
표-Ⅱ-1-22 시설 및 안전(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40
표-Ⅱ-1-23 시설 및 안전(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41
표-Ⅱ-1-24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및 관리)	42

표-Ⅱ-1-25 시설운영 발전(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43
표-Ⅱ-1-26 시설운영 발전(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44
표-Ⅱ-2-1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45
표-Ⅱ-2-2 운영 및 관리체계(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47
표-Ⅱ-2-3 운영 및 관리체계(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49
표-Ⅱ-2-4 운영 및 관리체계(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50
표-Ⅱ-2-5 운영 및 관리체계(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51
표-Ⅱ-2-6 운영 및 관리체계(회계관리의 체계성)	52
표-Ⅱ-2-7 운영 및 관리체계(시설의 홍보 수준)	53
표-Ⅱ-2-8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54
표-Ⅱ-2-9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의 안전관리)	56
표-Ⅱ-2-10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8
표-Ⅱ-2-1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지역 여행정보 제공)	59
표-Ⅱ-2-12 인사 및 조직(직원 확보의 수준)	60
표-Ⅱ-2-13 인사 및 조직(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61
표-Ⅱ-2-14 인사 및 조직(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62
표-Ⅱ-2-15 인사 및 조직(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65
표-Ⅱ-2-16 인사 및 조직(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66
표-Ⅱ-2-17 시설 및 안전(연간 시설 가동률)	69
표-Ⅱ-2-18 시설 및 안전(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70
표-Ⅱ-2-19 시설 및 안전(시설개선 노력)	71
표-Ⅱ-2-20 시설 및 안전(숙박관리의 적절성 - 숙박실의 적정성)	72
표-Ⅱ-2-21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73

표-Ⅱ-2-22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74
표-Ⅱ-2-23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 -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운영)	75
표-Ⅱ-2-24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76
표-Ⅱ-2-25 시설 및 안전(시설 운영기준 준수)	77
표-Ⅱ-2-26 시설 및 안전(생활지도 기준 준수)	78
표-Ⅱ-2-27 시설 및 안전(숙박정원 기준 준수 여부)	79
표-Ⅱ-2-28 시설 및 안전(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80
표-Ⅱ-2-29 시설 및 안전(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81
표-Ⅱ-2-30 시설 및 안전(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82
표-Ⅱ-2-31 시설 및 안전(시설 청결도 및 위생상태)	83
표-Ⅱ-2-32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및 관리)	84
표-Ⅱ-2-33 시설운영 발전(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85
표-Ⅱ-2-34 시설운영 발전(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86
표-Ⅱ-3-1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87
표-Ⅱ-3-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89
표-Ⅱ-3-3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90
표-Ⅱ-3-4 조직 및 인력(시설발전계획)	91
표-Ⅱ-3-5 조직 및 인력(시설홍보수준)	92
표-Ⅱ-3-6 조직 및 인력(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93
표-Ⅱ-3-7 조직 및 인력(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94
표-Ⅱ-3-8 조직 및 인력(지도자의 윤리성)	97
표-Ⅱ-3-9 시설 및 안전(연간 시설 가동률)	98
표-Ⅱ-3-10 시설 및 안전(활동시설 설치)	99
표-Ⅱ-3-11 시설 및 안전(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100

표-Ⅱ-3-12 시설 및 안전(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101
표-Ⅱ-3-13 시설 및 안전(대피시설 설치 상태)	102
표-Ⅱ-3-14 시설 및 안전(비상설비 설치 상태)	103
표-Ⅱ-3-15 시설 및 안전(긴급 상황 대비 상태)	104
표-Ⅱ-3-16 시설 및 안전(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105
표-Ⅱ-3-17 시설 및 안전(긴급후송대책 구축)	106
표-Ⅱ-3-18 시설 및 안전(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107
표-Ⅱ-3-19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실시 여부)	108
표-Ⅱ-3-20 시설 및 안전(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109
표-Ⅱ-3-21 시설 발전 노력(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110
표-Ⅲ-1-1 시·도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113
표-Ⅲ-1-2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주체별 현황	115
표-Ⅲ-1-3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기간별 현황	116
표-Ⅲ-1-4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별 현황	117
표-Ⅲ-1-5 청소년수련원 건물 동수	118
표-Ⅲ-1-6 청소년수련원 부지면적	118
표-Ⅲ-1-7 청소년수련원 연건축면적	118
표-Ⅲ-1-8 청소년수련원 연간운영일수	119
표-Ⅲ-1-9 청소년수련원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119
표-Ⅲ-1-10 청소년수련원 직원현황	120
표-Ⅲ-1-11 청소년수련원 지도사 1급 수	120
표-Ⅲ-1-12 청소년수련원의 지도사 2급 수	121
표-Ⅲ-1-13 청소년수련원의 지도사 3급 수	121

표-Ⅲ-2-1 시·도별 유스호스텔 현황	122
표-Ⅲ-2-2 유스호스텔의 운영주체별 현황	124
표-Ⅲ-2-3 유스호스텔의 운영기간별 현황	125
표-Ⅲ-2-4 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별 현황	126
표-Ⅲ-2-5 유스호스텔 건물 동수	127
표-Ⅲ-2-6 유스호스텔 부지면적	127
표-Ⅲ-2-7 유스호스텔 연건축면적	128
표-Ⅲ-2-8 유스호스텔 연간 운영일수	128
표-Ⅲ-2-9 유스호스텔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128
표-Ⅲ-2-10 유스호스텔 직원 현황	129
표-Ⅲ-2-11 유스호스텔 지도사 1급 수	129
표-Ⅲ-2-12 유스호스텔 지도사 2급 수	130
표-Ⅲ-2-13 유스호스텔 지도사 3급 수	130
표-Ⅲ-3-1 시·도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131
표-Ⅲ-3-2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주체별 현황	132
표-Ⅲ-3-3 청소년야영장의 운영기간별 현황	133
표-Ⅲ-3-4 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별 현황	134
표-Ⅲ-3-5 청소년야영장 건물 동수	135
표-Ⅲ-3-6 청소년야영장 부지면적	135
표-Ⅲ-3-7 청소년야영장 연건축면적	135
표-Ⅲ-3-8 청소년야영장 연간운영일수	136
표-Ⅲ-3-9 청소년야영장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136
표-Ⅲ-3-10 청소년야영장 직원현황	136

표-Ⅲ-3-11 청소년야영장 지도사 1급 수	137
표-Ⅲ-3-12 청소년야영장 지도사 2급 수	137
표-Ⅲ-3-13 청소년야영장 지도사 3급 수	138
표-Ⅳ-1-1 청소년수련원 평가등급별 기준 및 해당시설 수	141
표-Ⅳ-1-2 시·도별 평가등급별 청소년수련원 시설 수	142
표-Ⅳ-1-3 청소년수련원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143
표-Ⅳ-1-4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144
표-Ⅳ-1-5 청소년수련원 전체 평가지표 평가결과	145
표-Ⅳ-1-6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47
표-Ⅳ-1-7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48
표-Ⅳ-1-8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49
표-Ⅳ-1-9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0
표-Ⅳ-1-10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51
표-Ⅳ-1-11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52
표-Ⅳ-1-12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3
표-Ⅳ-1-13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54
표-Ⅳ-1-14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55
표-Ⅳ-1-15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6
표-Ⅳ-1-16 프로그램 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57
표-Ⅳ-1-17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58
표-Ⅳ-1-18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9
표-Ⅳ-1-19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0
표-Ⅳ-1-20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61
표-Ⅳ-1-21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62

표-Ⅳ-1-22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3
표-Ⅳ-1-23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64
표-Ⅳ-1-24 시설환경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65
표-Ⅳ-1-25 시설환경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6
표-Ⅳ-1-26 시설환경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67
표-Ⅳ-1-27 안전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68
표-Ⅳ-1-28 안전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9
표-Ⅳ-1-29 안전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70
표-Ⅳ-1-30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71
표-Ⅳ-1-31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72
표-Ⅳ-1-32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73
표-Ⅳ-2-1 유스호스텔 평가등급별 기준 및 해당시설 수	174
표-Ⅳ-2-2 유스호스텔 시·도별 평가등급별 시설 수	175
표-Ⅳ-2-3 유스호스텔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176
표-Ⅳ-2-4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177
표-Ⅳ-2-5 유스호스텔 전체 평가지표 평가결과	178
표-Ⅳ-2-6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0
표-Ⅳ-2-7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81
표-Ⅳ-2-8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82
표-Ⅳ-2-9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3
표-Ⅳ-2-10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84
표-Ⅳ-2-11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85
표-Ⅳ-2-12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6
표-Ⅳ-2-13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87

표-Ⅳ-2-14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88
표-Ⅳ-2-15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9
표-Ⅳ-2-16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0
표-Ⅳ-2-17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91
표-Ⅳ-2-18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92
표-Ⅳ-2-19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3
표-Ⅳ-2-20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94
표-Ⅳ-2-21 직원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95
표-Ⅳ-2-22 직원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6
표-Ⅳ-2-23 직원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97
표-Ⅳ-2-24 시설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98
표-Ⅳ-2-25 시설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9
표-Ⅳ-2-26 시설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0
표-Ⅳ-2-27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01
표-Ⅳ-2-28 시설운영 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02
표-Ⅳ-2-29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3
표-Ⅳ-2-30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04
표-Ⅳ-2-31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05
표-Ⅳ-2-32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6
표-Ⅳ-2-33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07
표-Ⅳ-2-34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08
표-Ⅳ-2-35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9
표-Ⅳ-3-1 청소년야영장 평가등급별 기준 및 해당시설 수	210
표-Ⅳ-3-2 시·도별 평가등급별 청소년야영장 수	211

표-Ⅳ-3-3 청소년야영장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212
표-Ⅳ-3-4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213
표-Ⅳ-3-5 청소년야영장 전체 평가지표 평가결과	214
표-Ⅳ-3-6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16
표-Ⅳ-3-7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17
표-Ⅳ-3-8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18
표-Ⅳ-3-9 프로그램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19
표-Ⅳ-3-10 프로그램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0
표-Ⅳ-3-11 프로그램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21
표-Ⅳ-3-12 조직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22
표-Ⅳ-3-13 조직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3
표-Ⅳ-3-14 조직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24
표-Ⅳ-3-15 인력구성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25
표-Ⅳ-3-16 인력구성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6
표-Ⅳ-3-17 인력구성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27
표-Ⅳ-3-18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28
표-Ⅳ-3-19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9
표-Ⅳ-3-20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30
표-Ⅳ-3-21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31
표-Ⅳ-3-22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32
표-Ⅳ-3-23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33
표-Ⅳ-3-24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34
표-Ⅳ-3-25 시설발전 노력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35
표-Ⅳ-3-26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36

그림 목차

[그림 Ⅲ-1-1] 시·도별 청소년수련원 현황(단위 : 기관수)	114
[그림 Ⅲ-1-2] 운영주체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115
[그림 Ⅲ-1-3] 운영기간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116
[그림 Ⅲ-1-4] 위탁기관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117
[그림 Ⅲ-1-5] 지역별 평가대상 유스호스텔 수(단위 : 기관수)	123
[그림 Ⅲ-1-6] 운영주체별 유스호스텔 현황	124
[그림 Ⅲ-1-7] 운영기간별 유스호스텔 현황	125
[그림 Ⅲ-1-8] 위탁기간별 유스호스텔 현황	126
[그림 Ⅲ-1-9] 지역별 평가대상 청소년야영장 수(단위 : 기관수)	131
[그림 Ⅲ-1-10] 운영주체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132
[그림 Ⅲ-1-11] 운영기간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133
[그림 Ⅲ-1-12] 위탁기간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134
[그림 Ⅳ-1-1] 청소년수련원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비율	143
[그림 Ⅳ-1-2] 기관 운영계획의 평가결과	147
[그림 Ⅳ-1-3]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48
[그림 Ⅳ-1-4]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49
[그림 Ⅳ-1-5]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0
[그림 Ⅳ-1-6]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51
[그림 Ⅳ-1-7]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52
[그림 Ⅳ-1-8]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3
[그림 Ⅳ-1-9]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54
[그림 Ⅳ-1-10]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55
[그림 Ⅳ-1-11]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6
[그림 Ⅳ-1-12] 프로그램 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57

[그림 IV-1-13]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58
[그림 IV-1-14]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59
[그림 IV-1-15]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0
[그림 IV-1-16]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61
[그림 IV-1-17]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62
[그림 IV-1-18]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3
[그림 IV-1-19]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64
[그림 IV-1-20] 시설환경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65
[그림 IV-1-21] 시설환경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6
[그림 IV-1-22] 시설환경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67
[그림 IV-1-23] 안전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68
[그림 IV-1-24] 안전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69
[그림 IV-1-25] 안전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70
[그림 IV-1-26]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71
[그림 IV-1-27]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72
[그림 IV-1-28]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73
[그림 IV-2-1] 유스호스텔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비율	176
[그림 IV-2-2]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0
[그림 IV-2-3]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81
[그림 IV-2-4]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82
[그림 IV-2-5]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3
[그림 IV-2-6]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84
[그림 IV-2-7]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85
[그림 IV-2-8]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6

[그림 IV-2-9]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87
[그림 IV-2-10]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88
[그림 IV-2-11]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89
[그림 IV-2-12]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0
[그림 IV-2-13]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91
[그림 IV-2-14]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92
[그림 IV-2-15]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3
[그림 IV-2-16]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94
[그림 IV-2-17] 직원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95
[그림 IV-2-18] 직원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6
[그림 IV-2-19] 직원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197
[그림 IV-2-20] 시설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198
[그림 IV-2-21] 시설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9
[그림 IV-2-22] 시설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0
[그림 IV-2-23]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01
[그림 IV-2-24] 시설운영 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02
[그림 IV-2-25]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3
[그림 IV-2-26]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04
[그림 IV-2-27]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05
[그림 IV-2-28]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6
[그림 IV-2-29]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07
[그림 IV-2-30]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08
[그림 IV-2-31]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9
[그림 IV-3-1] 청소년아영장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비율	212

[그림 IV-3-2]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16
[그림 IV-3-3]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17
[그림 IV-3-4]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18
[그림 IV-3-5] 프로그램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19
[그림 IV-3-6] 프로그램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0
[그림 IV-3-7] 프로그램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21
[그림 IV-3-8] 조직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22
[그림 IV-3-9] 조직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3
[그림 IV-3-10] 조직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24
[그림 IV-3-11] 인력구성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25
[그림 IV-3-12] 인력구성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6
[그림 IV-3-13] 인력구성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27
[그림 IV-3-14]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28
[그림 IV-3-15]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29
[그림 IV-3-16]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30
[그림 IV-3-17]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31
[그림 IV-3-18]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32
[그림 IV-3-19]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33
[그림 IV-3-20]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234
[그림 IV-3-21] 시설발전 노력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235
[그림 IV-3-22]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36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개요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2. 평가 개요
3. 평가단계와 절차

I

평가개요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 평가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유도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 2
 - * 2014년 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시·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18. 6. 13일부터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평가 추진방향

- 현재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해당 평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차 개별 통지 후, 이의사항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

2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시설 : 289개소(수련원 158개, 유스호스텔 98개, 야영장 33개, '18. 12. 31기준)

○ 평가대상 기간 : '18 1. 1 ~ '19. 12. 31(2년)

* '18년도에 등록된 시설은 등록시점부터 '19.12.31까지 운영실적 평가(1년 이상 경과한 시설)

○ 평가분야 : 운영 및 관리,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운영 발전의 총 5개 분야

○ 평가방법 :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서면평가 :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은 평가편람에 수록된 지침과 기준 등을 참고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제출(근거자료가 많은 것은 리스트만 작성 후 현장에서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표와 근거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현장방문 : 평가는 제출된 자체평가표의 사실 여부 확인과 서면평가 자료에 대한 근거서류 및 현장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준비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보충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직원에 대한 면접 수행

• 현장방문 평가의 절차 : ① 시설대표자 및 운영대표자 면담, ② 시설현황 브리핑, ③ 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

○ 평가등급 : 시설별 총 점수 기준으로 5단계 등급(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으로 부여

평가등급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100점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고 발생(시설이 붕괴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의 처벌(분)을 받은 경우



조정 및 감점 기준

구분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20조의2제1항 사건발생	감점 또는 등급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70조(벌칙)	유죄확정시 등급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72조(과태료)	1건당 1점 감점

-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유예 가능

○ 종합 안전점검 등과 연계

- 6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 시 미흡이하*로 조정
- 1개 분야 부적합 : 미흡 등급,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매우미흡 등급
- 부적합 판정시설 중 개선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종합평가 종료이전에 개선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분야 점검기관에서 재점검을 통하여 개선이 확인(21.1월~6월)된 경우 등급 조정

○ 평가거부의 처리

-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미제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함

○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 (지자체)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 실시

- 미흡·매우미흡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 (여가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년 2회 이상)
 -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 미흡이하시설의 컨설팅 실시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유도

- 최우수등급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 최우수등급 시설 인증 표식 게시(2년간)
 -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등급 시설 중에서 선정)

3 평가단계와 절차

○ 주요 단계 및 일정

평가준비 단계	평가위원회 구성	2020.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평가편람 개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		
평가실시 단계	자체평가표 작성·제출	2020.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표 및 자료 제출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 자체평가표 미제출 시설 평가참여 독려
	↓		
	평가위원 설명회 및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202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설명회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		
	현장평가 실시 (1차)	2020.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차)	2020.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현장평가 실시 (2차)	2020. 12~ 202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차)	202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현장평가 실시 (3차)	20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차)	20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종합안전점검결과 반영 및 평가결과 공개	202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반영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 단계	평가 결과 추가 공개(2차) 및 후속조치	202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평가결과 공개 ■ 최우수시설 현판제작 및 발송 ■ 최종보고서 작성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지표

1.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2.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3.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II

평가지표

1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9개 항목 - 25개 평가지표
-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II-1-1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1. 운영 및 관리 체계 (11점)	1.1 기관 운영 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4	2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 체계	7	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4	2	
			1.2.2 회계 관리의 체계성	5	0.8	4	
			1.2.3 시설의 홍보 수준	5	0.2	1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20점)	2.1 청소년 이용	8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5	0.6	3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1.0	5	●
2.2 프로그램 운영		13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5	0.8	4	
			2.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5	0.8	4	●
			2.2.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5	1.0	5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3. 인사 및 조직 (29점)	3.1 직원 확보	13	3.1.1 직원 확보의 수준	5	0.6	3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1.0	5	●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1.0	5	●
	3.2 직원 교육 및 복지	15	3.2.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5	1.0	5	
			3.2.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1.0	5	●
			3.2.3 직원의 복리후생	5	1.0	5	
4. 시설 및 안전 (30점)	4.1 시설환경	9	4.1.1 시설기준	5	1.0	5	●
			4.1.2 생활관의 쾌적성	5	0.8	4	
	4.2 안전관리	21	4.2.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8	4	
			4.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1.0	5	●
			4.2.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0.8	4	●
			4.2.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8	4	●
			4.2.5 안전교육 및 관리	5	0.8	4	●
5. 시설운영 발전 (10점)	5.1 시설운영 발전	10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1.0	5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II-1-2 운영 및 관리체계(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의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9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점수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 ~ 최하 1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2019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정량·정성)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정책과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2) : 6차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목표와 연계해서 중·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만 인정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수련원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19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수련원의 발전계획 기간이 2019년 12월로 종료되어 2018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계획의 승인, 예산반영부분을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것 					
	평가자료					
	(중·장기) 발전계획서, 수탁계획서					

표-Ⅱ-1-3 운영 및 관리체계(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청소년수련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2019년 연간 운영계획																																				
평정점수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 ~ 최하 1점)																																				
평가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 colspan="5">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2019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지원 및 청소년활동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건의사항 공문서로 만든 자료 비교 확인 - 청소년 만족도, 욕구조사 반영 여부 확인 • 연간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계획이 아닌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평가자료	연간(2018, 2019)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서																																			

표-II-1-4 운영 및 관리체계(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 규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13개 이상 규정 보유
	우수(4) 11 ~ 12개 규정 보유
	보통(3) 9 ~ 10개 규정 보유
	미흡(2) 7 ~ 8개 규정 보유
	매우미흡(1) 6개 이하 규정 보유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의 유형 <p>① 취업규칙, ② 직제규정, ③ 인사관리규정, ④ 보수규정, ⑤ 복무규정, ⑥ 복리후생관리규정, ⑦ 회계 및 예산규정, ⑧ 사무(문서)관리규정, ⑨ 위임전결규정, ⑩ 여비규정, ⑪ 계약직관리규정, ⑫ 물품(비품)관리규정, ⑬ 시설관리규정, ⑭ 기타 등</p>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용시설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운영규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화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취업규칙(관할노동관서에 신고된 것 만 인정) 작성 보유 시 인사, 보수, 복무, 복리규정 보유 인정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p>[평가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으로 설립된 시설은 자체 운영규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지자체 직영시설, 위탁시설(지자체 공단 위탁 / 지자체 산하 운영법인 위탁 / 청소년단체 위탁 등), 법인운영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규정의 관리 및 이행여부 * 재단 또는 공단 등의 상위 기관 정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인정함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원 운영규정집

표-Ⅱ-1-5 운영 및 관리체계(회계 관리의 체계성)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2 회계 관리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가지 항목 이상 해당 또는 회계법인 감사실시
	우수(4)	4가지 항목이 해당
	보통(3)	3가지 항목이 해당
	미흡(2)	2가지 항목이 해당
	매우미흡(1)	1가지 항목이 해당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평가요소	O . X 여부
	1) 회계 관련 필요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	
	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경영평가 또는 신용평가를 실시하였다		
※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평가요소 상관없이 5점부여 (2년에 1회 감사를 받을 경우 3점부여)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수련원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업무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함	
	-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가 비치 여부와 수입 및 지출 원칙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 및 신문 등 외부에 공개여부를 평가함		
평가자료	회계장부(원장), 회계 및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외부감사실적 자료, 예·결산 자료 등	

표-Ⅱ-1-6 운영 및 관리체계(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3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3가지 항목 해당
	보통(3)	2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1가지 이하 항목 해당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요소항목	O . X 여부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2가지 방법 이상)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 홍보계획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수련원운영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 대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수련원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탈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대상 및 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표-II-1-7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연간전체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이용자 수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70% 이상
	우수(4)	60% 이상 ~ 70% 미만
	보통(3)	50% 이상 ~ 60% 미만
	미흡(2)	40% 이상 ~ 50% 미만
	매우미흡(1)	40% 미만
평가요소	$\frac{2018년 \sim 2019년 \text{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명}}{2018년 \sim 2019년 \text{ 연간 전체이용자 수()명}}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 공간 내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시설 부지 내 전체 공간 대상으로 시설 공간대관, 활동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p>[참고사항] 이용자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p> <p>1) 이용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 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의 수는 연간 숙박자수(이용자)에 산입하지 않음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주체별 범위 : 수련원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 총 이용자 수 산정 : 일자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할 경우 당일 이용자 수가 제외되기 때문) - 산정의 예 : 2018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18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3일 + 100명 × 3일 = 900명 <p>2) 평가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포함하되, 운영시설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별 출석인원을 합산함 - 청소년수련원 내에서 실시된 청소년여울림마당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의 참여 인원은 포함 <p>3) 평가 시 제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 내에 입주한 타 기관 이용자 제외(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 축제, 전시 등 행사 프로그램의 단순 관람객은 제외(실인원 산출 문제 등 고려) -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야외공간의 임의적 이용은 제외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는 경우 인정) - 청소년수련원 외부에서 진행된 캠프, 국제/지역 간 교류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 또는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활동프로그램 참가 인원은 제외함 <p>※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방과후아카데미 출석부 필히 확인</p>	
평가자료	이용현황관리대장,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	

표-II-1-8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의 안전 관리)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활동 실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매우미흡(0)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 교육 실시여부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재활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 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 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 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평가자료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

표-II-1-9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총점 10점		
	우수(4)	총점 6점 ~ 9점		
	보통(3)	총점 3점 ~ 5점		
	매우미흡(1)	총점 0점 ~ 2점		
평가요소	매뉴얼 구비여부	x	내용의 체계성	=
	매뉴얼이 모두 없음 0점		형식적 1점	
	매뉴얼을 일부 구비 3점		체계적 2점	
	매뉴얼을 모두 구비 5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과 체계성을 평가함 •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은 2박3일 또는 1박2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3시간 또는 경우에 따라 4~6시간 이상의 단위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입소식, 퇴소식 포함)을 말하며 그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중 60%~99% 구비 시 '일부', 60% 미만 시 '없음'으로 적용 - 형식적 수준이란 1~2매 내외의 개요수준의 매뉴얼을 의미함 - 체계적 수준이란 함은 수련활동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도안 및 워크시트, 기자재 및 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함(예 : 인증프로그램의 경우 이에 해당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안 포함내용 : 활동시기, 대상·인원, 소요시간, 활동목표 및 활동개요, 준비물, 활동단계 (도입·전개·마무리)별 활동내용 및 활동장비, 유의사항, 안전 및 유의사항, 담당자 등 * 다른 직원이 프로그램을 대신 맡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평가자료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현황 및 매뉴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 확인서(선정문서 또는 상장)			

표-Ⅱ-1-10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수련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인증대상 수련활동 모두 인증, 운영
	보통(3)	인증대상 수련활동 일부 인증, 운영
	매우미흡(1)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대상 수련활동(청소년 참가인원 150인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평가기간동안에 1회 이상 운영된 인증수련활동을 대상으로 함 - 인증활동 운영 실적은 e-청소년에 등재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 평가대상 기관에서 인증 받고 운영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동안에 1회 이상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인증수련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

구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평가자료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보고서

표-Ⅱ-1-1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평가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지표	2.2.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배점	2018	2019
	1) 지도인력의 전문성이 있다	3	1.5	1.5
	2) 단위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 분석 실시하였다	2	1.0	1.0
	총점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있는 지도사 기준 : 단위 프로그램 별 전문성 확인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최소 2년 이상 지도경력을 갖춘 자, 혹은 국가검정 자격을 갖춘 자, 해당 프로그램 관련 연수과정 수료(이수)자 - 단위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실시의 경우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서화 하였을 경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프로그램 별 만족도는 전체 수련활동 종료 후 일괄적으로 조사가능 ※ 인터뷰나 면담과 같은 질적 조사도 인정 * 학교단체수련활동의 경우, 학교 측에 제출한 만족도 조사지를 분석한 경우도 인정 단, 만족도 조사지 분석 자료가 없으면 불인정 			
평가자료	단위프로그램현황(인력 포함), 평가 및 연수일지,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참가 현황 및 특이사항 관리대장 등 관련 문서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1 직원 확보의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균 5% 이상	미흡(2)												
	우수(4)	평균 4% ~ 4.9%	매우미흡(1)												
	보통(3)	평균 3% ~ 3.9%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 (A) 전체직원 확보율 $\frac{2018년1월1일 \sim 2019년 12월31일 \text{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text{숙박정원()명}} \times 100 = [\quad] \%$ (B) 정규직원 확보율 $\frac{2018년1월1일 \sim 2019년 12월31일 \text{ 월평균 정규 직원수()명}}{\text{숙박정원()명}} \times 100 = [\quad] \%$ 합계(A+B) = \quad % , 평균(합계/2)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보험종류</th> <th style="width: 50%;">내용</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d rowspan="4">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 </tr> <tr> <td>건강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고용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범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 계약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2018년 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계약직원 : 일정한 기간(2년 이하 모두 포함)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 제외함 * 수련원 내 간접계약직원(위생, 식당, 시설관리 등도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수련원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은 직원대상범위에서 제외 * 기타 직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함 			보험종류	내용	비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보험종류	내용	비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평가자료	연간 직원명단 및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 보험가입증명서, 지도사자격증														

표-Ⅱ-1-13 인사 및 조직(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수용정원에 부합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		
	매우미흡(0)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원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 제외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배치 청소년지도사 제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PM / SM) 운영을 위한 정규직계약직 모두 제외 <p>* 평가기간 중 휴업기간은 제외, 모집 공고기간은 인정(평가기간 중 한 시점이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 준수)</p>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 ~ 500명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 ~ 749명	상동	1급 1인 이상	3인 이상
	750명 ~ 999명	상동	2인 이상 (1급1인 포함)	4인 이상
	1,000명 ~ 1,249명	상동	3인 이상 (1급 1인 포함)	5인 이상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표-II-1-14 인사 및 조직(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보통(3)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 원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 / 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참고사항] 여성가족부 지침(2017년 1월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 ~ 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 ~ 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

표-Ⅱ-1-15 인사 및 조직(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50% 이상
	우수(4)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50% 미만 40% 이상
	보통(3)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40% 미만 30% 이상
	미흡(2)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30% 미만 20% 이상
	매우미흡(1)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20% 미만
평가요소	직무연수 참여 비율	A) (2018년1월1일 ~ 2018년12월31일 직무연수 참여직원 수) × 100= () % 전체직원 수(2018년 기준)
		B) (2019년1월1일 ~ 2019년12월31일 직무연수 참여직원 수) × 100= () % 전체직원 수(2019년 기준)
		합계(A+B) = % , 평균(합계 / 2) =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및 외부 직무연수 모두 포함 - 단, 내부연수 경우에는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 만 인정 - 외부연수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직무연수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 연수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명칭 및 목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무연수를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경우는 직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및 직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 수료증 발급받은 경우 - 해외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간 퇴사자의 교육연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인정을 위한 법정보수교육, 원격통신교육, 사이버교육도 포함 • 제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회의는 제외 - 직무연수를 목표로 하지 않은 여행 또는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인정대상에서 제외 - 정책토론회 형태로 운영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의 참가 또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사업) 설명회 참가는 제외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대상 : 정규직·계약직 직원, 배치 청소년지도사 	
	평가자료	연간 직원 직무연수계획, 출장명령서, 교육연수관리대장, 외부초빙증빙자료, 수료증 등 관련 문서

표-Ⅱ-1-16 인사 및 조직(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매우미흡(0)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요소	• 신규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수련원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미흡 '0'점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원에 상시로 출입하는 성인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함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
	평가자료

표-Ⅱ-1-17 인사 및 조직(직원의 복리후생)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3 직원의 복리후생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직원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11개 이상 시행	미흡(2)	3~4개 시행
	우수(4)	8~10개 시행	매우미흡(1)	2개 이하 시행
	보통(3)	5~7개 시행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규정된 휴가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정기적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하고 있다			
	5)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7)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8)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10) 직원의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2)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 적용범위 -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2년간 정규직 및 계약직원, 배치 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PM/SM)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1)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자체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를 말하며, 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그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인정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3)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부교육연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5) 초과근무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6) 직원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7) 상여금 및 성과급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8) 가족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9)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중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어느 하나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				
10) 직원의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면 인정				
11) 사내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2회 이상 실시되고 있을 때 인정				
평가자료	• 제외대상 - 계약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PM / SM), 수련원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관련문서			

평가항목	4.1 시설환경														
평가지표	4.1.1 시설기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준수·유지하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준수													
	매우미흡(0)	법적 기준 미 준수													
평가요소	• 법적기준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p>•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2(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확인함</p> <p>※ 필히 청소년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등록)와 현장과의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의 어느 한 시설(설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기준 미준수로서 '0'점으로 평정 함</p> <p>※ 2005년 이전에 설립·운영되는 수련원은 당시의 법적 기준을 준용 (1996년 설립기준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기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활관</td> <td>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td> </tr> <tr> <td>식당</td> <td>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td> </tr> <tr> <td>실내집회장</td> <td>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야외집회장</td> <td>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기구, 설비 150인 이상(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체육활동장</td> <td>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 시설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수련의 숲</td> <td>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내용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기구, 설비 150인 이상(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 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수련의 숲
구분	기준 내용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기구, 설비 150인 이상(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 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기준 내용
강의실	1실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 수련활동장	문화감성, 과학 및 정보화,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함양, 국제 감각 함양 중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의자·탁자 등의 휴식설비와 간단한 식·음료의 판매시설(자동판매기구를 포함한다) 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한다.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평가자료	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된 일람표), 층별 도면, 시설현황자료

표-Ⅱ-1-19 시설 및 안전(생활관의 쾌적성)

평가항목	4.1 시설환경	
평가지표	4.1.2 생활관의 쾌적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에게 신선하고 편안한 잠자리 마련 등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이상 양호
	우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 불량
	1) 객실 청결상태	
	2) 객실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3) 침구류 관리 상태	
	4) 화장실(샤워장 포함) 청결상태	
	5) 화장실(샤워장 포함)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6) 객실·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7) 생활관 복도 내 청결상태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전체 객실)의 청결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벽, 천정, 바닥 등의 상태(곰팡이 및 얼룩, 불편한 냄새 등) 그리고 침구류 등이 불량(얼룩, 불편한 냄새)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작동 불량, 파손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중 하나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생활관 복도 중 한 개의 층이 복도 상태(청결상태 및 복도 내 조명의 밝기 상태, 비상구 표시 여부, 객실번호표, 숙박정원표시여부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평가자료	각종 관리대장 및 체크리스트, 현장방문 평가

표-Ⅱ-1-20 시설 및 안전(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평정기준	평가점수	가(임시)건축물이 있는 경우	가(임시)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우우수(5)	6개 항목 이상 해당	5개 항목 이상 해당
	우수(4)	5개 항목 해당	4개 항목 해당
	보통(3)	4개 항목 해당	3개 항목 해당
	미흡(2)	3개 항목 이하 해당	2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가(임시)건축물에 대한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	
4)		위해시설물 발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체관리대장을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안전관리 대상은 생활관, 체육시설, 실·내외 집회장, 식당,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 안전관리 대상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상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자체관리대장 등 현장실사 기준		

표-II-1-21 시설 및 안전(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1일 ~ 2019년 12월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개 교육 모두 이수	
	매우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이수	
평가요소	요소항목	2018년	2019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예방교육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p> <p>※ 현장평가 이전에 교육 이수시 인정</p>		
	<p>• 평가의 중점 사항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p> <p>• 직원범위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p> <p>• 인정범위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p>		

• 제외범위

- 안전 분야 별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청소년수련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표-Ⅱ-1-22 시설 및 안전(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1일 ~ 2019년 12월31일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2018년	2019년
	매우우수(5)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	2.5	2.5
	보통(3)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미보고	1.5	1.5
	매우미흡(0)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0	0
평가요소	•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여부를 평가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된 것만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표-II-1-23 시설 및 안전(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매우미흡(0)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요소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매우미흡 '0'점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평가자료	보험가입증명서 및 약관 등

표-Ⅱ-1-24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4.2 안전관리																														
평가지표	4.2.5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 ~ 최하 1점)																														
평가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8조의 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표-Ⅱ-1-25 시설운영 발전(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통(3)	시설 발전 노력이 보통임
	부족(2)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매우부족(1)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가산점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여부 평가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 2018년 평가 대비 개선사항 확인 시 가점(0.1 ~ 0.3점) 부여(2018년 평가의견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점사항에 대하여 가점포함 최대점수는 각 지표별 상한점수를 넘을 수 없음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표-Ⅱ-1-26 시설운영 발전(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정책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정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침에 협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점수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정 • 점수범위 : 2점 ~ 5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운영 중심으로 평가 • 청소년정책 협력 수준 • 기타 운영여건 및 환경과 평가의 준비 및 참여도를 고려한 평가위원 재량평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원의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여건과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시(2020년 평가부터 보수교육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함) - 2018년 평가 대비 개선사항 확인 시 가점 부여(2018년 평가의견서 기준) • 감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명칭 : 표현상 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오해소지의 명칭(예 ; 인재개발수련원 등)과 수탁 법인의 소유 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이 부실한 경우 평가위원 재량 - 수련시설(자연권)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감점사유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우수사례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평정 ※ 모든 가점사항에 대하여 가점포함 최대점수는 각 지표별 상한점수를 넘을 수 없음
평가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실적,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증 등

2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10개 부문 - 29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Ⅱ-2-1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1. 운영 및 관리체계 (14점)	1.1 기관 운영계획	3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2	1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체계	11	1.2.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5	0.4	2	
			1.2.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5	1.0	5	
			1.2.3 회계관리의 체계성	5	0.4	2	
1.2.4 시설의 홍보 수준	5	0.4	2				
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18점)	2.1 청소년 이용	13	2.1.1 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5	0.6	3	●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1.0	5	●
			2.1.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	1.0	5	
	2.2 프로그램의 제공	5	2.2.1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1.0	5	
3. 인사 및 조직 (13점)	3.1 직원 확보	6	3.1.1 직원 확보 수준	5	0.4	2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0.4	2	●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0.4	2	●
	3.2 직원 운영	7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0.6	3	●
			3.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0.8	4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4. 시설 및 안전 (45점)	4.1 시설관리	18	4.1.1 연간 시설 가동률	5	0.4	2		
			4.1.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5	0.6	3	●	
			4.1.3 시설 개선 노력	5	0.6	3		
			4.1.4. 시설 관리의 적정성	- 숙박실의 적정성	5	0.4	2	●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5	0.4	2	●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5	0.4	2	●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5	0.4	2	●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5	0.4	2	●		
	4.2 시설 운영 관리	9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5	0.6	3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5	0.6	3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5	0.6	3		
	4.3 안전 및 위생관리	18	4.3.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5	0.8	4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0.6	3	●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6	3	●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5	0.8	4		
4.3.5 안전교육 및 관리			5	0.8	4	●		
5. 시설운영 발전 (10점)	5.1 시설운영 발전	10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1.0	5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II-2-2 운영 및 관리체계(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의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9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점수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 ~ 최하 1점)																																																
평가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2019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정량·정성)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정책과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유스호스텔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2) : 6차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목표와 연계해서 중·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만 인정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호스텔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유스호스텔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19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스호스텔의 발전계획 기간이 2019년 12월로 종료되어 2018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계획의 승인, 예산반영부분을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것
평가자료	(중·장기)발전계획서, 수탁계획서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청소년수련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2019년 연간 운영계획																																				
평정점수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 ~ 최하 1점)																																				
평가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 colspan="5">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2019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지원 및 청소년활동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유스호스텔 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건의사항 공문서로 만든 자료 비교 확인 - 청소년 만족도, 욕구조사 반영 여부 확인 • 연간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계획이 아닌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호스텔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평가자료	연간(2018, 2019)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서																																				

표-II-2-4 운영 및 관리체계(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규정	
평정기준	5점	13개 이상 규정 보유
	4점	11~12개 이상 규정 보유
	3점	9~10개 이상 규정 보유
	2점	7~8개 이상 규정 보유
	1점	6개 이하 규정 보유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의 유형 <p>① 취업규칙, ② 직제규정, ③ 인사관리규정, ④ 보수규정, ⑤ 복무규정, ⑥ 복리후생관리규정, ⑦ 회계 및 예산규정, ⑧ 사무(문서)관리규정, ⑨ 위임전결규정, ⑩ 예비규정, ⑪ 계약직관리규정, ⑫ 물품(비품) 관리규정, ⑬ 시설관리규정 ⑭ 기타 등</p>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용시설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운영규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등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회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취업규칙(관할노동관서에 신고된 것 만 인정) 작성 보유 시 인사, 보수, 복무, 복리규정 보유 인정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p>[평가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으로 설립된 시설은 자체 운영규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지자체 직영시설, 위탁시설(지자체 공단 위탁 / 지자체 산하 운영법인 위탁 / 청소년단체 위탁 등), 법인운영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규정의 관리 및 이행여부 * 재단 또는 공단 등의 상위 기관 정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인정함(추가) 	
평가자료	관련 규정집 및 공문	

표-II-2-5 운영 및 관리체계(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이 제시하는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연계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3개 요소 해당
	3점 2개 요소 해당
	1점 1개 요소 해당
	0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3가지 연계 협력 사항 해당 여부 ① 국제유스호스텔연맹 규약에 따라 유스호스텔 회원 우대(회원 10% 이상 할인) ② 지침에 맞게 홍보물, 깃발 및 간판 등에 유스호스텔 로고 및 상표 사용 ③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의 예약시스템(www.hihostels.com)에 가입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이 제시하는 운영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연맹과의 연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유스호스텔 회원 우대 및 예약시스템 가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관련 자료를 확인 • 다른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
평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보물, 깃발 및 간판 등에 유스호스텔 로고 및 상표 사용 여부 확인 2. 관련 문서

표-II-2-6 운영 및 관리체계(회계관리의 체계성)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3 회계관리의 체계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가지 항목 이상 해당 또는 회계법인 감사실시
	우수(4)	4가지 항목이 해당
	보통(3)	3가지 항목이 해당
	미흡(2)	2가지 항목이 해당
	매우미흡(1)	1가지 항목이 해당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평가요소	O . X 여부
	1) 회계 관련 필요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	
	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경영평가 또는 신용평가를 실시하였다		
※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평가요소 상관없이 5점부여 (2년에 1회 감사를 받을 경우 3점부여)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유스호스텔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업무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함	
	-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가 비치 여부와 수입 및 지출 원칙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 및 신문 등 외부에 공개여부를 평가함	
평가자료	회계장부(원장), 회계 및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외부감사 실적 자료, 예·결산 자료 등	

표-II-2-7 운영 및 관리체계(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4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3가지 항목 해당
	보통(3)	2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1가지 이하 항목 해당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요소항목	O . X 여부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방법은 다양하다(2가지 방법 이상)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 홍보계획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 대상)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유스호스텔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탈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관광 안내 책자나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의 소재 명시 여부 등

표-Ⅱ-2-8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연간 전체 숙박 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 숙박 이용자 수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2018~2019년도 연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5만 명 미만인 경우	2018~2019년도 연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5점	60% 이상	50% 이상
	4점	50% ~ 59%	40% ~ 49%
	3점	40% ~ 49%	30% ~ 39%
	2점	30% ~ 39%	20% ~ 29%
1점	30% 미만	20% 미만	
평가요소	$\frac{\text{연간청소년숙박자수()명}}{\text{연간전체숙박자수()명}} \times 100 = (\quad \quad \%)$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유스호스텔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일별 인원 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이용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의 수는 연간 숙박자(이용자)수에 산입하지 않음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총 이용자 수 산정 : 숙박일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 - 산정의 예 : 2018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18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2박 + 100명 × 2박 = 총 숙박자 수 = 600명 ※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필히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p> <p>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p>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 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에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평가자료

이용현황관리대장,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

표-II-2-9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활동 실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매우미흡(0)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 교육 실시여부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평가의 중점 사항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제반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 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 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 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 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 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평가자료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

표-Ⅱ-2-10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3가지 항목 모두 해당
	3점	1 ~ 2가지 항목 해당
	1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음	
3)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운영(프로그램 포함) 개선에 반영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단체(수학여행 등), 청소년단체 등의 경우 해당 학교나 단체 측에 제출한 만족도 조사지를 분석한 경우도 인정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터뷰나 면담과 같은 질적 조사도 인정 	
	평가자료	자체 만족도 조사지 샘플,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증빙 자료 등

평가항목	2.2 프로그램의 제공	
평가지표	2.2.1 지역 여행정보 제공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책자 및 브로슈어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여 지역의 여행 및 관광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3개 해당
	3점	1~2개 해당
	1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외부 여행정보 자료 비치	
	2) 홈페이지에 지역 여행정보 제공	
	3) 자체 여행정보 제작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 •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여행정보 자료 : 외부 기관에서 제작한 여행정보 - 자체 여행정보 : 해당 유스호스텔에서 제작한 지역 여행 관련 책자 혹은 브로슈어 등 	
	평가자료	여행정보 자료 비치 및 정보제공 여부 현장 실사

표-Ⅱ-2-12 인사 및 조직(직원 확보의 수준)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1 직원 확보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숙박정원에 부합하는 규모의 직원들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평가시점(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													
평정기준	5점	평균 5% 이상	2점	평균 2%~2.9%										
	4점	평균 4%~4.9%	1점	평균 1.9% 이하										
	3점	평균 3%~3.9%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 (A) 전체직원 확보율 $\frac{2018년1월1일 \sim 2019년 12월31일 \text{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text{숙박정원()명}} \times 100 = [\quad] \%$ (B) 정규직원 확보율 $\frac{2018년1월1일 \sim 2019년 12월31일 \text{ 월평균 정규직 직원수()명}}{\text{숙박정원()}} \times 100 = [\quad] \%$ 합계(A+B) = % , 평균(합계 / 2) =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수 :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table border="1"> <thead> <tr> <th>보험종류</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d rowspan="4">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 </tr> <tr> <td>건강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고용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 </tr> </tbody> </table>	보험종류	내용	비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보험종류	내용	비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범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 - 정규직원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2018년 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계약직원 : 일정한 기간(2년 이하 모두 포함)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 제외함 * 유스호스텔 내 간접계약직원(위생, 식당, 환경, 시설관리 등도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유스호스텔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은 직원대상범위에서 제외 * 기타 직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함 													
평가자료	연간 직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 보험 지급 관련 자료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까지														
평정기준	5점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													
	0점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 준수													
평가요소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 제외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배치 청소년지도사 제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PM / SM) 운영을 위한 정규직·계약직 모두 제외 * 평가기간 중 휴업기간은 제외, 모집 공고기간은 인정(평가기간 중 한 시점이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 준수) <p>[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인원기준 (수용정원)</th> <th>기본최소인원</th> <th>추가최소인원</th> <th>배치기준 (최소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명 ~ 500명</td> <td>3급 1인 이상</td> <td>-</td> <td>3급 1인 이상</td> </tr> <tr> <td>500명 초과</td> <td>3급 1인 이상</td> <td>2급 지도사 1인 이상</td> <td>3급 1인, 2급 1인 이상</td> </tr> </tbody> </table>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 ~ 500명	3급 1인 이상	-	3급 1인 이상	500명 초과	3급 1인 이상	2급 지도사 1인 이상	3급 1인, 2급 1인 이상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 ~ 500명	3급 1인 이상	-	3급 1인 이상												
500명 초과	3급 1인 이상	2급 지도사 1인 이상	3급 1인, 2급 1인 이상												
평가자료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표-Ⅱ-2-14 인사 및 조직(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텔 시설운영 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근거에 부합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평가시점 기준(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보통(3)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 원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유스호텔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유스호텔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 / 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참고사항] 여성가족부 지침(2017년 1월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직역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사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회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p>☛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 ~ 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 ~ 국장(담당관) <p>○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유스호스텔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0점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요소	• 신규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합제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p>※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유스호텔에 상시로 출입하는 성인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함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 	
	평가자료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 (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

표-Ⅱ-2-16 인사 및 조직(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개 교육 모두 이수	
	매우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이수	
평가요소	요소항목		
	1) 성희롱예방교육	2018년	2019년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예방교육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p>		
	<p>※ 현장평가 이전에 교육 이수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외범위

- 안전 분야 별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유스호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p> <p>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 <p>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p> <p>아동복지법 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p> <p>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평가자료</p>	<p>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p>

표-II-2-17 시설 및 안전(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1 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의 연간 서비스 제공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85% 초과
	4점	75% 초과 ~ 85% 이하
	3점	65% 초과 ~ 75% 이하
	2점	55% 초과 ~ 65% 이하
	1점	55% 이하
평가요소	$2018 \text{ 연간시설가동률} = \frac{\text{연간 운영일수}}{365} \times 100 = (\quad \%)$ $2019 \text{ 연간시설가동률} = \frac{\text{연간 운영일수}}{365} \times 100 = (\quad \%)$ <hr/> $\text{합계}(2018+2019) = \quad \% , \quad \text{평균(합계 / 2)}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유스호스텔의 연간 서비스 제공 일수를 중심으로 판정 • 일수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운영일 수 =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한 일 수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경우 해당 휴관일 수만큼 분모에서 차감 - 휴관일 수는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자료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 시설 운영현황' 문서), 휴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문서 등	

표-Ⅱ-2-18 시설 및 안전(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청소년 등 이용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1), 2), 3) 충족
	3점	1), 2) 충족
	0점	1) 또는 2) 미충족시
평가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당해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없다	
3) 주변에 명승고적지, 역사 유적지, 문화 관광시설 등이 있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p>	
	<p>•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6) 금지시설 :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p> <p>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p>	
평가자료	현장 실사 및 주변 환경 설명, 주변 청소년유해시설 현황 등	

표-II-2-19 시설 및 안전(시설개선 노력)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3 시설 개선 노력	
평가방향	유스호텔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전용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보강)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시설개선 실적이 있음
	3점	시설개선 계획이 있으나 개선 실적이 없음
	1점	시설개선 계획이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 계획 구비 여부 • 시설개선 실적 구비 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중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계획을 구비하고 실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보강 및 개보수 비용인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기금융자 및 개인용자 모두 포함 - 신규시설건립비용, 부지확보,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 등 시설환경에 투자한 비용 포함 	
평가자료	시설 중장기관리계획, 연차별 관리운영계획, 개보수 실적 현황 등	

표-Ⅱ-2-20 시설 및 안전(숙박관리의 적절성 - 숙박실의 적정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숙박실의 적정성	
평가방향	유스호텔의 숙박실은 법적 기준에 맞게 조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준수
	0점	미준수
평가요소	•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이어야 한다.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실·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자료	숙박실 현황 자료, 숙박실 현장실사

표-II-2-21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방문 평가 시
평정기준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 없음
평가요소	• 자가취사장 구비 및 법적기준 충족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자가취사장 이용자 현황, 자체 운영규정, 기타 관련 자료

표-Ⅱ-2-22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화정보실을 별도 독립공간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공간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고 제공 자료가 있음
	3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으나 제공 자료가 없음
	0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 및 제공 자료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한 인터넷 활용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용 청소년들 간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대화·정보실 운영규정, 대화·정보실 구비 기자재 현황 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이용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재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이상 양호
	우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 불량
	1) 화장실 청결상태	
	2) 화장실 비품 및 가구관리	
	3) 샤워실 청결상태	
	4) 샤워장 비품 및 가구관리상태	
	5) 세면장 청결상태	
	6) 세면장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7) 건물 내외부 청결상태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수질 검사표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 화장지, 거울, 손 건조장치, 종이 타월 등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물품의 구비 여부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중 하나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위생시설 설치기준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자료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 비품 운영사항, 현장실사	

표-Ⅱ-2-24 시설 및 안전(시설관리의 적절성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정성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지도자실과 휴게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모두 준수
	0점	1개라도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독립적인 지도자실 설치	
2) 독립적인 휴게실 설치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함</p> <p>- 청소년지도자들이 활동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이에 필요한 관련 기구와 비품을 갖추어야 함</p>	
	평가자료	시설일람표, 시설 총별 평면도

표-II-2-25 시설 및 안전(시설 운영기준 준수)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등록증 게시, 정원표시, 방별 투숙기록 등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모두 준수
	3점	3개 준수
	1점	2개 이하 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	
	2) 숙박실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	
	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4) 개별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숙박실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함 - 방별 숙박을 이용한 인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료	시설운영계획, 수련시설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개인이용실적 확인가능 자료	

표-Ⅱ-2-26 시설 및 안전(생활지도 기준 준수)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에게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이용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고 기준이 세부적임
	4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으나 세부적이지 않음
	0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 생활지도 운영기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금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 시설 이용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 조치를 취해야 함 	
평가자료	유스호스텔 이용수칙 및 안내문, 기타 증빙자료	

표-II-2-27 시설 및 안전(숙박정원 기준 준수 여부)

평가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지표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등록증 상에 표기된 숙박정원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숙박기준 준수
	0점	숙박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간을 선정하여 체결된 계약서 내용과 숙박정원 비교 • 숙박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된 경우는 0점 처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됨 	
평가자료	수련시설등록증, 시설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 이용현황자료에 대한 세부근거자료 확인	

표-Ⅱ-2-28 시설 및 안전(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평정기준	평가점수	가(임시)건축물이 있는 경우	가(임시)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우우수(5)	6개 항목 이상 해당	5개 항목 이상 해당
	우수(4)	5개 항목 해당	4개 항목 해당
	보통(3)	4개 항목 해당	3개 항목 해당
	미흡(2)	3개 항목 이하 해당	2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였다			
3)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였다			
4)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안전관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표-Ⅱ-2-29 시설 및 안전(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 2020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2018년	2019년
	매우우수(5)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	2.5	2.5
	보통(3)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미보고	1.5	1.5
	매우미흡(0)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0	0
평가요소	•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여부를 평가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표-Ⅱ-2-30 시설 및 안전(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5점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0점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요소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0점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평가자료	보험가입증명서 및 약관 등	

표-II-2-31 시설 및 안전(시설 청결도 및 위생상태)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관리운영 매뉴얼을 갖추고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침구세트를 교체하여 청결도를 유지토록 하고, 조리실과 식당, 화장실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점수범위 0점 ~ 5점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	불량
	1) 숙박실의 청결상태	2점	0점
	2) 화장실 · 세면장의 청결상태	1점	0점
	3)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상태	2점	0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구세트(침대시트 또는 이불 및 베개 커버) 및 숙소의 청소 상태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침구세트 청결 및 세탁 등에 대한 자체관리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조리실과 식당의 위생상태(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소독 장비, 환기시설, 냉장 및 냉동시설 구비 여부, 바닥·벽·천장 등의 청소 상태, 조리자의 위생복·위생모·장갑 착용 여부 및 청결도) - 화장실·세면장·샤워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 관리 및 교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함 		
평가자료	관리매뉴얼 및 점검 시스템		

표-Ⅱ-2-32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4.3.5 안전교육 및 관리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 ~ 최하 1점)																														
평가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평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운영대표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하였다.	5	4	3	2	1																										
2)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3)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표-Ⅱ-2-33 시설운영 발전(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통(3)	시설 발전 노력이 보통임
	부족(2)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매우부족(1)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 - 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 - 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가산점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지역사회 및 유스호스텔 연맹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여부 평가 - 기타 발전노력과 관련된 사항(관련 실적 자료 확인)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 2018년 평가 대비 개선사항 확인 시 가점(0.1~0.3점) 부여(2018년 평가의견서 기준) • 추가사항(가점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칙 시행기준에 의거해 실내집회장 및 야외집회장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 감독 수준이 양호한 수준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점사항에 대하여 가점포함 최대점수는 각 지표별 상한점수를 넘을 수 없음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표-Ⅱ-2-34 시설운영 발전(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항목	5.1 시설운영 발전
평가지표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정책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정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침에 협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정 • 점수범위 : 2점 ~ 5점
평가요소	• 청소년활동 운영 중심으로 평가 • 청소년정책 협력 수준 • 기타 운영여건 및 환경과 평가의 준비 및 참여도를 고려한 평가위원 재량평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유스호스텔의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여건과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시 (2020년 평가부터 보수교육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함) - 2018년 평가 대비 개선사항 확인 시 가점 부여 (2018년 평가의견서 기준) • 감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스호스텔의 명칭 : 표현상 유스호스텔이 아닌 것으로 오해소지의 명칭(예 ; 콘도 혹은 리조트 등) 사용 시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이 부실한 경우 평가위원 재량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우수사례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평정 •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자연권)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감점사유 - 인명 및 성폭력(성추행)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평가기간 내 (2018.1.1. ~ 2019.12.31)에 형이 확정, 판결 받은 시설의 경우 평가등급을 미흡이하로 하향 조정 ※ 모든 가점사항에 대하여 가점포함 최대점수는 각 지표별 상한점수를 넘을 수 없음
평가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실적 등

3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4개 영역 - 7개 항목 - 20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Ⅱ-3-1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8점)	1.1 청소년 이용실적	3	1.1.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5	0.6	3	●
	1.2 프로그램	5	1.1.2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1.0	5	
2. 조직 및 인력 (17점)	2.1 조직운영	6	2.1.1 시설발전계획	5	0.6	3	
			2.1.2 시설홍보수준	5	0.6	3	
	2.2 인력 구성	11	2.2.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5	1.0	5	●
			2.2.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0.6	3	●
2.2.3 지도자의 윤리성			5	0.6	3	●	
3. 시설 및 안전 (65점)	3.1 시설 및 설비 수준	17	3.1.1 연간 시설 가동률	5	0.4	2	
			3.1.2 활동시설 설치여부	5	1.0	5	●
			3.1.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1.0	5	●
			3.1.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5	1.0	5	●
	3.2 안전 및 위생관리	48	3.2.1 대피시설 설치 상태	5	1.2	6	●
			3.2.2 비상설비 설치 상태	5	1.2	6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안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3.2.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5	1.2	6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5	1.2	6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5	1.2	6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5	1.2	6	●
			3.2.7 안전교육 실시 여부	5	1.2	6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5	1.2	6	
4. 시설 발전 노력 (10점)	4.1 시설 발전 노력	10	4.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2.0	10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표-Ⅱ-3-2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항목	1.1 청소년 이용실적
평가지표	1.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기준	연간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자수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 70% 이상
	우수(4) : 60% ~ 69%
	보통(3) : 50% ~ 59%
	미흡(2) : 40% ~ 49%
	매우미흡(1) : 40% 미만
평가요소	$\frac{2018년 \sim 2019년 \text{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 ()명}}{2018년 \sim 2019년 \text{ 연간 전체이용자 수 ()명}} \times 100 = [\quad] \%$
평가자료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야영장 공간 내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시설 부지 내 전체 공간 대상으로 시설 공간대관, 활동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야영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이용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가족의 수는 연간 숙박자(이용자)수에 산입하지 않음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주체별 범위 : 청소년야영장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 총 이용자 수 산정 : 숙박일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 - 산정의 예 : 2018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18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2박 + 100명 × 2박 = 총 숙박자 수 = 600명 • 평가위원은 현장방문 평가 시 특정 기간(특정 월 등)을 선정하여 실제 이용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조사표와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점수에서 2점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 시설 운영현황' 문서) •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청소년활동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수의 40 / 100 이내이어야 함

표-Ⅱ-3-3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평가항목	1.2 프로그램	
평가지표	1.1.2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평가기준	야영장 인근 자연환경 및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 우수(5)	운영가능 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준이 우수함
	우수(4)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미흡(3)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 평가기간 중 인증프로그램을 보유했을 경우 평정기준 매우우수로 평가 * 평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평정기준 매우우수로 평가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운영 매뉴얼 및 활동지도안이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예시 : 등산, 오리엔티어링, 래프팅, 카누, 수영 등)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 확인서(선정문서 또는 상장) 	

평가항목	2.1 조직운영			
평가지표	2.1.1 시설발전계획			
평가기준	설립목적에 맞는 시설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계획의 대상기간 : 2019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점수	• 평정점수 : ()점			
평가요소	요소	평정기준		○ 판정시 배점
	1)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2
	2)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2
	3)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X	○	1
	합계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청소년야영장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어떤 형태나 수준이든지 인정하고 요소별 평가 • 시설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위한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시설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청소년야영장의 발전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19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19년 12월로 종료되어 2018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위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중장기계획서, 경영목표, 각종 경영혁신 관련 추진실적 자료 등			

표-Ⅱ-3-5 조직 및 인력(시설홍보수준)

평가항목	2.1 조직운영	
평가지표	2.1.2 시설홍보수준	
평가기준	시설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생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2가지 이상 홍보자료가 있음
	보통(3)	1가지 홍보자료가 있음
	미흡(1)	홍보자료가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자료 생산 및 활동정도(언론보도, 리플렛, 카탈로그, 포스터, CD 등) • 홈페이지 구축·운영 현황, 관광안내 책자나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의 소재 명시 여부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자료(언론보도, 리플렛, 포스터, CD 등), 홈페이지(게시판, 공지사항 등) 실적, 관련 관광 책자나 지도 등 	

표-II-3-6 **조직 및 인력(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평가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지표	2.2.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평가기준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현장평가 방문시 	
평정기준	우수(5)	법정기준 준수
	미흡(0)	법정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여부 (3급지도사 1명) 	
평가자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서류, 직원명부 등 •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기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 2항 관련 별표 5)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II-3-7 조직 및 인력(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지표	2.2.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방향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모두 준수
	보통(3)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점검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2)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직제규정 상 시설장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예 : 원장 등)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야영장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 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결재하는 경우에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 [참고사항] 여성가족부 지침(2017년 1월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p>*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p>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직역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p>☛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 ~ 실·국장 ·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 ~ 국장(담당관) <p>○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표-II-3-8 조직 및 인력(지도자의 윤리성)

평가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지표	2.2.3 지도자의 윤리성			
평가기준	직원채용 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자로서 필요한 법적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20년 현장평가 방문시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2018년	2019년
	준수(5)	직원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2.5	2.5
	미준수(0)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0	0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년 1회 이상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평가내용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합제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범위 :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포함 • 연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체교육을 모두 포함)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 (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 일지 등) 			

표-Ⅱ-3-9 시설 및 안전(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1 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연간 서비스제공 비율이 높은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85% 초과
	4점	75% 초과 ~ 85% 이하
	3점	65% 초과 ~ 75% 이하
	2점	55% 초과 ~ 65% 이하
	1점	55% 이하
평가요소	$\frac{\text{2018년 가동일수}}{270} \times 100 = [\quad] \%$ $\frac{\text{2019년 가동일수}}{270} \times 100 = [\qua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및 2019년 가동일 수(%)의 평균으로 평점 함 • 동계 3개월 제외한 이용일 수, 가동일 수의 경우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가동일로 산정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경우 해당 휴관일 수만큼 분모에서 차감 • 휴관일 수는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 시설 운영현황' 문서) 	

표-II-3-10 시설 및 안전(활동시설 설치)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2 활동시설 설치여부						
평가기준	• 다양한 실외활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table border="1"> <tr> <td>우수(5)</td> <td>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 외에 추가 활용 가능한 활동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td> </tr> <tr> <td>보통(4)</td> <td>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만 설치되어 있음</td> </tr> <tr> <td>미흡(3)</td> <td>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이 없음</td> </tr> </table>	우수(5)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 외에 추가 활용 가능한 활동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보통(4)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만 설치되어 있음	미흡(3)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이 없음
	우수(5)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 외에 추가 활용 가능한 활동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보통(4)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만 설치되어 있음					
미흡(3)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이 없음						
평가요소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p>• 추가활동시설 설치현황(자연체험시설, 수영장, 챌린지 코스 등의 시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 3]</p> <p>2) 야외집회장 :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p> <p>4) 체육활동장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평가자료	• 현장 실사, 시설관리대장 등						

표-Ⅱ-3-11 시설 및 안전(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평가기준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 없음
평가요소	• 자가취사장 구비 여부 및 시설 실태 현장실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p>• 자가취사장의 시설 설비가 법적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p>○ 자가 취사장 시설설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II-3-12 시설 및 안전(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평가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지표	3.1.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비품 구비
	3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비품 미비
	0점	화장실, 세면장 시설 중 하나라도 미설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및 세면장 관리 실태 현장 실사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경우 남, 여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 (수질 검사표 등)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p>○ 위생시설 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 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표-Ⅱ-3-13 시설 및 안전(대피시설 설치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1 대피시설 설치 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대피시설이 있으며 법적 기준에 적합함
	보통(3)	대피시설이 있으나 형식적임
	미흡(0)	대피시설이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시설 설치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대피시설'의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Ⅱ-3-14 시설 및 안전(비상설비 설치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2 비상설비 설치 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통신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함
	보통(3)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작동상태가 불량함
	미흡(0)	비상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 위험표지물 등) 설치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의 작동유무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 '비상설비'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Ⅱ-3-15 시설 및 안전(긴급 상황 대비 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대피시설 위치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이 안내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구비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며 인식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음
	보통(3)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나 인식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음
	미흡(0)	매뉴얼이나 안내문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구비 및 게시 여부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관리 및 보관 상태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매뉴얼, 현장실사를 통한 안내문 게시 여부 확인 	

표-Ⅱ-3-16 시설 및 안전(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와 비상연락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 상태 양호
	보통(3)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관리 상태 미흡
	미흡(0)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가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기구의 비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자료,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현장실사 	

표-Ⅱ-3-17 시설 및 안전(긴급후송대책 구축)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평가기준	•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3개 항목 해당
	3점	2개 항목 해당
	0점	1개 이하 항목 해당
평가요소	요소항목	O . X 여부
	1) 긴급후송대책 매뉴얼이 있다	
	2)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다	
	3) 후송차량이 정해져 있다	
평가자료	• 현장실사 및 긴급후송대책 매뉴얼	

표-II-3-18 시설 및 안전(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매우미흡(0)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수련시설 종합보험 등)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매우미흡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표-Ⅱ-3-19 시설 및 안전(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7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기준	•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점수	• 총점 : 점			
평정기준			2018년	2019년
	우수(5)	안전교육 연2회 실시	2.5	2.5
	보통(3)	안전교육 연1회 실시	1.5	1.5
	미흡(0)	안전교육 미실시	0	0
평가요소	•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자료	• 안전교육 실적 자료(안전교육실시 기록대장),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표-Ⅱ-3-20

시설 및 안전(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평가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지표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 시설 및 설비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매우 청결함
	보통(3)	청결함
	미흡(0)	청결하지 않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지, 자가 취사장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관리 대장, 현장실사 	

Ⅱ
평
가
지
표

표-Ⅱ-3-21 시설 발전 노력(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항목	4.1 시설 발전 노력	
평가지표	4.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방향	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평가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준	
평정기준	매우우수(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수(4)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양호(3)	보통임
	보통(2)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부족(1)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2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시 가점 - 2018년 평가 대비 개선사항 확인 시 가점(0.1 ~ 0.3점) 부여(2018년 평가의견서 기준) •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점사항에 대하여 가점포함 최대점수는 각 지표별 상한점수를 넘을 수 없음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실태분석

1. 청소년수련원 실태분석
2. 유스호스텔 실태분석
3. 청소년야영장 실태분석

Ⅲ

청소년수련시설 실태분석

1 청소년수련원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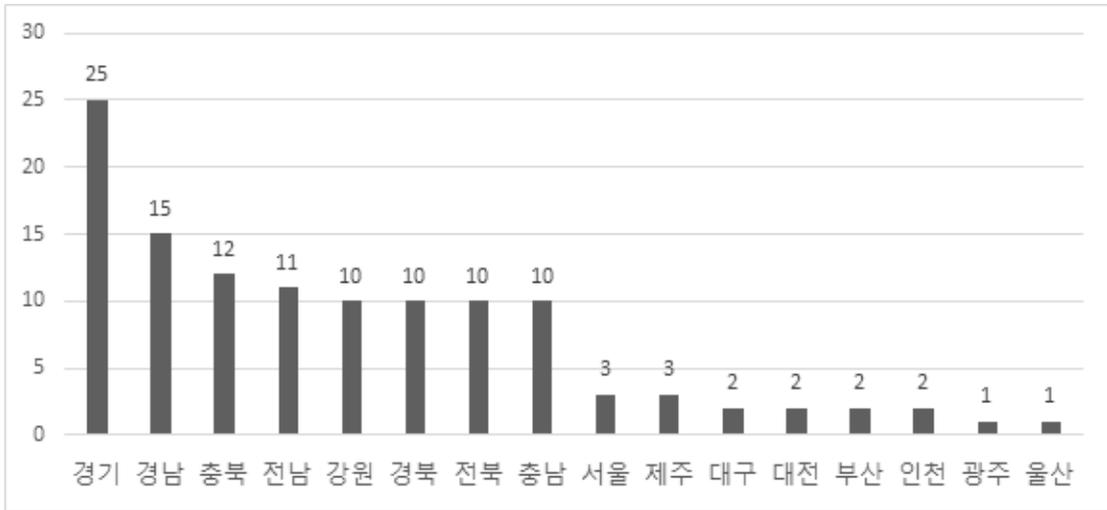
1) 평가대상 시설 주요 현황

○ 평가대상 청소년수련원 개요

평가대상 청소년수련원은 전체 119개소로,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5개소 (2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12.6%), 충북(10.1%), 전남(9.2%), 전북(8.4%), 강원(8.4%), 경북(8.4%), 충남(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Ⅲ-1-1 시·도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구분	기관수	(%)
지역	강원	10	8.4
	경기	25	21.0
	경남	15	12.6
	경북	10	8.4
	광주	1	.8
	대구	2	1.7
	대전	2	1.7
	부산	2	1.7
	서울	3	2.5
	울산	1	.8
	인천	2	1.7
	전남	11	9.2
	전북	10	8.4
	제주	3	2.5
	충남	10	8.4
	충북	12	10.1
	합계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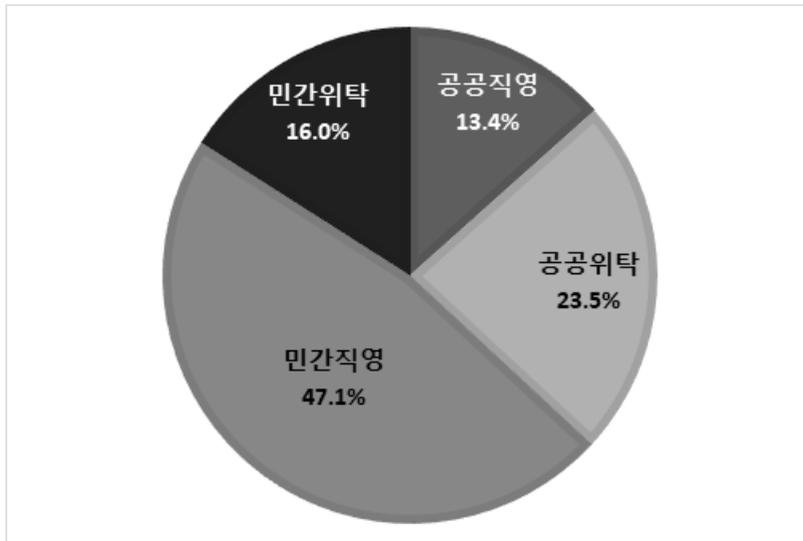
[그림 III-1-1] 시·도별 청소년수련원 현황(단위 : 기관수)

○ 운영주체별 현황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119개 청소년수련원 중 공공시설이 37.0%, 민간시설이 63.0%였음. 공공시설 중에서는 직영시설이 13.4%(16개소), 위탁 시설이 23.5%(28개소)였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직영시설이 47.1%(56개소), 위탁 시설이 16.0%(19개소)로 나타남.

표-III-1-2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운영주체	공공	직영	16
		위탁	28
	민간	직영	56
		위탁	19
합계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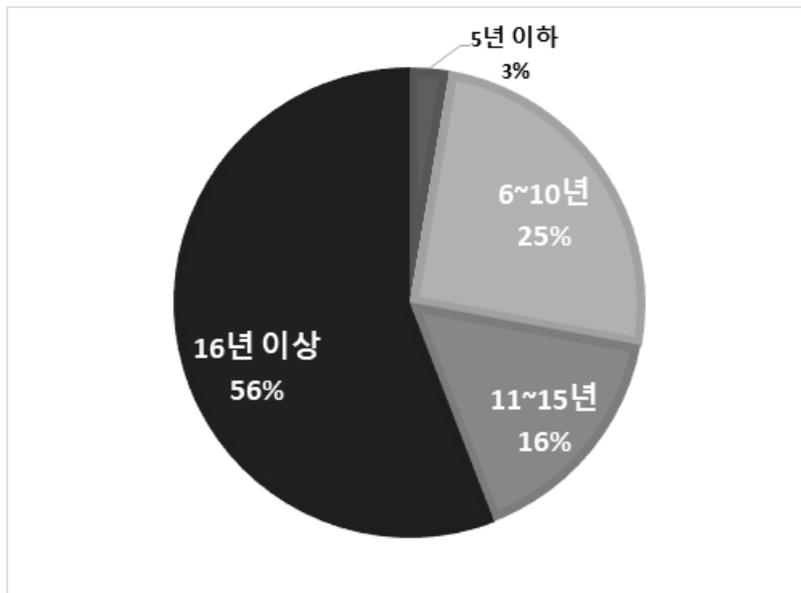
[그림 III-1-2] 운영주체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 운영기간별 현황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11개 시설 중 5년 이하 시설이 2.7%(3개소), 6~10년의 시설이 25.2%(28개소), 11~15년의 시설이 16.2%(18개소), 16년 이상의 시설이 55.9%(62개소)로 16년 이상 된 청소년수련원이 과반수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III-1-3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기간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5년 이하	3	2.7
6년 ~ 10년	28	25.2
11년 ~ 15년	18	16.2
16년 이상	62	55.9
합계	1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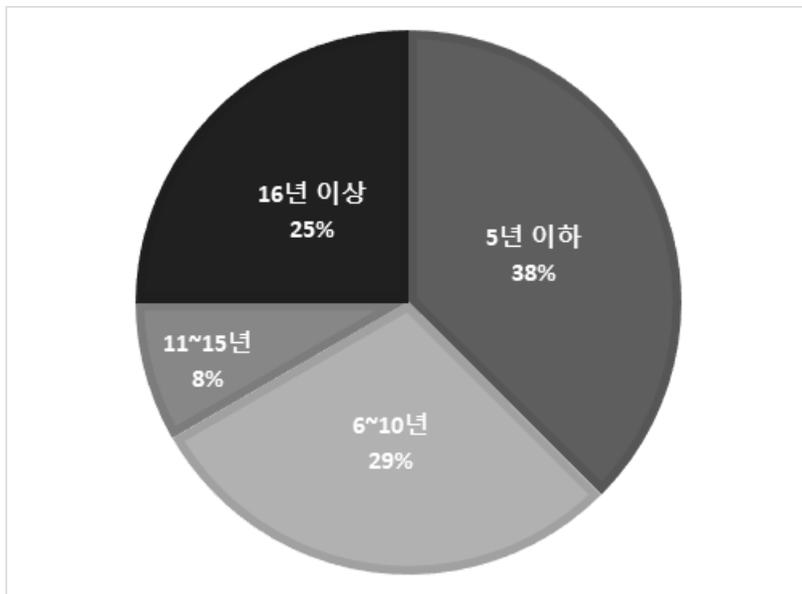
[그림 III-1-3] 운영기간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 위탁기간별 현황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48개 시설 중에서 5년 이하가 37.5%(18소), 6~10년의 시설이 29.2%(14개소), 11~15년의 시설이 8.3%(4개소), 16년 이상의 시설이 25.0%(12개소)로 10년 이하의 위탁시설이 과반수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III-1-4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5년 이하	18	37.5
6년 ~ 10년	14	29.2
11년 ~ 15년	4	8.3
16년 이상	12	25.0
합계	48	100.0



[그림 III-1-4] 위탁기관별 청소년수련원 현황

2)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

○ 건물동수

청소년수련원의 건물 동 수는 최대 69개동이고, 최소 1개 동으로 평균 8.10개 동인 것으로 나타남.

표-III-1-5 청소년수련원 건물 동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건물동수	69	1	8.10	10.96

○ 부지면적

청소년수련원의 부지면적은 평균 86,462.7㎡이며, 최대 1,330,581.0㎡, 최소 4267.0㎡로 나타남.

표-III-1-6 청소년수련원 부지면적

(단위 : ㎡)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부지면적	1,330,581.0	4267.0	86,462.7	160,985.6

○ 연건축면적

청소년수련원의 연건축면적은 평균 9,040.0㎡이며, 최대 314,607.0㎡, 최소 981.9㎡로 나타남.

표-III-1-7 청소년수련원 연건축면적

(단위 : ㎡)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연건축면적	314,607.0	981.9	9,040.0	29,322.6

○ 연간 운영일수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운영일수는 2019년에 평균 267.8일로 2018년(268.0일)과 약간 적었으며, 최대 365일에서 최소 0일로 나타남.

표-III-1-8 청소년수련원 연간운영일수

연간운영일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365	10	268.00	95.09
2019년	365	0	267.79	95.23

○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청소년이용자수는 2019년에 평균 34,7953.3명으로 2018년에 비해 38.5명 감소하였으며, 최대 589,769명에서 최소 0명으로 나타남.

표-III-1-9 청소년수련원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연간이용 청소년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575,665	52	34,833.79	58,770.03
2019년	589,769	0	34,795.26	62,275.18

○ 직원 현황

2019년의 청소년수련원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32.1명이고 정규직 직원은 23.4명, 계약직 직원은 8.6명으로 나타남. 2018년에는 평균 32.8명이고, 정규직 직원 23.7명, 계약직 직원 8.9명으로 2019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1-10 청소년수련원 직원현황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200	0	8.88	25.33
	정규직	288	1	23.67	41.54
	총인원	373	1	32.77	57.48
2019년	계약직	192	0	8.59	23.09
	정규직	285	0	23.44	40.37
	총인원	370	2	32.07	55.03

○ 1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수련원의 1급 지도자수는 정규직이 평균 0.81명, 계약직이 0.04명임. 2018년에는 정규직이 평균 0.84명, 계약직이 0.01명으로, 2019년에 정규직 1급 지도자 수가 약간 감소한데 비해서 계약직 1급 지도사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1-11 청소년수련원 지도사 1급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정규직 지도사 1급(명)	7	0	0.84	1.06
	계약직 지도사 1급(명)	1	0	0.01	0.09
2019년	정규직 지도사 1급(명)	7	0	0.81	1.01
	계약직 지도사 1급(명)	1	0	0.04	0.20

○ 2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수련원의 2급 지도자 수는 정규직이 평균 3.94명, 계약직이 0.33명임. 2018년에는 정규직이 평균 4.08명, 계약직이 0.35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정규직은 1.42명, 계약직은 0.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Ⅲ-1-12 청소년수련원의 지도사 2급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정규직 지도사 2급(명)	33	0	4.08	4.75
	계약직 지도사 2급(명)	6	0	0.35	1.07
2019년	정규직 지도사 2급(명)	31	0	3.94	4.45
	계약직 지도사 2급(명)	8	0	0.33	1.03

○ 3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수련원의 3급 지도자 수는 정규직이 평균 1.00명, 계약직이 0.21명이고, 2018년도에는 정규직이 평균 0.88명, 계약직이 0.17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정규직인 0.12명, 계약직은 0.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Ⅲ-1-13 청소년수련원의 지도사 3급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정규직 지도사 3급(명)	7	0	0.88	1.45
	계약직 지도사 3급(명)	3	0	0.17	0.50
2019년	정규직 지도사 3급(명)	6	0	1.00	1.55
	계약직 지도사 3급(명)	3	0	0.21	0.54

2 유스호스텔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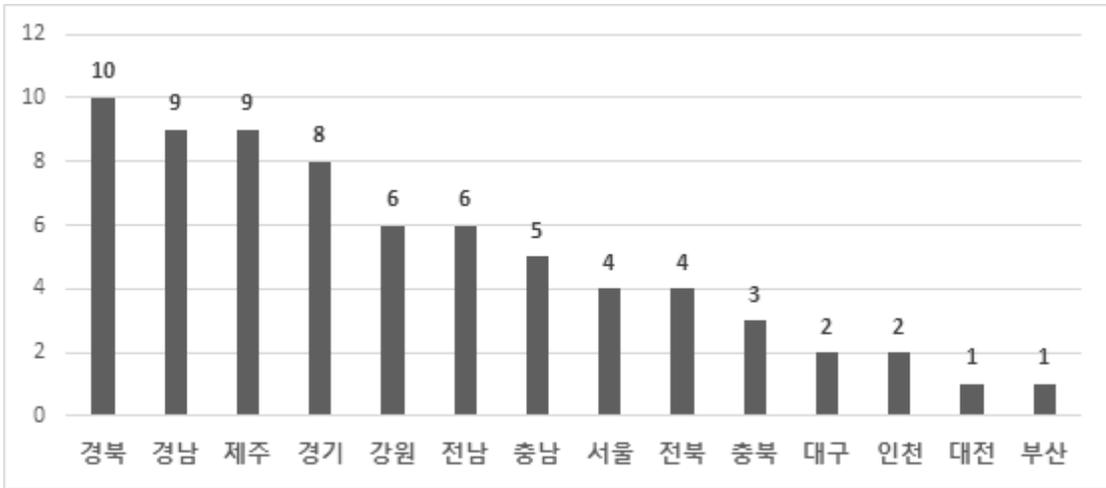
1) 평가대상 시설 주요 현황

○ 평가대상 유스호스텔 개요

평가대상 유스호스텔은 전체 70개소로,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10개소(1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과 제주가 각각 9개소(12.9%), 경기 8개소(11.4%), 강원과 전남이 각각 6개소(8.6%), 충남 5개소(7.1%) 등으로 나타남.

표-III-2-1 시·도별 유스호스텔 현황

	구분	기관수	(%)
지역	강원	6	8.6
	경기	8	11.4
	경남	9	12.9
	경북	10	14.3
	대구	2	2.9
	대전	1	1.4
	부산	1	1.4
	서울	4	5.7
	인천	2	2.9
	전남	6	8.6
	전북	4	5.7
	제주	9	12.9
	충남	5	7.1
충북	3	4.3	
	합계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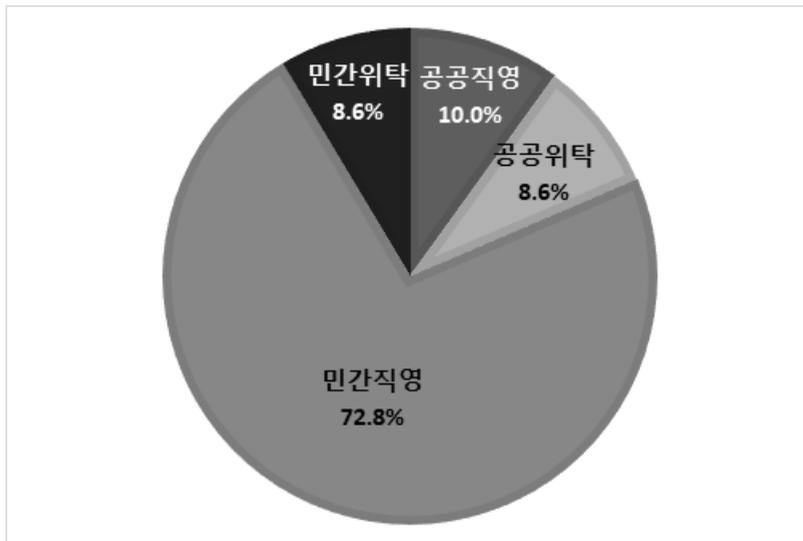
[그림 III-1-5] 지역별 평가대상 유스호스텔 수(단위 : 기관수)

○ 운영주체별 현황

유스호스텔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이 18.6%(13개소), 민간시설이 81.4%(57개소)로 민간시설이 공공시설보다 약 4배 정도 많았음. 공공시설 중에서는 직영시설이 10.0%(7개소), 위탁시설이 8.6%(6개소)였으며, 민간시설 중에서는 직영시설이 72.9%(51개소), 위탁시설이 8.6%(6개소)로 나타남.

표-III-2-2 유스호스텔의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운영주체	공공	직영	7
		위탁	6
	민간	직영	51
		위탁	6
합계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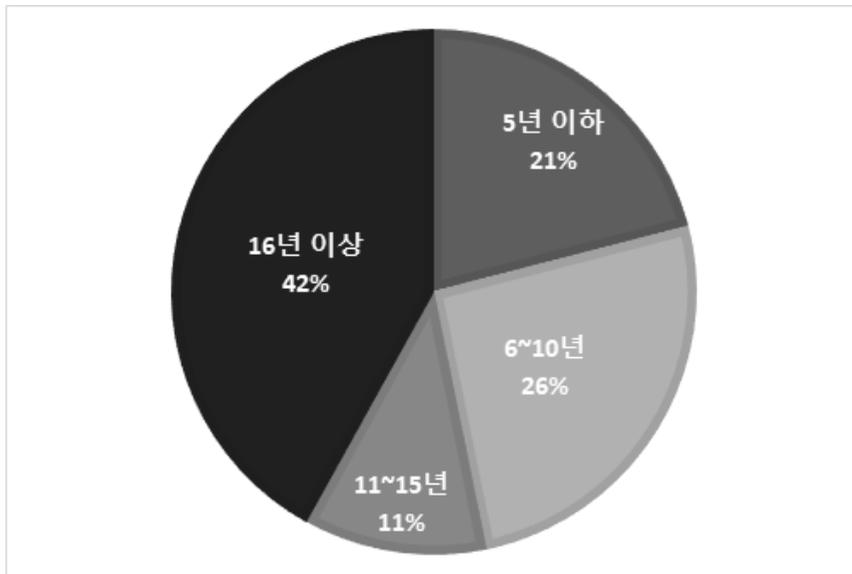
[그림 III-1-6] 운영주체별 유스호스텔 현황

○ 운영기간별 현황

유스호스텔의 운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시설이 21.0%(13개소), 6~10년의 시설이 25.8%(16개소), 11년~15년의 시설이 11.3%(7개소), 16년 이상의 시설이 41.9%(26개소)로 16년 이상의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III-2-3 유스호스텔의 운영기간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5년 이하	13	21.0
6년 ~ 10년	16	25.8
11년 ~ 15년	7	11.3
16년 이상	26	41.9
합계	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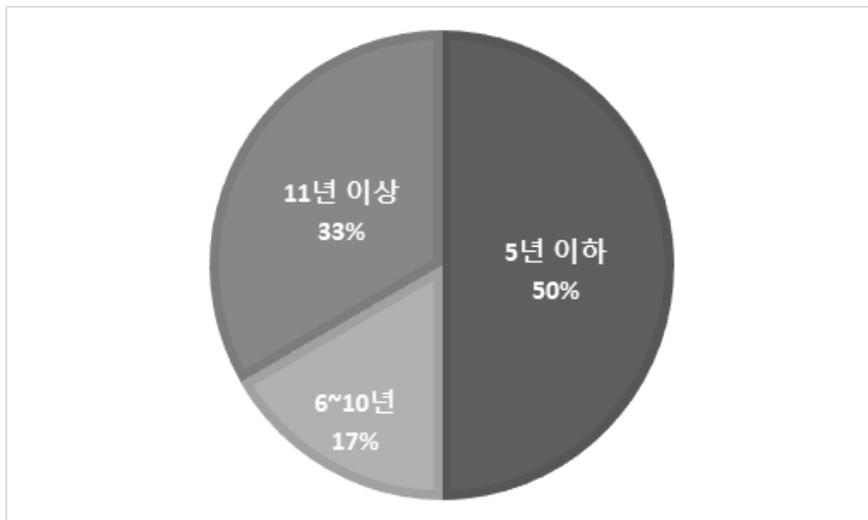
[그림 III-1-7] 운영기간별 유스호스텔 현황

○ 위탁기간별 현황

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시설이 50.0%(6개소), 6~10년의 시설이 16.7%(2개소), 11년 이상의 시설이 33.3%(4개소)로 과반수 이상의 시설이 5년 이하의 위탁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표-III-2-4 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5년 이하	6	50.0
6년 ~ 10년	2	16.7
11년 이상	4	33.3
합계	12	100.0



[그림 III-1-8] 위탁기간별 유스호스텔 현황

2)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

○ 건물 동 수

유스호스텔의 건물 동 수는 2019년도에 평균 2.65개동이고, 최대 11개동, 최소 1개동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평균 3.03개동이고, 최대 25개동, 최소 1개동인 것으로 나타남.

표-III-2-5 유스호스텔 건물 동수

(단위 : 동)

건물동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25	1	3.03	3.67
2019년	11	1	2.65	2.41

○ 부지면적

유스호스텔의 부지면적은 2019년에 평균 14,929.49㎡이며, 최대 170,042㎡, 최소 275㎡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평균 15,026.97㎡이며, 최대 170,042㎡, 최소 275㎡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평균 부지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III-2-6 유스호스텔 부지면적

(단위 : ㎡)

부지면적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170,042.00	275.00	15,026.97	23,800.16
2019년	170,042.00	275.00	14,939.49	23,630.72

○ 연건축면적

유스호스텔의 연건축면적은 2019년에 평균 5,984.81㎡이며, 최대 85,541㎡, 최소 360㎡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평균 5,955.05㎡이며, 최대 85,541㎡, 최소 360㎡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평균 연건축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III-2-7 유스호스텔 연건축면적

(단위 : m²)

연건축면적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85,541.00	360.00	5,955.05	11,223.65
2019년	85,541.00	360.00	5,984.81	11,217.17

○ 연간운영일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연간운영일수는 평균 310.73일로 2018년의 301.63일보다 약 8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9년도 최대 운영일수는 365일이고 최소 운영일수는 7일로 나타남.

표-III-2-8 유스호스텔 연간 운영일수

연간 운영일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365	8	302.63	94.95
2019년	365	7	310.73	88.67

○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청소년이용자수는 평균 20,822.52명으로 2018년도 이용자수 20,336.52명에 비해 4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9년도 청소년이용자수는 최대 252,932명, 최소 0명으로 나타남.

표-III-2-9 유스호스텔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232,852	0	20,336.52	36,588.10
2019년	252,932	0	20,822.52	38,792.87

○ 직원 현황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51.69명으로 2018년의 53.23명에 비해 1.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총인원 중에서 정규직은 2018년도에 평균 46.23명에서 2019년에 43.24명으로 약 3명 감소하였으며, 계약직은 2018년도에 평균 8.68명에서 2019년도에 8.56명으로 0.12명으로 감소하여 정규직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III-2-10 유스호스텔 직원 현황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311	0	8.68	39.08
	정규직	1878	0	46.23	237.93
	총인원	2189	2	53.23	272.54
2019년	계약직	300	0	8.56	37.50
	정규직	1798	0	43.24	224.37
	총인원	2098	1	51.69	261.25

○ 1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1급 지도자 수는 정규직이 평균 0.15명, 계약직이 평균 0.03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3명 증가하였고, 계약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III-2-11 유스호스텔 지도사 1급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지도사 1급(명)	1	0	0.03	0.17
	정규직 지도사 1급(명)	1	0	0.12	0.33
2019년	계약직 지도사 1급(명)	1	0	0.03	0.17
	정규직 지도사 1급(명)	1	0	0.15	0.36

○ 2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2급 지도자 수는 정규직이 평균 1.47명, 계약직이 0.26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2명 증가하였고, 계약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III-2-12 유스호스텔 지도사 2급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지도사 2급(명)	8	0	0.26	1.03
	정규직 지도사 2급(명)	7	0	1.45	1.49
2019년	계약직 지도사 2급(명)	8	0	0.26	1.03
	정규직 지도사 2급(명)	7	0	1.47	1.59

○ 3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3급 지도자 수는 정규직이 평균 0.41명, 계약직이 평균 0.06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2명 증가하였으나, 계약직은 0.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2-13 유스호스텔 지도사 3급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지도사 3급(명)	1	0	0.08	0.27
	정규직 지도사 3급(명)	7	0	0.39	0.97
2019년	계약직 지도사 3급(명)	1	0	0.06	0.24
	정규직 지도사 3급(명)	7	0	0.41	0.99

3 청소년야영장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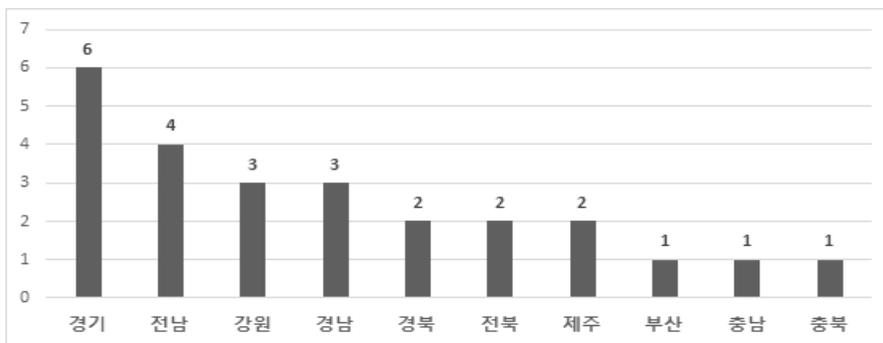
1) 평가대상 시설 주요 현황

○ 평가대상 청소년야영장 개요

평가대상 청소년야영장은 전체 25개소로,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개소(2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남 4개소(16.0%), 강원과 경남이 각각 3개소(12.0%), 경북, 전북, 제주가 각각 2개소(8.0%)의 순으로 나타남.

표-III-3-1 시·도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구분		기관수	(%)
지역	강원	3	12.0
	경기	6	24.0
	경남	3	12.0
	경북	2	8.0
	부산	1	4.0
	전남	4	16.0
	전북	2	8.0
	제주	2	8.0
	충남	1	4.0
	충북	1	4.0
합계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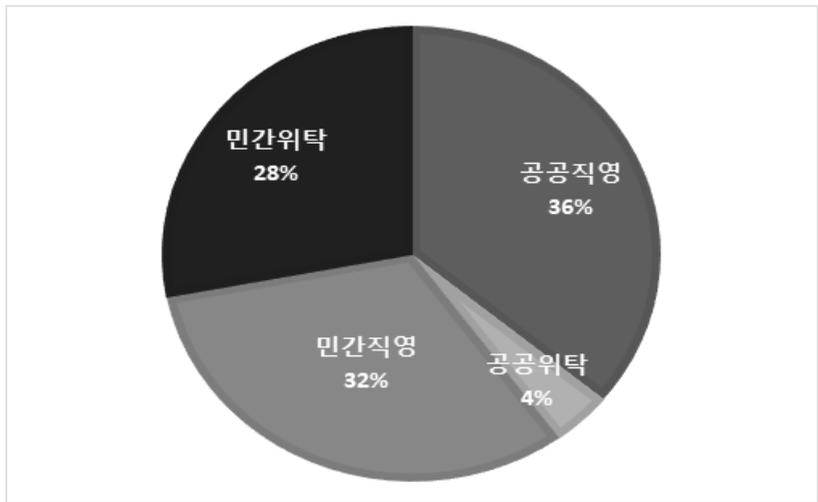
[그림 III-1-9] 지역별 평가대상 청소년야영장 수(단위 : 기관수)

○ 운영주체별 현황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개 시설 중 공공시설이 10개(40.0%), 민간시설이 15개(60.0%)로 민간시설이 공공시설보다 많았고, 공중시설 중에서 직영시설은 9개소(36.0%), 위탁시설은 1개소(4.0%)였으며, 민간시설 중에서는 직영시설이 8개소(32.0%), 위탁시설이 7개소(28.0%)로 나타남.

표-III-3-2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운영주체	공공	직영	9
		위탁	1
	민간	직영	8
		위탁	7
합계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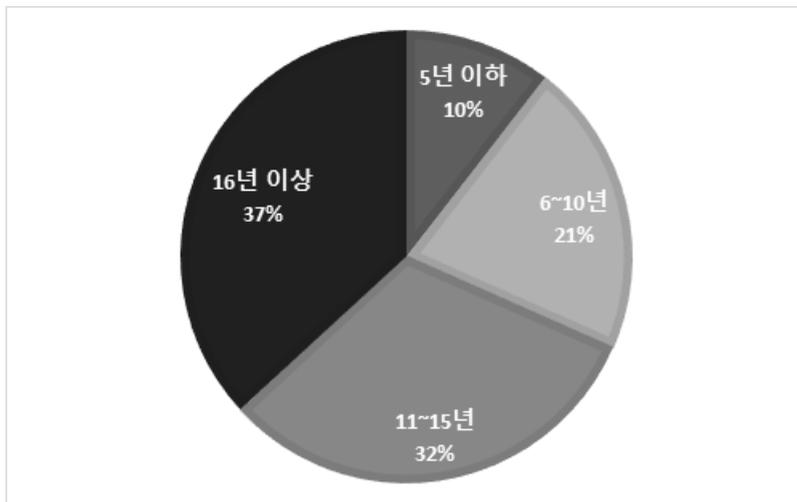
[그림 III-1-10] 운영주체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 운영기간별 현황

청소년야영장의 운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시설이 2개소(10.5%), 6~10년의 시설이 4개소(21.1%), 11~15년의 시설이 6개소(31.6%), 16년 이상의 시설이 7개소(36.8%)로 10년 이상의 시설이 약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III-3-3 청소년야영장의 운영기간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5년 이하	2	10.5
6~10년	4	21.1
11~15년	6	31.6
16년 이상	7	36.8
합계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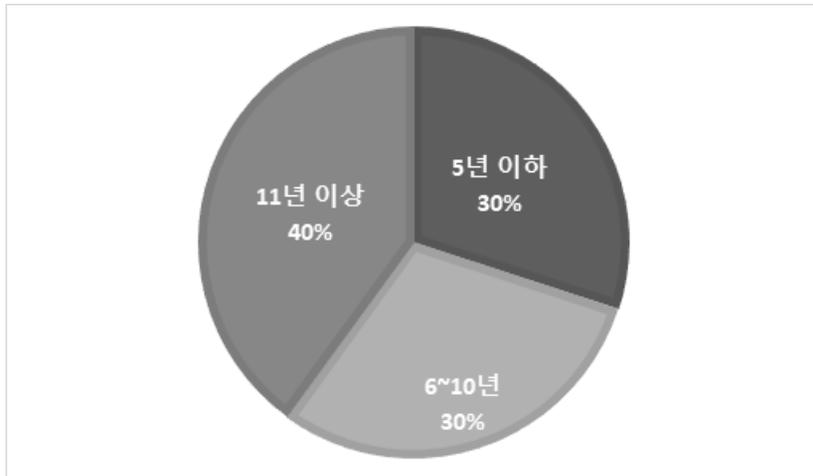
[그림 III-1-11] 운영기간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 위탁기간별 현황

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시설이 3개소(30.0%), 6~10년의 시설이 3개소(30.0%), 11년 이상의 시설이 4개소(40.0%)로 나타남.

표-Ⅲ-3-4 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별 현황

구분	기관수	백분율(%)
5년 이하	3	30.0
6년 ~ 10년	3	30.0
11년 이상	4	40.0
합계	10	100.0



[그림 Ⅲ-1-12] 위탁기간별 청소년야영장 현황

2) 시설 규모 및 이용자 현황

○ 건물동수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건물 동수를 살펴보면, 평균 5.68개동이고, 최대 29개동, 최소 1개동이며, 2018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남.

표-III-3-5 청소년야영장 건물 동수

건물동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29	1	5.68	6.35
2019년	29	1	5.68	6.35

○ 부지면적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부지면적은 평균 43,750.23㎡이며, 최대 289,342㎡, 최소 4,140㎡로 2018년에 비해서 평균 부지면적이 100.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3-6 청소년야영장 부지면적

(단위 : ㎡)

부지면적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289,342.0	4,140.0	43,649.95	67,093.17
2019년	289,342.0	4,140.0	43,750.23	67,056.34

○ 연건축면적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연건축면적은 평균 1,375.44㎡이며, 최대 6,124㎡, 최소 160㎡로 2018년에 비해서 연건축면적이 평균 2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3-7 청소년야영장 연건축면적

(단위 : ㎡)

연건축면적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6,124.0	160.0	1,354.13	1,379.40
2019년	6,124.0	160.0	1,375.44	1,416.10

○ 연간운영일수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연간운영일수는 평균은 201.04일이며, 최대 365일, 최소 5일로 2018년에 비해서 연간운영일수가 평균 3.8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3-8 청소년야영장 연간운영일수

연간 운영일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365	4	197.17	100.10
2019년	365	5	201.04	99.13

○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2019도 청소년야영장의 연간 청소년이용자수는 평균은 5,483.54명이며, 최대 41,460명, 최소 275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85.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3-9 청소년야영장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연간 이용 청소년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54,048	319	5,568.96	10,990.03
2019년	41,460	275	5,483.54	8,877.37

○ 직원 현황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4.57명이고 이중 정규직이 2.99명, 계약직이 2.26명으로 나타남. 2018년도에 비해서 총인원은 평균 0.3명 증가하였고, 정규직은 0.05명, 계약직은 0.9명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3-10 청소년야영장 직원현황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11	0	2.09	3.25
	정규직	10	0	2.94	2.30
	총인원	12	0	4.27	3.18
2019년	계약직	15	0	2.26	3.60
	정규직	10	0	2.99	2.47
	총인원	19	0	4.57	4.23

○ 1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1급 지도자수는 정규직이 평균 0.29명, 계약직이 0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4명 증가하였으며, 계약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III-3-11 청소년야영장 지도사 1급 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지도사 1급(명)	0	0	0.00	0.00
	정규직 지도사 1급(명)	1	0	0.25	0.44
2019년	계약직 지도사 1급(명)	0	0	0.00	0.00
	정규직 지도사 1급(명)	1	0	0.29	0.46

○ 2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2급 지도자수는 정규직이 평균 0.88명, 계약직이 0.17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4명 감소하였으나, 계약직은 0.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II-3-12 청소년야영장 지도사 2급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지도사 2급(명)	1	0	0.08	0.28
	정규직 지도사 2급(명)	3	0	0.92	1.02
2019년	계약직 지도사 2급(명)	1	0	0.17	0.38
	정규직 지도사 2급(명)	3	0	0.88	1.03

○ 3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3급 지도자수는 정규직이 평균 0.25명, 계약직이 0.25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계약직은 변화가 없고, 정규직은 0.1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Ⅲ-3-13 청소년야영장 지도사 3급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8년	계약직 지도사 3급(명)	5	0	0.25	1.03
	정규직 지도사 3급(명)	1	0	0.13	0.34
2019년	계약직 지도사 3급(명)	5	0	0.25	1.03
	정규직 지도사 3급(명)	2	0	0.25	0.53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결과 분석

1. 청소년수련원 평가결과
2. 유스호스텔 평가결과
3. 청소년야영장 평가결과

IV

평가결과 분석

1 청소년수련원 평가결과

1)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평가등급별로 볼 때 전체 평가대상 119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은 83개소(69.7%)이며, 우수는 24개소(20.2%), 적정은 3개소(2.5%), 미흡은 4개소(3.4%), 매우미흡은 5개소(4.2%)로 나타남.

표-IV-1-1 청소년수련원 평가등급별 기준 및 해당시설 수

구분		절대평가기준	시설수
평가등급	최우수	90점 이상	83개소 (69.7%)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24개소 (20.2%)
	적정	70점 이상 ~ 80점 미만	3개소 (2.5%)
	미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4개소 (3.4%)
	매우미흡	60점 미만	5개소 (4.2%)
	총계		

2) 시·도별 청소년수련원 평가결과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시·도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등급의 경우에 경기지역이 1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11개), 충북(9개), 강원(8개)과 충남(8개), 충남(6개), 경북(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우수등급도 경기지역이 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4개), 충북(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1-2 시·도별 평가등급별 청소년수련원 시설 수

시·도	등급					전체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강원	8	1	1	0	0	10
경기	18	5	0	2	0	25
경남	11	1	1	0	2	15
경북	7	2	0	1	0	10
광주	1	0	0	0	0	1
대구	2	0	0	0	0	2
대전	1	1	0	0	0	2
부산	2	0	0	0	0	2
서울	1	1	0	1	0	3
울산	0	1	0	0	0	1
인천	2	0	0	0	0	2
전남	5	4	1	0	1	11
전북	6	2	0	0	2	10
제주	2	1	0	0	0	3
충남	8	2	0	0	0	10
충북	9	3	0	0	0	12
전체	83	24	3	4	5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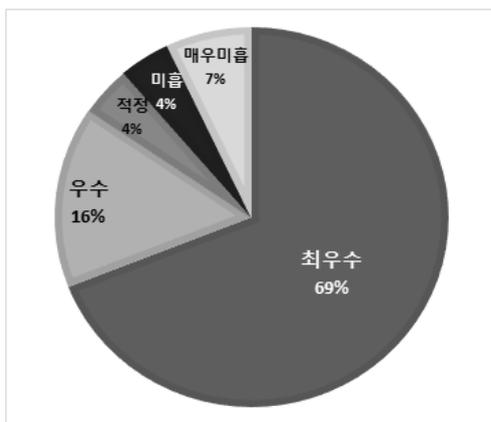
3)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결과

○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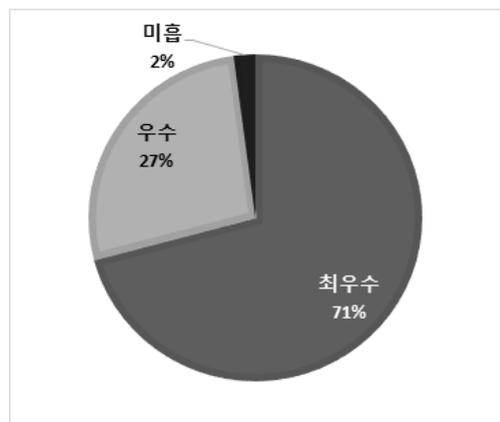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운영형태별 시설 수를 살펴보면, 전체 119개 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40.3%(48개), 직영시설이 59.7%(71개)였음. 위탁시설 48개 중에서 최우수시설은 70.8%(34개), 우수시설은 27.1%(13개), 적정시설은 0%(0개), 미흡시설은 2.1%(1개), 매우 미흡 시설은 0.0%(0개)임. 직영시설은 71개 중에서 최우수시설은 69.0%(49개), 우수시설은 15.5%(11개), 적정시설은 4.2%(3개), 미흡시설은 4.2%(3개), 매우미흡 시설은 7.0%(5개)로 나타남.

표-Ⅳ-1-3 청소년수련원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구분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전체
직영	49	11	3	3	5	71
	69.0%	15.5%	4.2%	4.2%	7.0%	100.0%
위탁	34	13	0	1	0	48
	70.8%	27.1%	0.0%	2.1%	0.0%	100.0%
전체	83	24	3	4	5	119
	69.7%	20.2%	2.5%	3.4%	4.2%	100.0%



[직영]



[위탁]

[그림 Ⅳ-1-1] 청소년수련원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비율

4)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1)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영역은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운영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수련원 평가의 전체 평균총점은 100점 만점에 90.42점으로 운영 및 관리는 9.53점(11점 만점),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19.04점(21점 만점), 인사 및 조직은 25.10점(28점 만점), 시설 및 안전은 28.25점(30점 만점), 시설운영발전은 8.50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각 평가영역을 100점 환산 점수로 볼 때, 시설기준 및 안전(94.15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90.68점), 인사 및 조직(89.66점), 운영 및 관리(86.59점), 시설운영발전(85.04점)으로 나타남.

표-Ⅳ-1-4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평가영역	원점수			100점 환산점수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운영 및 관리	11	9.53	-1.47	86.59	-13.41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21	19.04	-1.96	90.68	-9.32
인사 및 조직	28	25.10	-2.90	89.66	-10.34
시설 및 안전	30	28.25	-1.75	94.15	-5.85
시설운영발전	10	8.50	-1.50	85.04	-14.96
전체	100	90.42	-9.58	-	-

- 청소년수련원 전체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3.1.1. 직원확보의 수준(67.90점)이나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79.96점),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80.59점),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82.35점) 지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을 나타냄.

표-Ⅳ-1-5 청소년수련원 전체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원점수			백점환산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	1.60	-0.40	79.96	-20.04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61	-0.39	80.59	-19.41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	1.83	-0.17	91.60	-8.40
		1.2.2 회계 관리의 체계성	4	3.58	-0.42	89.58	-10.42
		1.2.3 시설의 홍보 수준	1	0.90	-0.10	89.92	-10.08
I. 운영 및 관리			11	9.53	-1.47	86.59	-13.41
2.1 청소년 이용	8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2.64	-0.36	87.90	-12.10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4.71	-0.29	94.12	-5.88
2.2 프로그램 운영	13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	4	3.70	-0.30	92.44	-7.56
		2.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4	3.38	-0.62	84.54	-15.46
		2.2.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5	4.62	-0.38	92.44	-7.56
II.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21	19.04	-1.96	90.68	-9.32
3.1 직원확보	13	3.1.1 직원 확보의 수준	3	2.04	-0.96	67.90	-32.10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4.66	-0.34	93.28	-6.72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4.39	-0.61	87.90	-12.10
3.2 직원교육 및 복지	15	3.2.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5	4.51	-0.49	90.25	-9.75
		3.2.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4.96	-0.04	99.16	-0.84
		3.2.3 직원의 복리후생	5	4.54	-0.46	90.76	-9.24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원점수			백점환산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Ⅲ. 인사 및 조직			28	25.10	-2.90	89.66	-10.34
4.1 시설환경	9	4.1.1 시설기준	5	4.66	-0.34	93.28	-6.72
		4.1.2 생활관의 쾌적성	4	3.82	-0.18	95.46	-4.54
4.2 안전관리	21	4.2.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4	3.82	-0.18	95.46	-4.54
		4.2.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4.46	-0.54	89.24	-10.76
		4.2.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4	3.81	-0.19	95.21	-4.79
		4.2.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4	3.90	-0.10	97.48	-2.52
		4.2.5 안전교육 및 관리	4	3.78	-0.22	94.39	-5.61
Ⅳ. 시설 및 안전			30	28.25	-1.75	94.15	-5.85
5.1 시설운영 발전	10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4.39	-0.61	87.73	-12.27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4.12	-0.88	82.35	-17.65
Ⅴ. 시설운영발전			10	8.50	-1.50	85.04	-14.96
합계			100	90.42	-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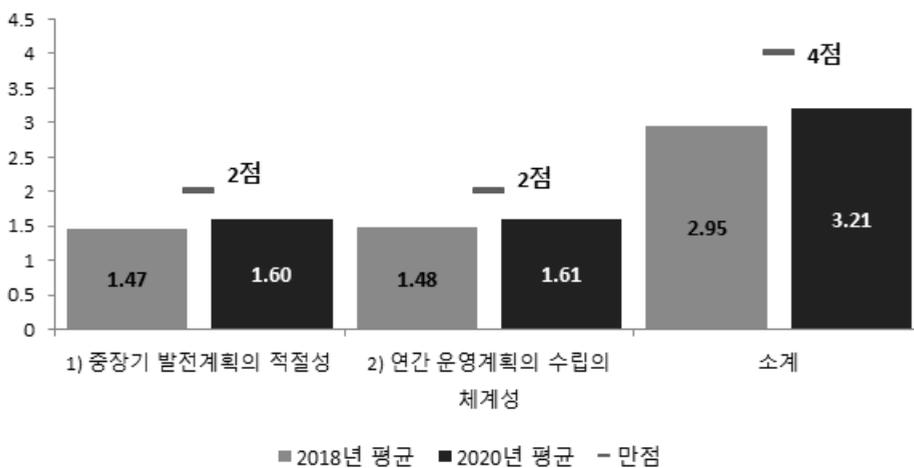
(2) 운영 및 관리

가. 기관 운영계획

- 운영 및 관리는 기관 운영계획과 기관 운영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운영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과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관 운영계획은 총점 4점 중 평균 3.21점으로 2018년의 평균 점수 2.95점에 비해서 평균 2.6점 증가하였음.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은 평균 1.60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점수 1.47점에 비해서 0.13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도 평균 1.61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점수 1.48점에 비해서 0.1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V-1-6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	1.47	1.60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48	1.61
소계	4	2.95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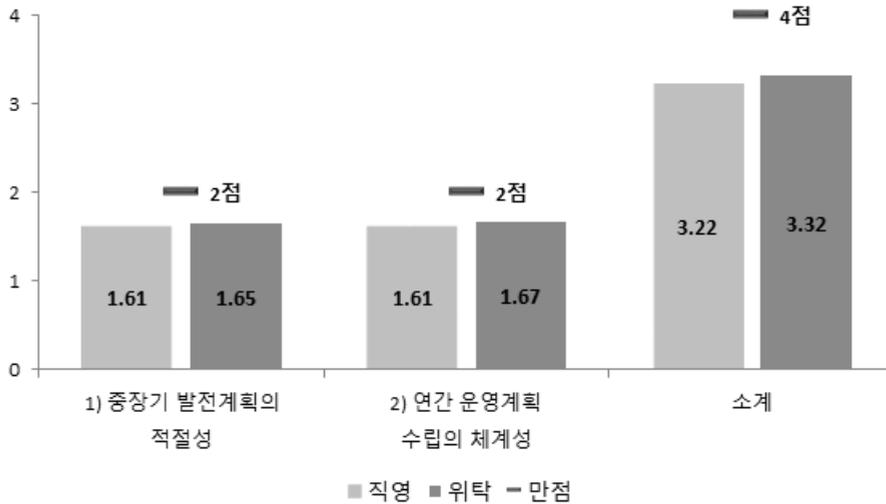
[그림 IV-1-2] 기관 운영계획의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계획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계획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4점 만점에 3.22점, 위탁시설은 3.32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7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	1.61	1.65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61	1.67
소계	4	3.22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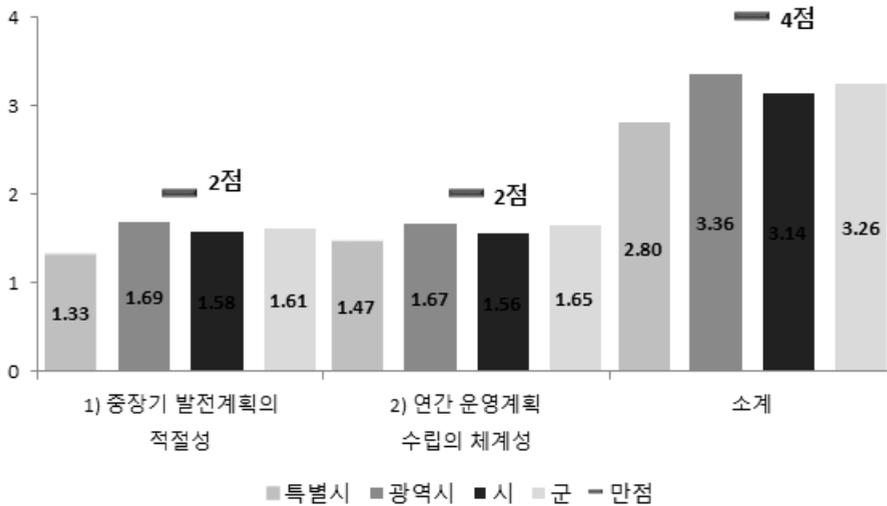
[그림 Ⅳ-1-3]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계획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계획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특별시는 4점 만점에 3.82점, 광역시는 3.24점, 시는 3.34점, 군은 3.02점으로 특별시 시설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8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	1.90	1.60	1.61	1.48
2)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의 체계성	2	1.92	1.64	1.73	1.54
소계	4	3.82	3.24	3.34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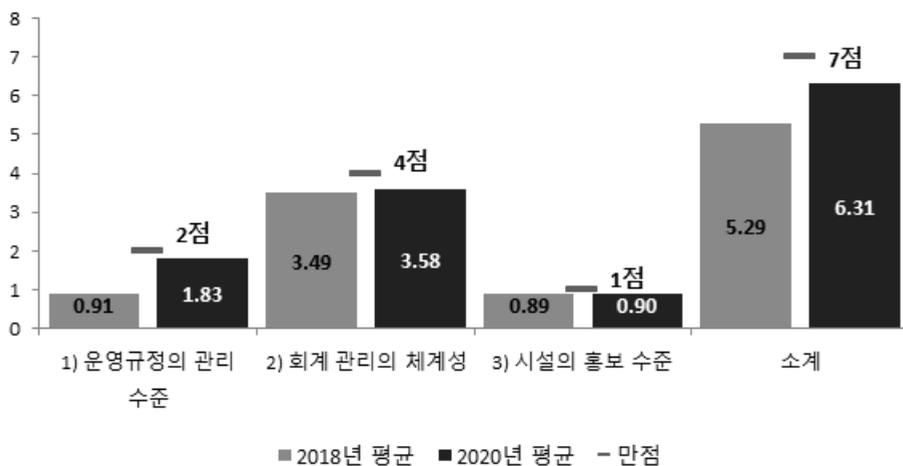
[그림 Ⅳ-1-4]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나. 기관 운영체제

- 기관 운영체제는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회계 관리의 체계성, 시설의 홍보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관 운영체제는 총점 7점 중 평균 6.31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1.02점 높아져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은 평균 1.83점, 회계 관리의 체계성은 평균 3.58점, 시설의 홍보 수준은 평균 0.90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특히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1-9 기관 운영체제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	0.91	1.83
2) 회계 관리의 체계성	4	3.49	3.58
3) 시설의 홍보 수준	1	0.89	0.90
소계	7	5.29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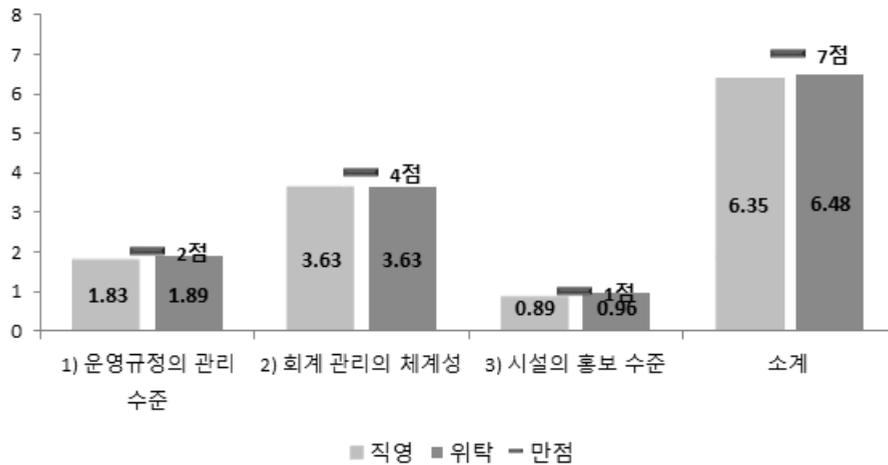
[그림 Ⅳ-1-5] 기관 운영체제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체계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체계 평가는 총점 7점 중 직영시설이 평균 6.35점, 위탁시설이 평균 6.48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각 지표별로는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과 시설의 홍보 수준에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1-10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	1.83	1.89
2) 회계 관리의 체계성	4	3.63	3.63
3) 시설의 홍보 수준	1	0.89	0.96
소계	7	6.35	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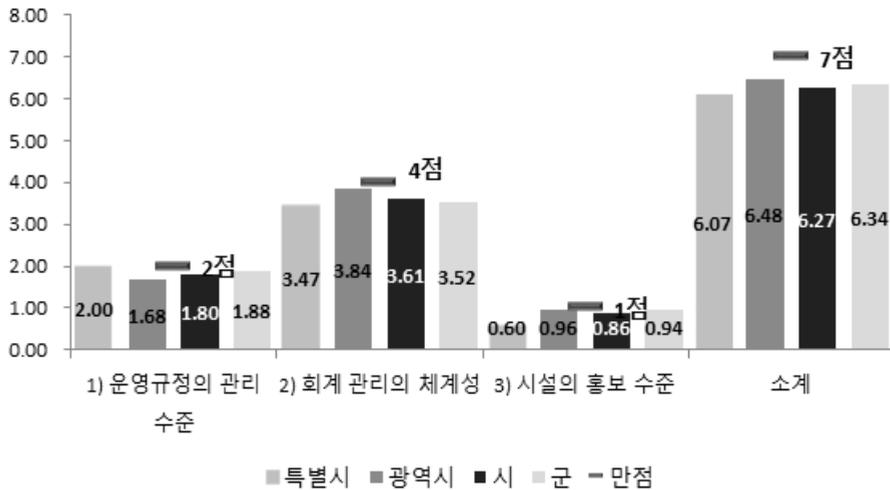
[그림 IV-1-6]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체계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체계 평가는 총점 7점 중 광역시가 6.4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6.34점), 시(6.27점), 특별시(6.07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광역시가 회계 관리의 체계성과 시설의 홍보 수준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은 특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IV-1-11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	2.00	1.68	1.80	1.88
2) 회계 관리의 체계성	4	3.47	3.84	3.61	3.52
3) 시설의 홍보 수준	1	0.60	0.96	0.86	0.94
소계	7	6.07	6.48	6.27	6.34



[그림 IV-1-7]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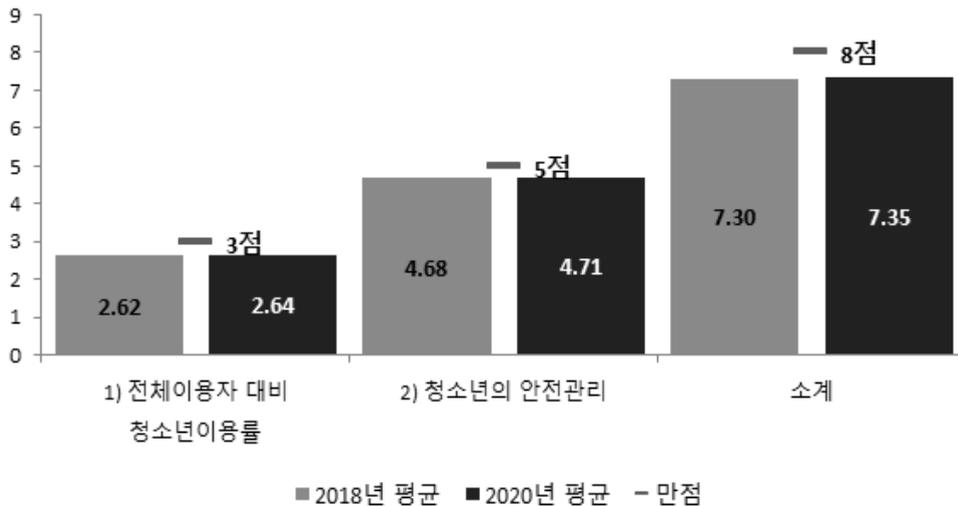
(3)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가. 청소년 이용

- 청소년이용은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과 청소년의 안전관리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이용은 총점 8점 중 평균 7.35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소폭(평균 0.0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지표별로는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은 평균 2.64점, 청소년의 안전관리는 평균 4.71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각각 평균 0.02점, 평균 0.03점 증가하였음.

표-Ⅳ-1-12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2.62	2.64
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4.68	4.71
소계	8	7.30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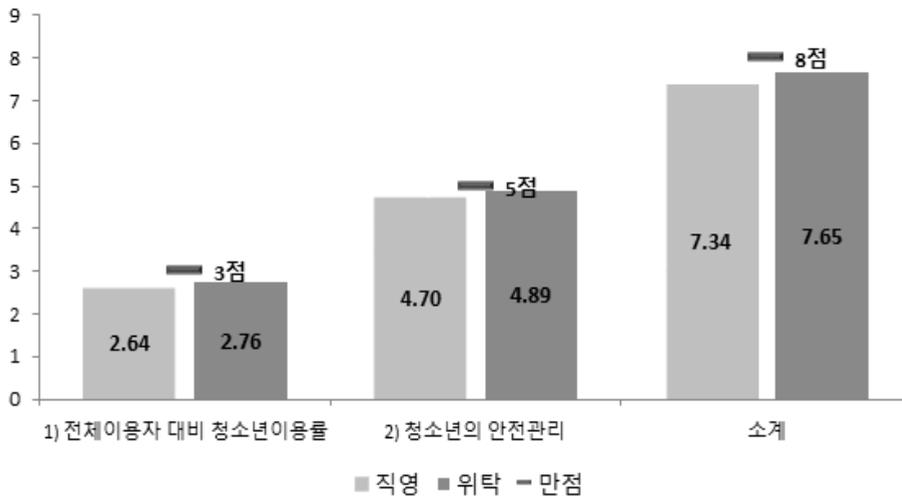
[그림 Ⅳ-1-8]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청소년이용

운영주체별 청소년이용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8점 중 직영시설이 평균 7.34점, 위탁시설이 평균 7.65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높게 나타남. 세부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13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2.64	2.76
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4.70	4.89
소계	8	7.34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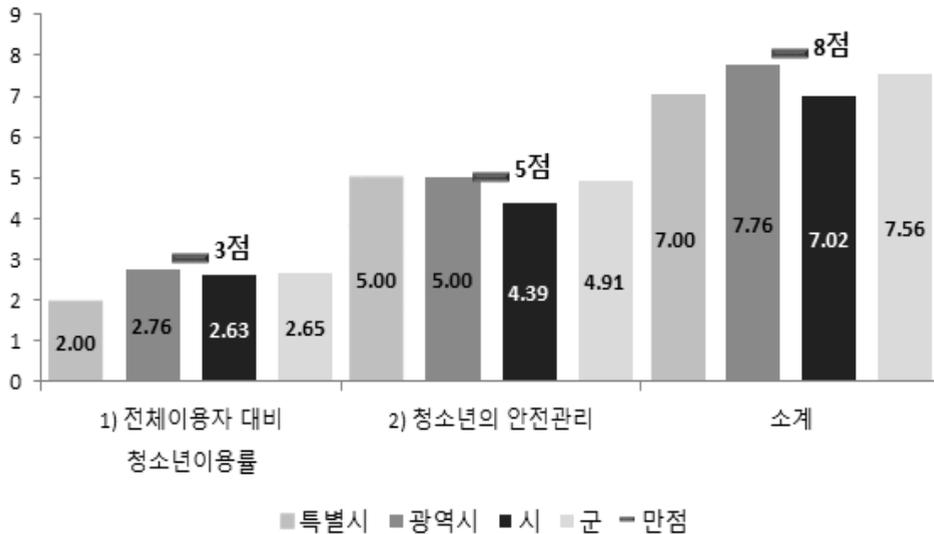
[그림 Ⅳ-1-9]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청소년이용

지역규모별 청소년이용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8점 중 광역시가 평균 7.7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7.56점), 시(평균 7.02점), 특별시(평균 7.00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특별시와 광역시 시설은 청소년 안전관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5점 만점으로 높았으나,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에서는 광역시 시설이 2.7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특별시 시설의 평균 점수는 평균 2.0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14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2.00	2.76	2.63	2.65
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5.00	5.00	4.39	4.91
소계	8	7.00	7.76	7.02	7.56



[그림 Ⅳ-1-10]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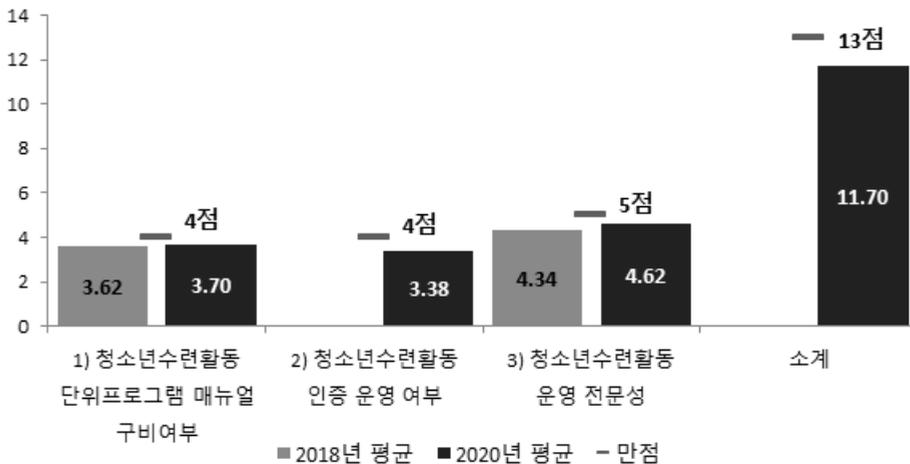
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 운영은 총점 13점 중 평균 11.7점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는 평균 3.70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평균 0.08점 증가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도 평균 4.62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0.2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1-15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	4	3.62*	3.70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4	-	3.38
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5	4.34	4.62
소계	13	-	11.7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20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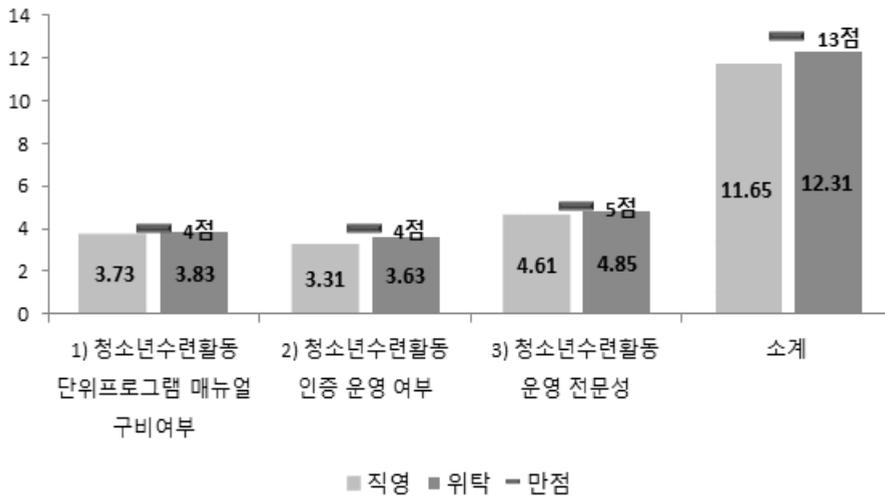
[그림 Ⅳ-1-11]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13점 만점에 평균 11.65점, 위탁시설은 평균 12.31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는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16 프로그램 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	4	3.73	3.83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4	3.31	3.63
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5	4.61	4.85
소계	13	11.65	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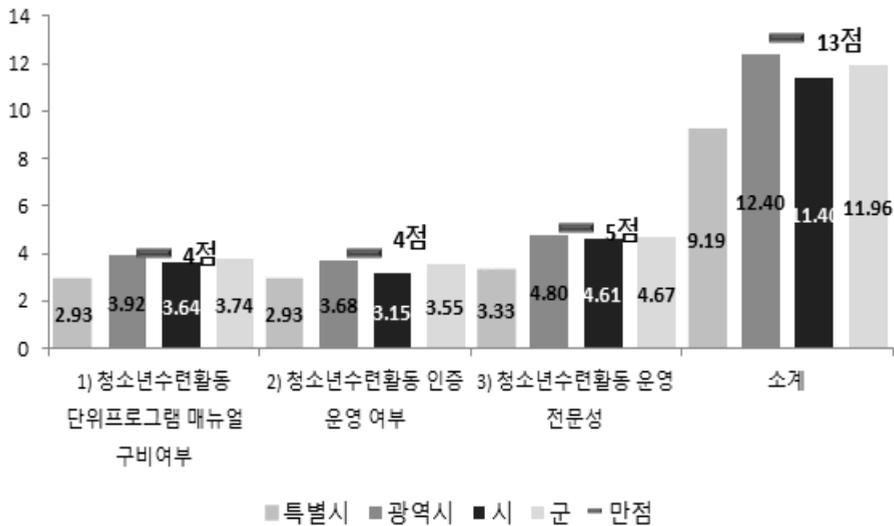
[그림 Ⅳ-1-12] 프로그램 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지역규모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3점 만점에 광역시가 평균 12.4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11.96점), 시(평균 11.40점), 특별시(평균 9.19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광역시 시설의 점수가 가장 높고 특별시 시설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17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	4	2.93	3.92	3.64	3.74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운영 여부	4	2.93	3.68	3.15	3.55
3)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	5	3.33	4.80	4.61	4.67
소계	13	9.19	12.40	11.40	11.96



[그림 Ⅳ-1-13]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4) 인사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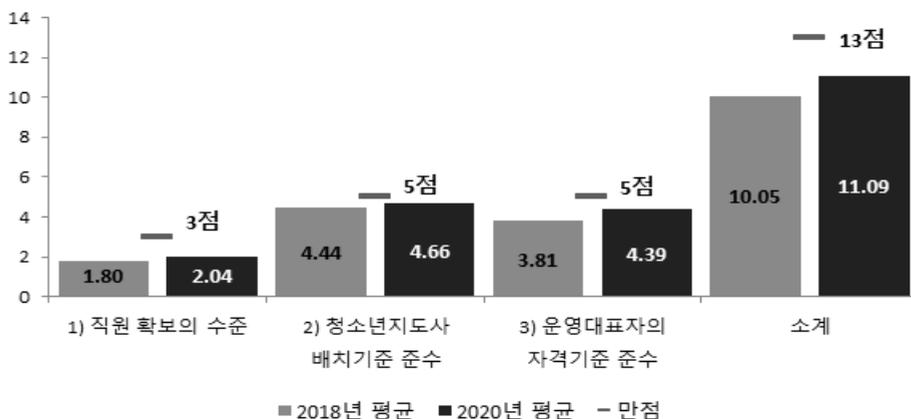
가. 직원확보

- 직원확보는 직원확보의 수준,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로구성되어 있음.
- 직원 확보는 총점 13점 중 평균 11.09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 10.05점에 비해서 평균 1.04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직원확보는 직원확보의 수준은 평균 2.04점,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는 평균 4.66점,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는 평균 4.39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각각 평균 0.24점, 평균 0.22점, 평균 0.48점 증가하였음.

표-IV-1-18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직원 확보의 수준	3	1.80*	2.04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4.44	4.66
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3.81	4.39
소계	13	10.05*	11.09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20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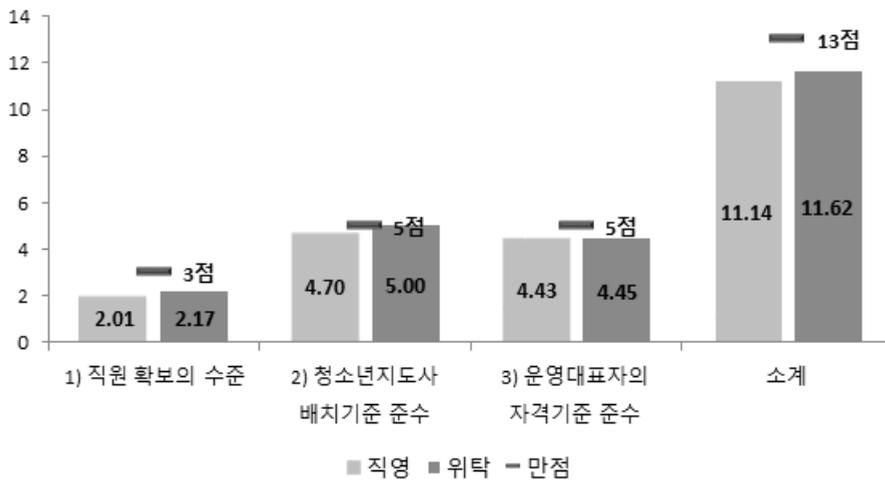
[그림 IV-1-14]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직원확보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직원확보 영역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13점 만점에 평균 11.14점, 위탁시설은 평균 11.62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서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19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직원 확보의 수준	3	2.01	2.17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4.70	5.00
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4.43	4.45
소계	13	11.14	1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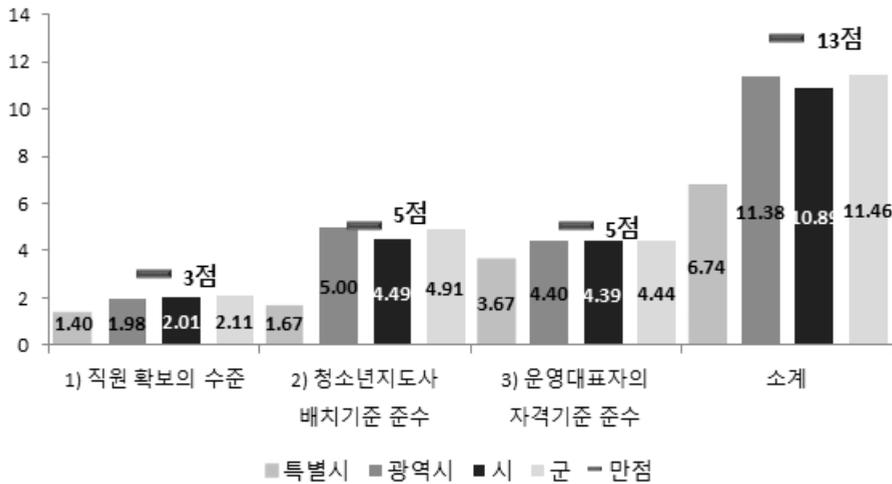
[그림 Ⅳ-1-15]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직원확보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직원확보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군이 13점 만점에 평균 11.4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평균 11.38점), 시(평균 10.89점), 특별시(평균 6.74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군지역 시설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20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직원 확보의 수준	3	1.4	1.98	2.01	2.11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1.67	5	4.49	4.91
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3.67	4.40	4.39	4.44
소계	13	6.74	11.38	10.89	1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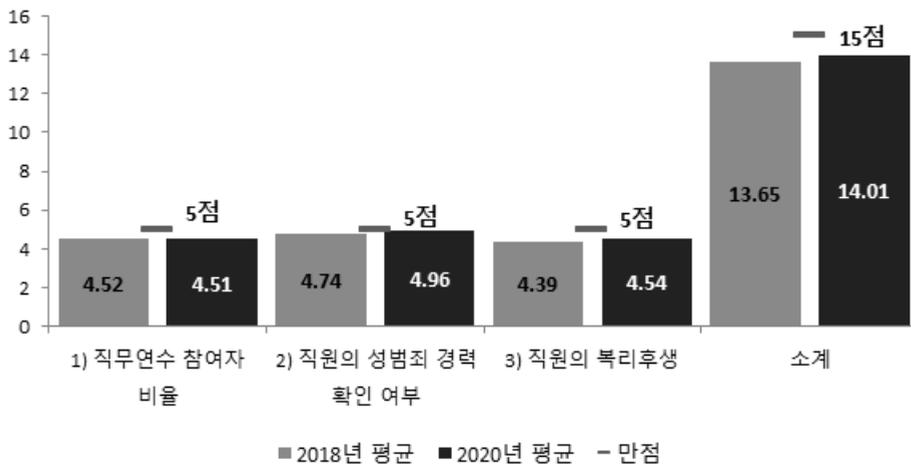
[그림 Ⅳ-1-16]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나. 직원교육 및 복지

- 직원교육 및 복지는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직원의 복리후생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교육 및 복지는 총점 15점 중 평균 14.01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평균 0.3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2018년 평가에 비해서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은 평균 0.01점 감소한 반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와 직원의 복리후생은 각각 평균 0.22점, 평균 0.1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1-21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5	4.52	4.51
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4.74	4.96
3) 직원의 복리후생	5	4.39	4.54
소계	15	13.65	1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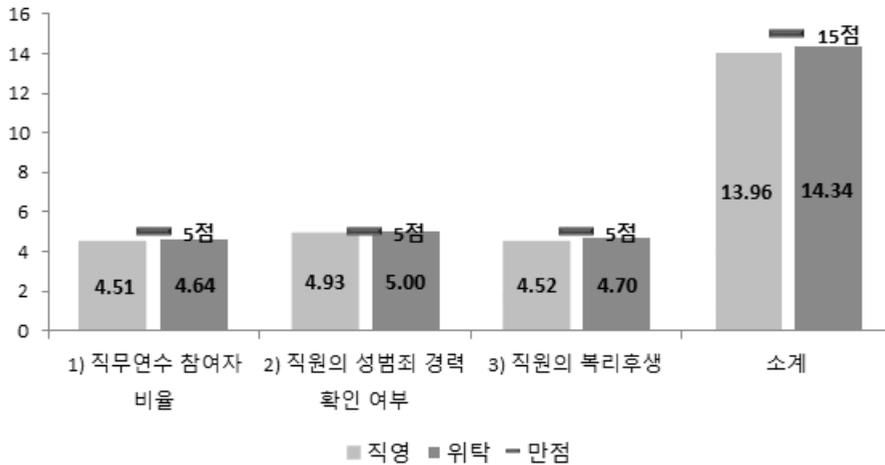
[그림 Ⅳ-1-17]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직원교육 및 복지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직원교육 및 복지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15점 만점에 평균 13.96점, 위탁시설은 평균 14.34점으로 위탁시설의 점수가 직영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22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5	4.51	4.64
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4.93	5.00
3) 직원의 복리후생	5	4.52	4.70
소계	15	13.96	1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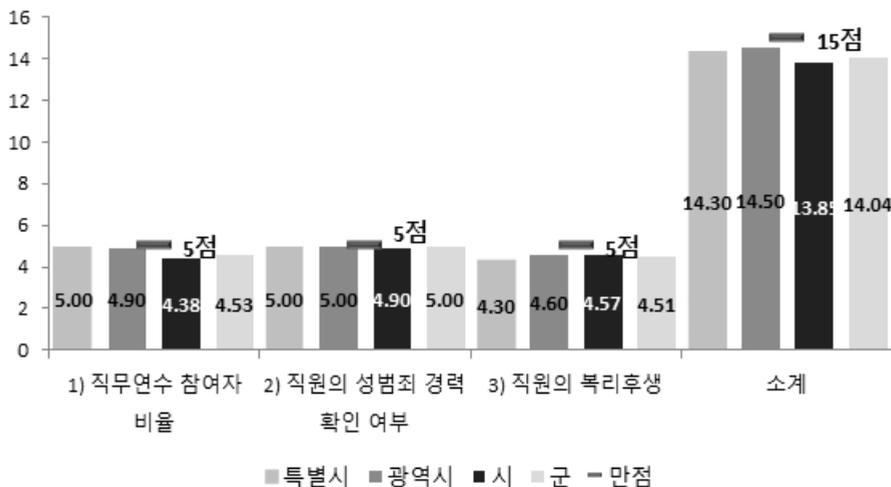
[그림 Ⅳ-1-18]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직원교육 및 복지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직원교육 및 복지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5점 만점에 광역시 평균 1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특별시(평균 14.30점), 군(평균 14.04점), 시(평균 13.85점)으로 나타남. 세부지표별로는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은 특별시가 5점 만점에 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는 시 지역(평균 4.9점)의 시설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시설이 5점 만점에 평균 5점이었으며, 직원의 복리후생은 광역시의 시설이 5점 만점에 평균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Ⅳ-1-23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5	5	4.9	4.38	4.53
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5	5	4.9	5
3) 직원의 복리후생	5	4.30	4.60	4.57	4.51
소계	15	14.30	14.50	13.85	14.04



[그림 Ⅳ-1-19] 직원교육 및 복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5) 시설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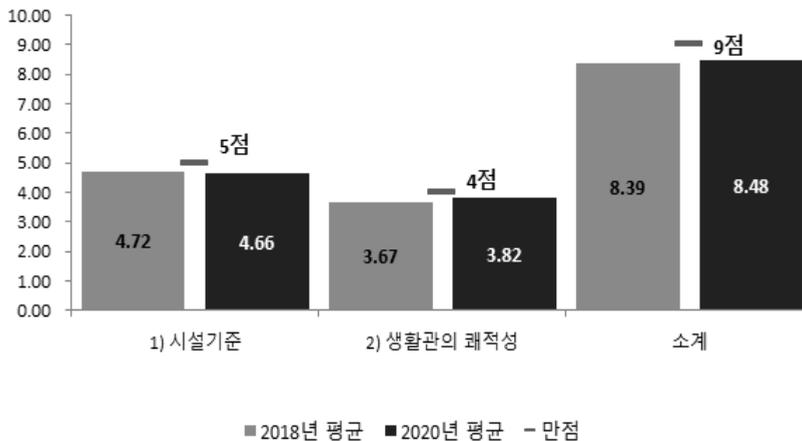
가. 시설환경

- 시설환경은 시설기준과 생활관의 쾌적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환경은 총점 9점 중 평균 8.48점으로 2018년도의 8.39점에 비해서 0.09점 높게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시설기준은 평균 4.66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0.06점 감소한데 반해서 생활관의 쾌적성은 평균 3.92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0.1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V-1-24 시설환경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시설기준	5	4.72	4.66
2) 생활관의 쾌적성	4	3.67*	3.82
소계	9	8.39*	8.48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20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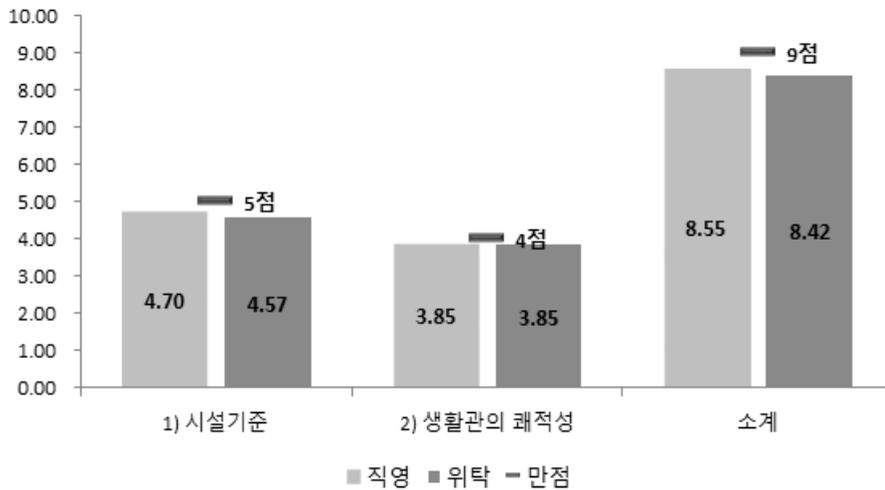
[그림 IV-1-20] 시설환경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시설환경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시설환경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9점 만점에 평균 8.55점, 위탁시설은 평균 8.42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는 생활관의 쾌적성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기준은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25 시설환경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시설기준	5	4.70	4.57
2) 생활관의 쾌적성	4	3.85	3.85
소계	9	8.55	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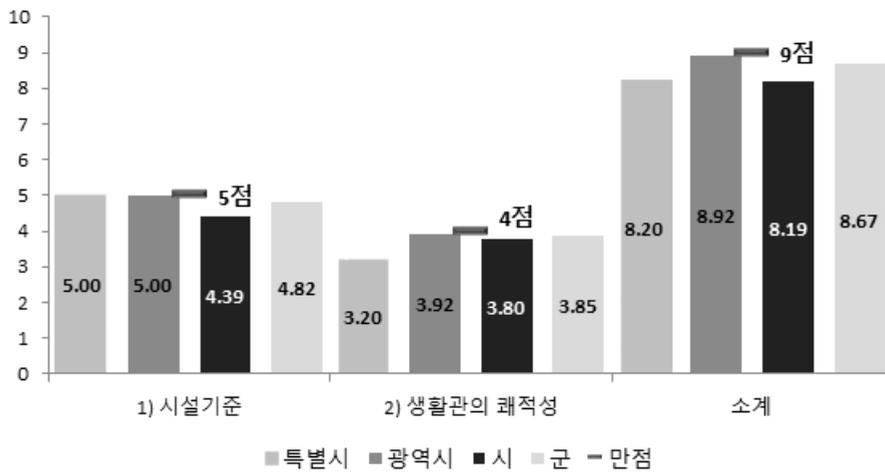
[그림 Ⅳ-1-21] 시설환경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시설환경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시설환경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가 9점 만점에 평균 8.9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8.67점), 특별시(평균 8.20점), 시(평균 8.19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시설기준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5점 만점에 평균 5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관의 쾌적성은 광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26 시설환경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시설기준	5	5	5	4.39	4.82
2) 생활관의 쾌적성	4	3.2	3.92	3.8	3.85
소계	9	8.20	8.92	8.19	8.67



[그림 Ⅳ-1-22] 시설환경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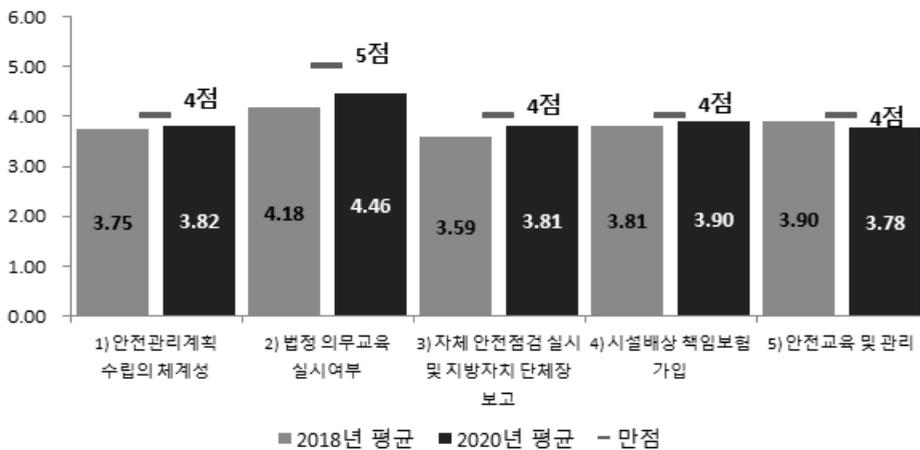
나. 안전관리

○ 안전관리는 총점 21점 중 평균 19.77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0.5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안전교육 및 관리 지표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체계성,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지표 점수는 2018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1-27 안전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4	3.75*	3.82
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4.18	4.46
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4	3.59*	3.81
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4	3.81*	3.90
5) 안전교육 및 관리	4	3.90*	3.78
소계	21	19.23*	19.77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20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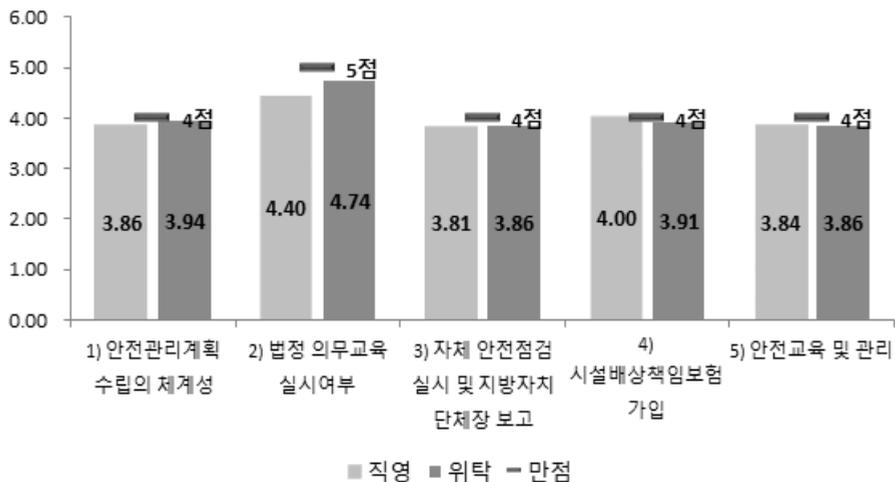
[그림 Ⅳ-1-23] 안전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안전관리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안전관리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21점 만점에 평균 19.91점, 위탁시설은 평균 20.31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서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는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1-28 안전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4	3.86	3.94
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4.40	4.74
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4	3.81	3.86
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4	4.00	3.91
5) 안전교육 및 관리	4	3.84	3.86
소계	21	19.91	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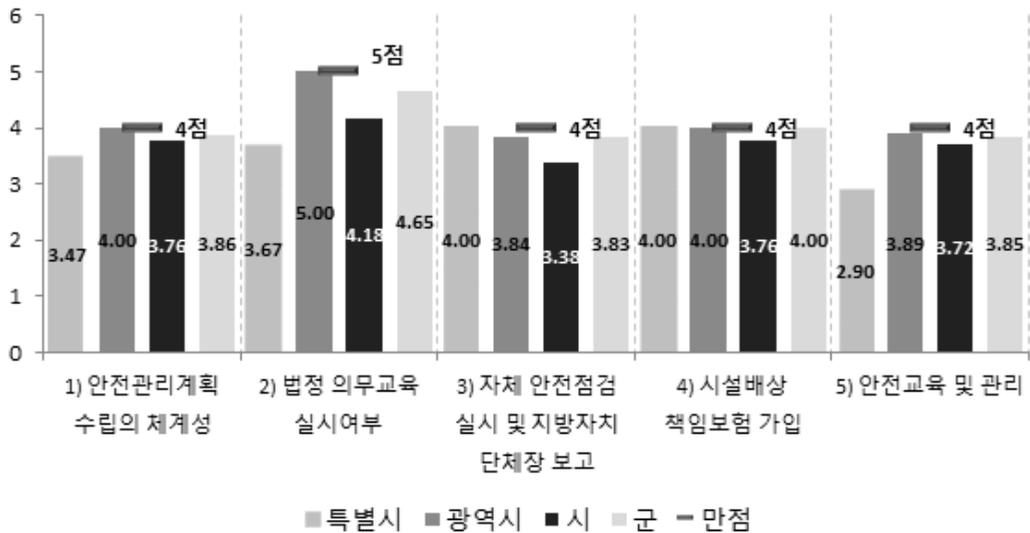
[그림 Ⅳ-1-24] 안전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안전관리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안전관리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1점 만점에 광역시가 평균 20.7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20.19점), 시(평균 18.80점), 특별시(평균 18.04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1-29 안전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4	3.47	4.00	3.76	3.86
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3.67	5.00	4.18	4.65
3)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4	4.00	3.84	3.38	3.83
4)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4	4.00	4.00	3.76	4.00
5) 안전교육 및 관리	4	2.90	3.89	3.72	3.85
소계	21	18.04	20.73	18.80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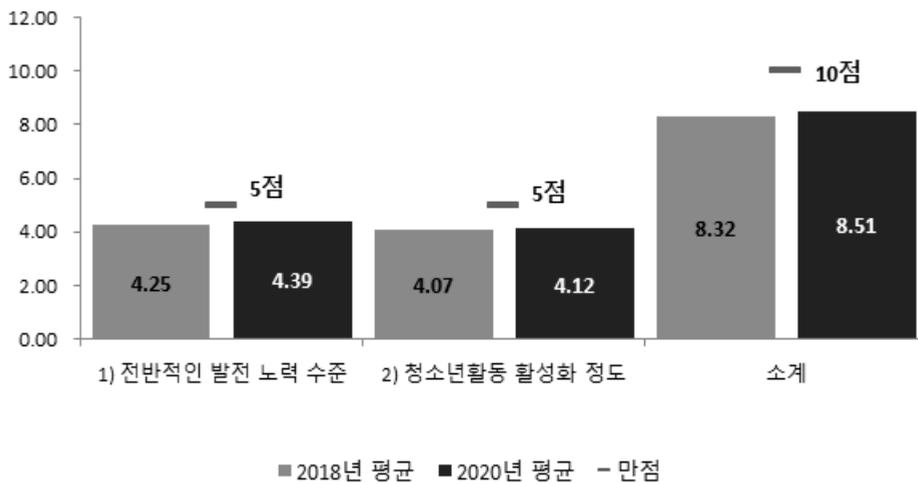
[그림 Ⅳ-1-25] 안전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6) 시설운영 발전

- 시설운영 발전은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과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운영 발전의 총점 10점 중 평균 8.51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 8.31점에 비해서 0.19점 높음. 세부 지표별로도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IV-1-30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4.25	4.39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4.07	4.12
소계	10	8.32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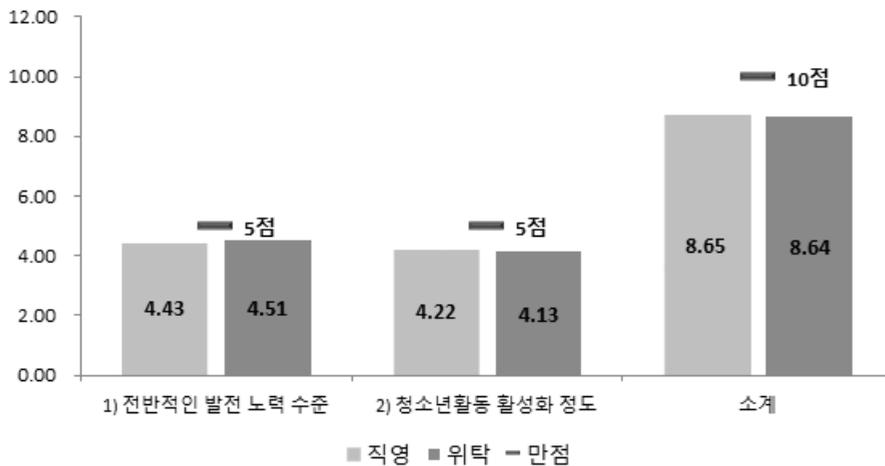
[그림 IV-1-26]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시설운영 발전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시설운영 발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10점 만점에 평균 8.65점, 위탁시설은 평균 8.64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은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높았지만,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는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음.

표-Ⅳ-1-31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4.43	4.51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4.22	4.13
소계	10	8.65	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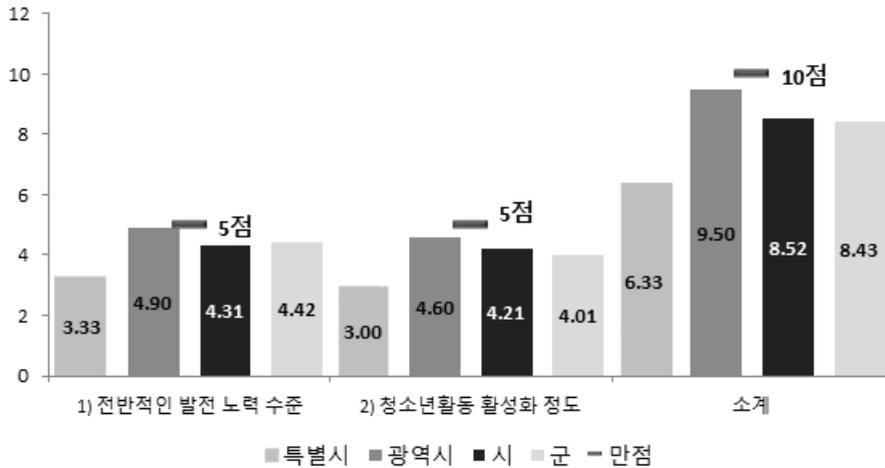
[그림 Ⅳ-1-27]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시설운영 발전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시설운영 발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광역시가 평균 9.5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평균 8.52점), 군(8.43점), 특별시(6.33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1-32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3.33	4.9	4.31	4.42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3	4.6	4.21	4.01
소계	10	6.33	9.50	8.52	8.43



[그림 Ⅳ-1-28]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 유스호스텔 평가결과

1)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평가등급별로 볼 때 전체 평가대상 70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은 33개소(47.1%)이며, 우수등급은 17개소(24.3%), 적정은 8개소(11.4%), 미흡은 5개소(7.1%), 매우미흡은 7개소(10.0%)로 나타남.

표-Ⅳ-2-1 유스호스텔 평가등급별 기준 및 해당시설 수

구분		평가기준	시설 수
평가등급	최우수	90점 이상	33개소(47.1%)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17개소(24.3%)
	적정	70점 이상 ~ 80점 미만	8개소(11.4%)
	미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5개소(7.1%)
	매우미흡	60점 미만	7개소(10.0%)
	총계		

2) 시·도별 유스호스텔 평가결과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시·도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등급의 경우에 경북이 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5개)과 제주(5개), 서울(4개), 충남(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우수등급의 경우에는 경남이 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3개), 경북(2개), 전남(2개), 전북(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우수시설 수만을 볼 때는 경북지역이 가장 많았으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최우수시설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2 유스호스텔 시·도별 평가등급별 시설 수

시·도	등급					전체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강원	5	0	1	0	0	6
경기	0	3	3	0	2	8
경남	1	4	1	2	1	9
경북	8	2	0	0	0	10
대구	1	1	0	0	0	2
대전	0	1	0	0	0	1
부산	1	0	0	0	0	1
서울	4	0	0	0	0	4
인천	1	0	0	0	1	2
전남	0	2	2	1	1	6
전북	2	2	0	0	0	4
제주	5	0	0	2	2	9
충남	3	1	1	0	0	5
충북	2	1	0	0	0	3
전체	33	17	8	5	7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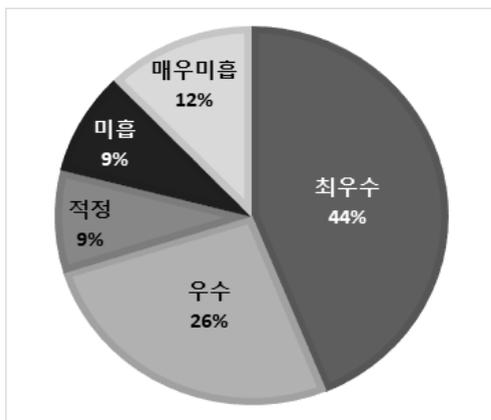
3)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결과

○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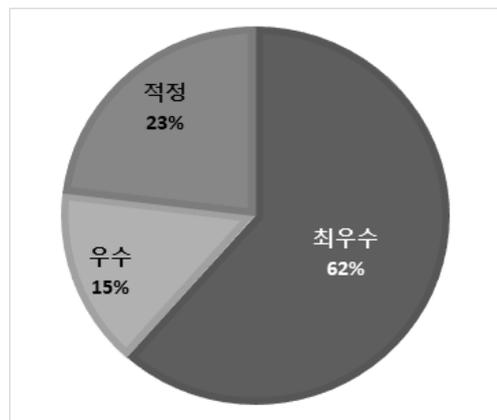
유스호스텔의 운영형태별 시설 수를 살펴보면, 70개 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18.6%(13개), 직영시설이 81.4%(57개)였음. 위탁시설 중에서 최우수시설은 61.5%(8개), 우수시설은 15.4%(2개), 적정시설은 23.1%(3개)임. 직영시설은 최우수 시설이 43.9%(25개)였고, 우수시설은 26.3%(15개), 적정시설은 8.8%(5개), 미흡시설은 8.8%(5개), 매우 미흡시설은 12.3%(7개)로 나타남.

표-Ⅳ-2-3 유스호스텔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구분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전체
직영	25	15	5	5	7	57
	43.9%	26.3%	8.8%	8.8%	12.3%	100.0%
위탁	8	2	3	0	0	13
	61.5%	15.4%	23.1%	0.0%	0.0%	100.0%
전체	33	17	8	5	7	70
	47.1%	24.3%	11.4%	7.1%	10.0%	100.0%



[직영]



[위탁]

[그림 Ⅳ-2-1] 유스호스텔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비율

4)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1)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영역은 운영 및 관리 체계,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 운영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유스호스텔 평가의 전체 평균총점은 100점 만점에 84.41점으로 운영 및 관리체계는 9.68점(14점 만점),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14.73점(18점 만점), 인사 및 조직은 10.67점(13점 만점), 시설 및 안전은 41.97점(45점 만점), 시설 운영 발전은 7.37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각 평가영역을 100점 환산 점수로 볼 때, 시설기준 및 안전이 평균 93.2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은 80점 대였으나 시설 운영 발전과 운영 및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남.

표-Ⅳ-2-4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평가영역	원점수			100점 환산점수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운영 및 관리체계	14	9.68	-4.32	69.13	-30.87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18	14.73	-3.27	81.81	-18.19
인사 및 조직	13	10.67	-2.33	82.04	-17.96
시설 및 안전	45	41.97	-3.03	93.27	-6.73
시설 운영 발전	10	7.37	-2.63	73.71	-26.29
전체	100	84.41	-15.59		

○ 유스호스텔 전체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세부 지표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에 대한 점수는 57.4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과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의 점수도 60점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회계관리의 체계성, 전체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연간 시설 가동률,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도 70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 나타남.

표-Ⅳ-2-5 유스호스텔 전체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원점수			백점환산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1.1. 기관 운영계획	3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	0.64	-0.36	63.51	-36.49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33	-0.67	66.60	-33.40
1.2. 기관 운영체계	11	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2	1.59	-0.41	79.43	-20.57
		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5	2.87	-2.13	57.43	-42.57
		3) 회계관리의 체계성	2	1.59	-0.41	79.43	-20.57
		4) 시설의 홍보 수준	2	1.66	-0.34	83.14	-16.86
I. 운영 및 관리체계			14	9.68	-4.32	69.13	-30.87
2.1. 청소년 이용	13	1) 전체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3	2.34	-0.66	78.00	-22.00
		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4.41	-0.59	88.29	-11.71
		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	3.60	-1.40	72.00	-28.00
2.2. 프로그램의 제공	5	1)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4.37	-0.63	87.43	-12.57
II.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18	14.73	-3.27	81.81	-18.19
3.1. 직원확보	6	1) 직원확보 수준	2	1.18	-0.82	58.86	-41.14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2	1.74	-0.26	87.14	-12.86
		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2	1.61	-0.39	80.57	-19.43
3.2. 직원운영	7	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3	2.96	-0.04	98.57	-1.43
		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4	3.18	-0.82	79.43	-20.57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원점수			백점환산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III. 인사 및 조직			13	10.67	-2.33	82.04	-17.96	
4.1. 시설관리	18	1) 연간 시설 가동률	2	1.49	-0.51	74.57	-25.43	
		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3	3.00	0.00	100	0.00	
		3) 시설 개선 노력	3	2.85	-0.15	94.86	-5.14	
		4) 시설 관리의 적정성	① 숙박실의 적정성	2	1.95	-0.05	97.29	-2.71
			②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2	1.83	-0.17	91.43	-8.57
			③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2	1.65	-0.35	82.57	-17.43
			④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2	1.98	-0.02	98.86	-1.14
⑤ 지도사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2		1.88	-0.12	94.00	-6.00		
4.2. 시설운영 관리	9	1) 시설 운영기준 준수	3	2.81	-0.19	93.71	-6.29	
		2) 생활지도 기준 준수	3	2.80	-0.20	93.43	-6.57	
		3) 숙박정원 기준 준수	3	2.98	-0.02	99.43	-0.57	
4.3. 안전 및 위생관리	18	1)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4	3.67	-0.33	91.71	-8.29	
		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3	2.79	-0.21	93.14	-6.86	
		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3	2.70	-0.30	90.00	-10.00	
		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4	3.90	-0.10	97.43	-2.57	
		5) 안전교육 및 관리	4	3.69	-0.31	92.34	-7.66	
IV. 시설 및 안전			45	41.97	-3.03	93.27	-6.73	
5.1. 시설운영 발전	10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3.87	-1.13	77.43	-22.57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3.50	-1.50	70.00	-30.00	
V. 시설운영 발전			10	7.37	-2.63	73.71	-26.29	
합계			100	84.41	-1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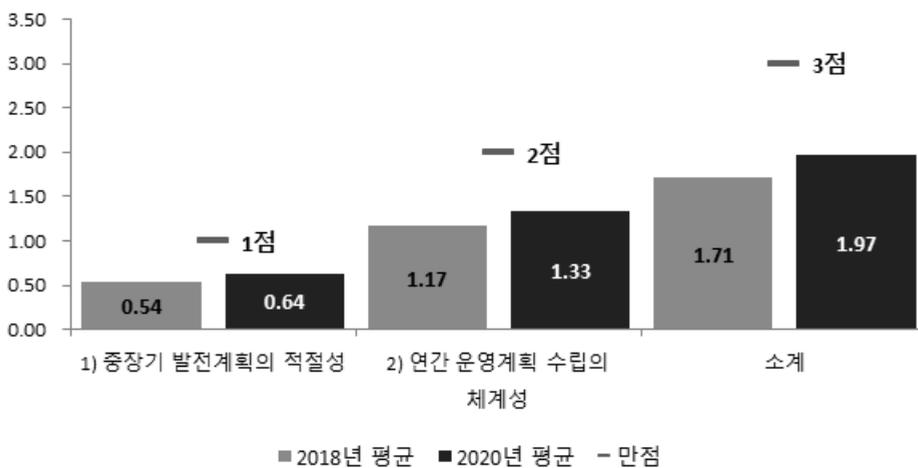
(2) 운영 및 관리체계

가. 기관 운영계획

- 운영 및 관리체계는 기관 운영계획과 기관 운영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운영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과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관 운영계획은 총점 3점 중 평균 1.97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 1.71점에 비해서 0.26점 증가하였지만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은 평균 0.64점, 연간 운영계획의 체계성은 평균 1.33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각각 평균 0.10점, 평균 0.1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2-6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	0.54	0.64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17	1.33
소계	3	1.71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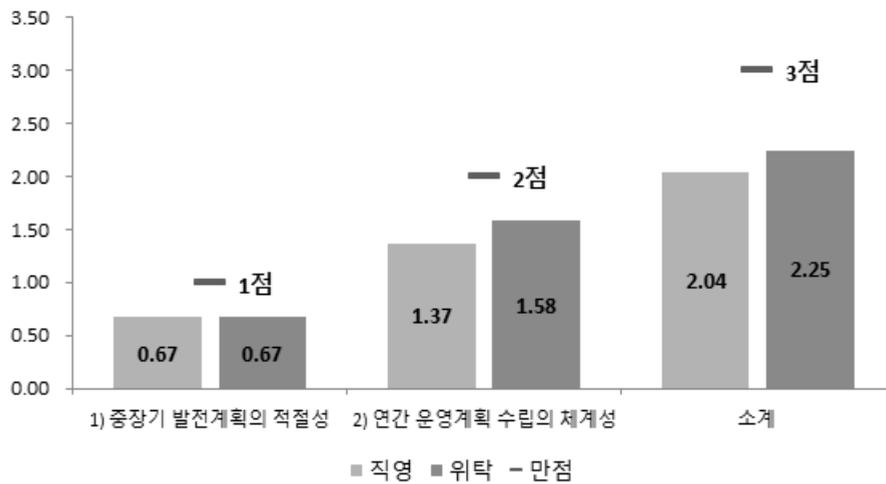
[그림 Ⅳ-2-2]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계획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계획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3점 만점에 평균 2.04점, 위탁시설은 평균 2.25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에서는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7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	0.67	0.67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37	1.58
소계	3	2.04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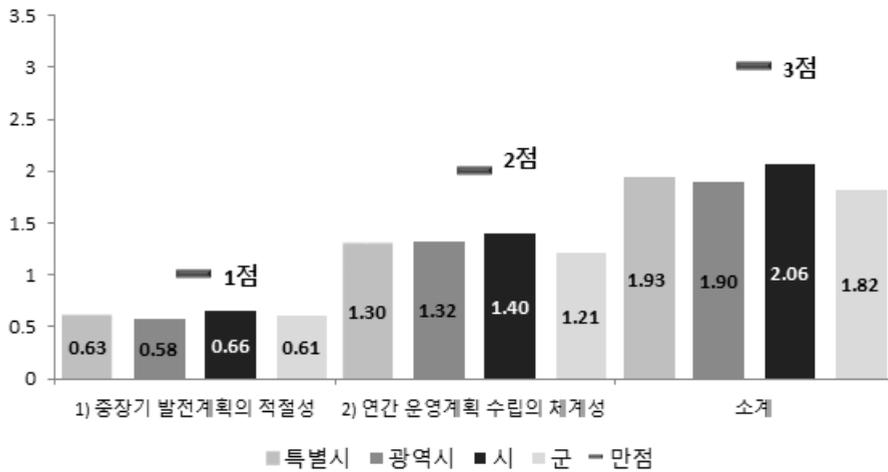
[그림 Ⅳ-2-3] 기관 운영계획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계획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체계는 총점 3점 중 시가 평균 2.0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특별시(평균 1.93점), 광역시(1.90점), 군(1.82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시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8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	0.63	0.58	0.66	0.61
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	1.3	1.32	1.4	1.21
소계	3	1.93	1.90	2.06	1.82



[그림 Ⅳ-2-4] 기관 운영계획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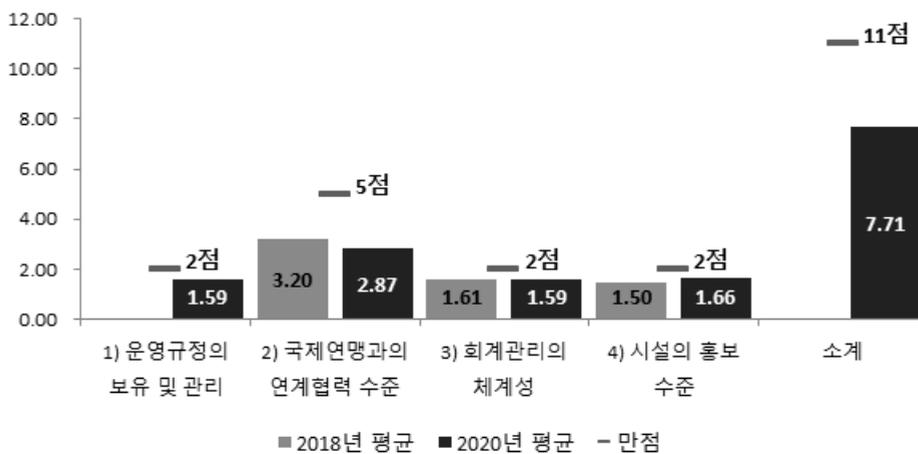
나. 기관 운영체계

- 기관 운영체계는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회계관리의 체계성, 시설의 홍보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관 운영체계는 총점 11점 중 평균 7.71점으로 나타남. 2018년 평가 결과에 비해서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과 회계관리의 체계성 점수는 낮았고, 시설의 홍보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2-9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2	-	1.59
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5	3.20	2.87
3) 회계관리의 체계성	2	1.61	1.59
4) 시설의 홍보 수준	2	1.50*	1.66
소계	11		7.71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20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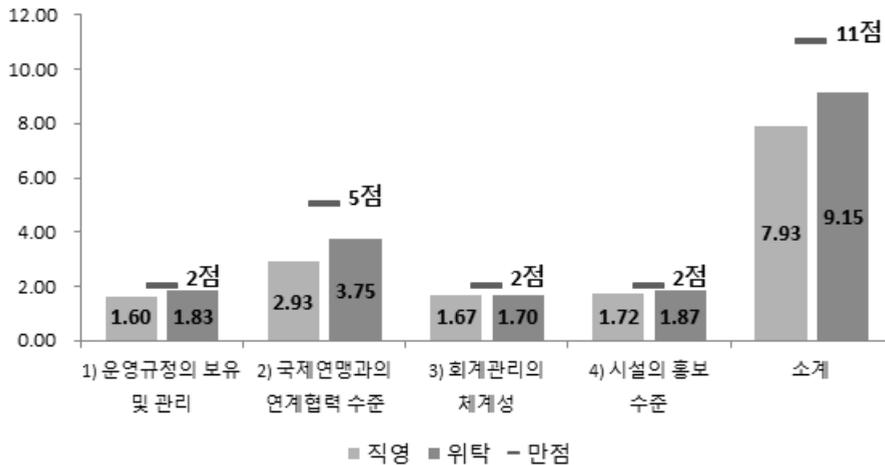
[그림 Ⅳ-2-5]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체계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기관 운영체계는 총점 11점 중 직영시설이 평균 7.93점, 위탁시설이 평균 9.15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10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2	1.60	1.83
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5	2.93	3.75
3) 회계관리의 체계성	2	1.67	1.70
4) 시설의 홍보 수준	2	1.72	1.87
소계	11	7.93	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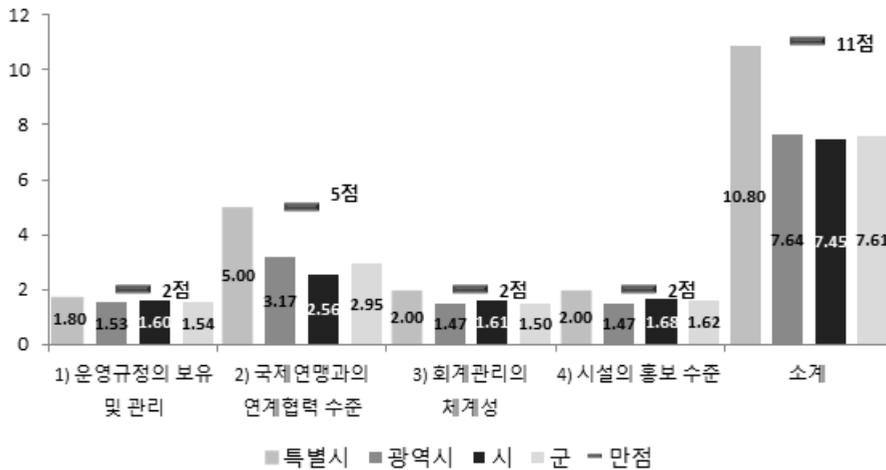
[그림 Ⅳ-2-6] 기관 운영체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체계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체계 평가는 총점 11점 중 특별시가 평균 10.8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평균 7.64점), 군(평균 7.61점), 시(7.45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특별시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11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2	1.8	1.53	1.6	1.54
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5	5.00	3.17	2.56	2.95
3) 회계관리의 체계성	2	2.00	1.47	1.61	1.50
4) 시설의 홍보 수준	2	2.00	1.47	1.68	1.62
소계	11	10.80	7.64	7.45	7.61



[그림 Ⅳ-2-7] 기관 운영체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3)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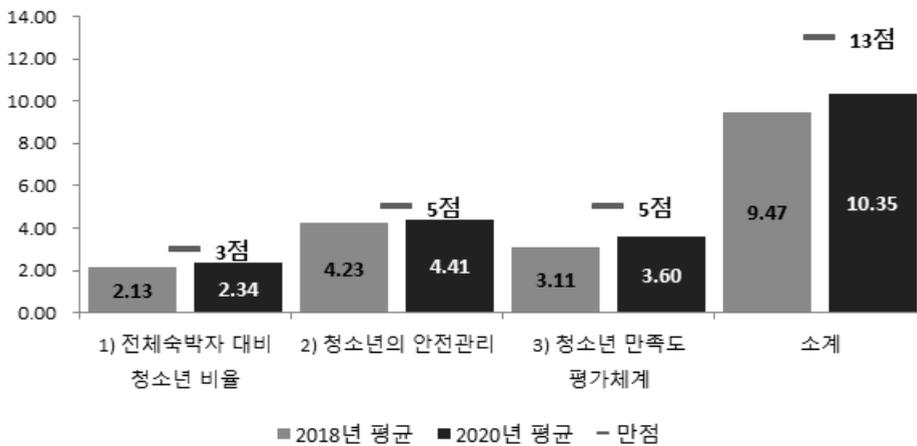
가. 청소년 이용

- 청소년이용은 전체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청소년의 안전관리,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이용은 총점 13점 중 평균 10.35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88점 증가하였음. 세부 지표별로도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2-12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전체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3	2.13	2.34
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4.23	4.41
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	3.11	3.60
소계	13	9.47	10.35

* : 2015년 평균 수치는 2017, 2019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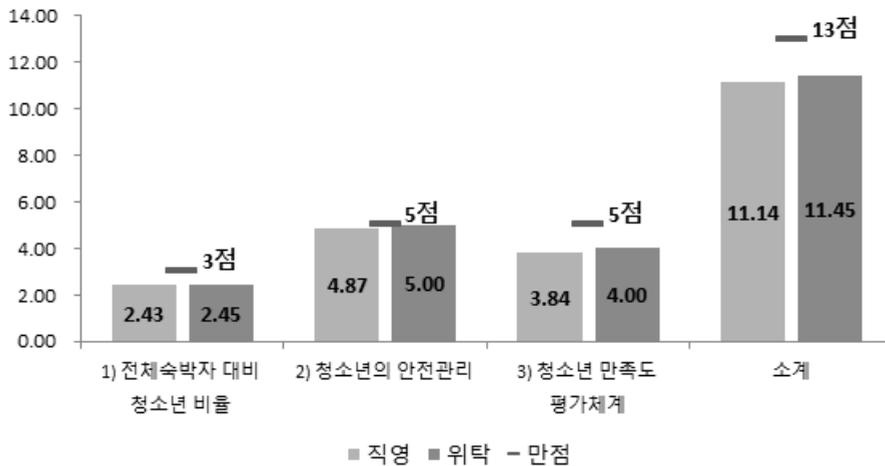
[그림 Ⅳ-2-8] 청소년 이용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청소년이용

운영주체별 청소년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13점 중 직영시설이 평균 11.14점, 위탁시설이 평균 11.45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높음. 세부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Ⅳ-2-13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전체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3	2.43	2.45
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4.87	5.00
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	3.84	4.00
소계	13	11.14	1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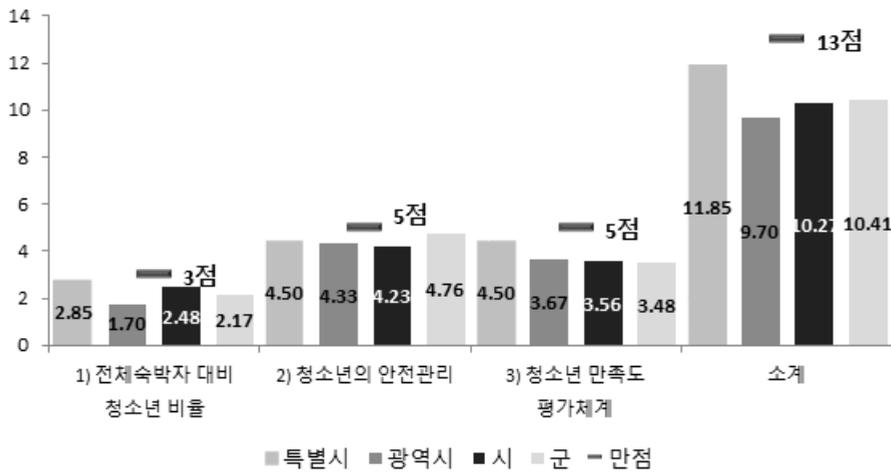
[그림 Ⅳ-2-9] 청소년 이용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청소년이용

지역규모별 청소년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13점 중 특별시가 평균 11.8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10.41점), 시(평균 10.27점), 광역시(평균 9.70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2-14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전체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3	2.85	1.7	2.48	2.17
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4.5	4.33	4.23	4.76
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	4.50	3.67	3.56	3.48
소계	13	11.85	9.70	10.27	1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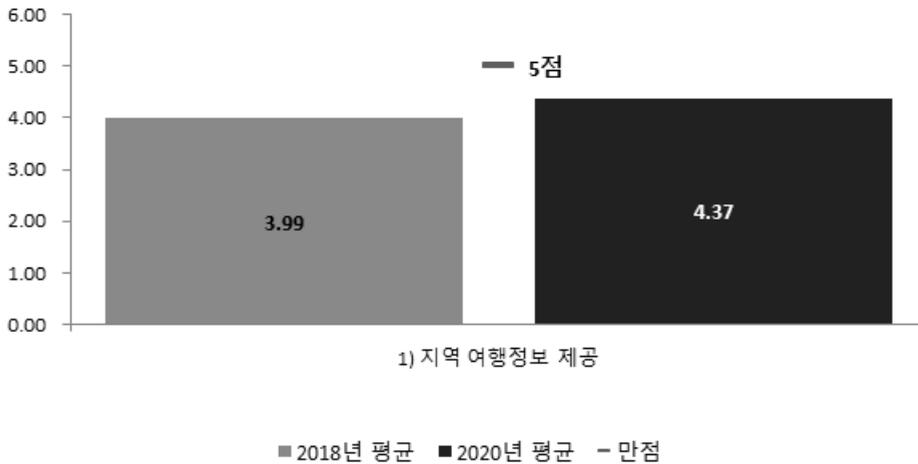
[그림 Ⅳ-2-10] 청소년 이용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나. 프로그램의 제공

- 프로그램의 제공은 지역 여행정보 제공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 여행 지표는 총점 5점 중 평균 4.37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3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2-15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3.99	4.37
소계	5	3.99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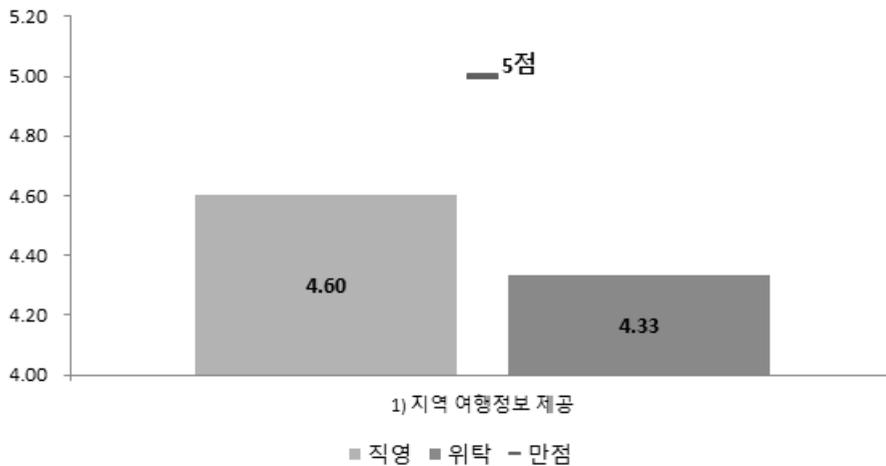
[그림 Ⅳ-2-11]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프로그램의 제공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5점 만점에 평균 4.60점, 위탁시설은 평균 4.33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16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4.60	4.33
소계	5	4.60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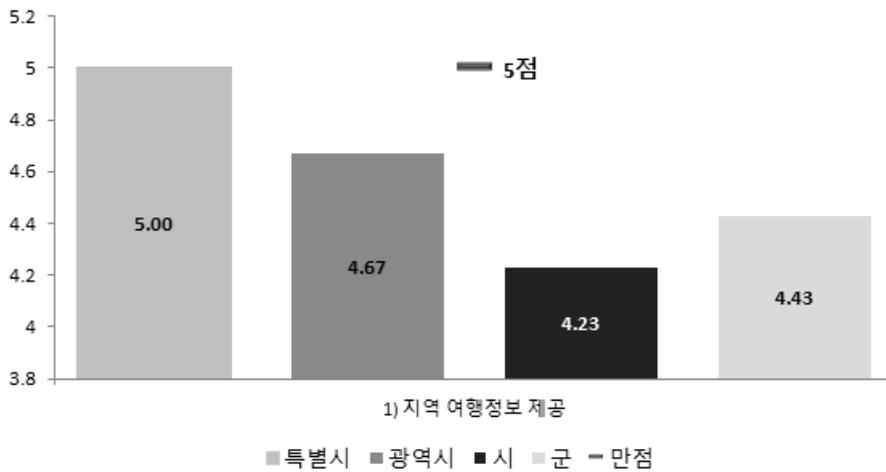
[그림 Ⅳ-2-12]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프로그램의 제공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특별시가 평균 5.0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평균 4.67점), 군(4.43점), 시(4.23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2-17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5.00	4.67	4.23	4.43
소계	5	5.00	4.67	4.23	4.43



[그림 Ⅳ-2-13] 프로그램의 제공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4) 인사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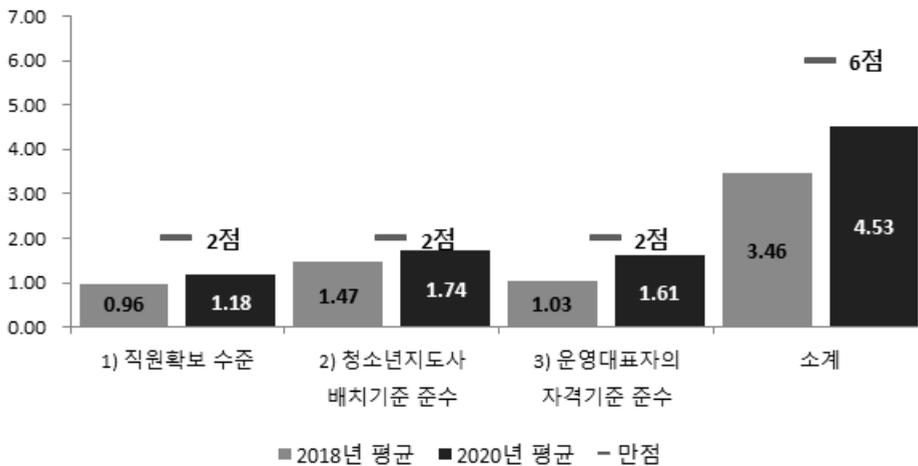
가. 직원확보

- 인사 및 조직은 직원확보와 직원운영으로 구분되며, 직원확보는 직원확보 수준,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확보 항목은 총점 6점 중 평균 4.53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1.07점 높았음. 세부지표별로도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18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직원확보 수준	2	0.96*	1.18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2	1.47	1.74
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2	1.03	1.61
소계	6	3.46	4.53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20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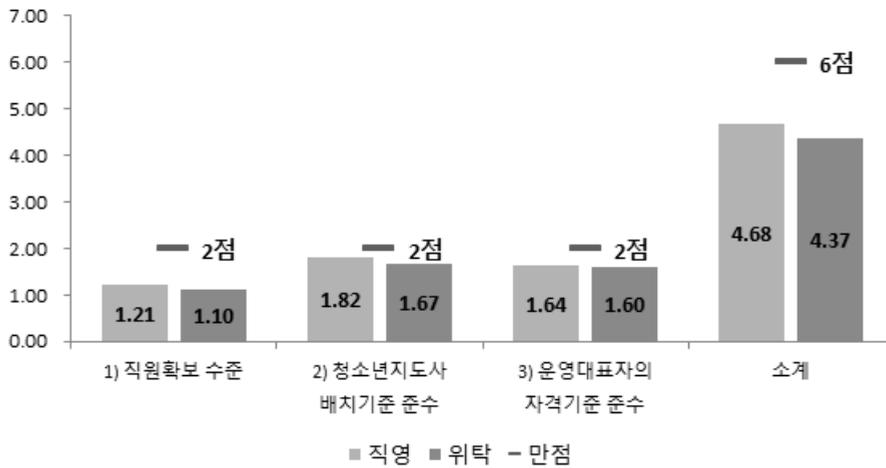
[그림 Ⅳ-2-14] 직원확보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직원확보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직원확보 영역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6점 만점에 평균 4.68점, 위탁시설은 평균 4.37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에 비해서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도 직영시설이 위탁시설에 비해서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19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직원확보 수준	2	1.21	1.10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2	1.82	1.67
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2	1.64	1.60
소계	6	4.68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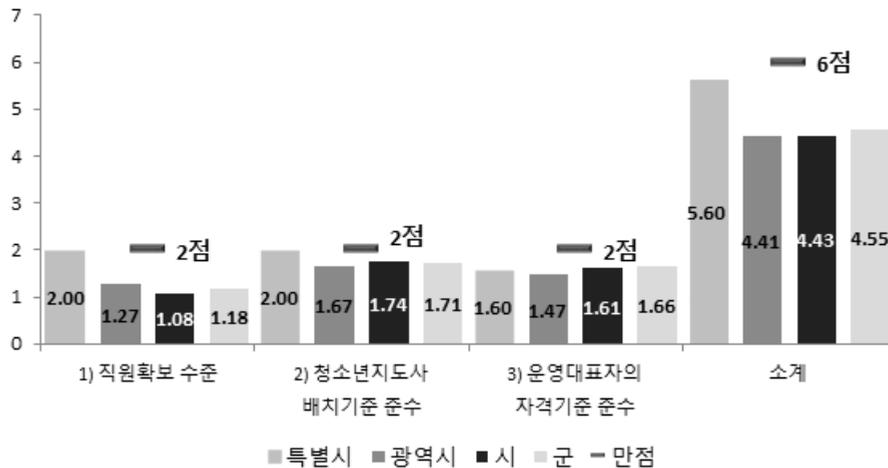
[그림 Ⅳ-2-15] 직원확보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직원확보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직원확보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6점 만점에 특별시가 평균 5.6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4.55점), 시(평균 4.43점), 광역시(평균 4.41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직원확보 수준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는 특별시가 가장 점수 높았으나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는 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20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직원확보 수준	2	2.00	1.27	1.08	1.18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2	2.00	1.67	1.74	1.71
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2	1.60	1.47	1.61	1.66
소계	6	5.60	4.41	4.43	4.55



[그림 Ⅳ-2-16] 직원확보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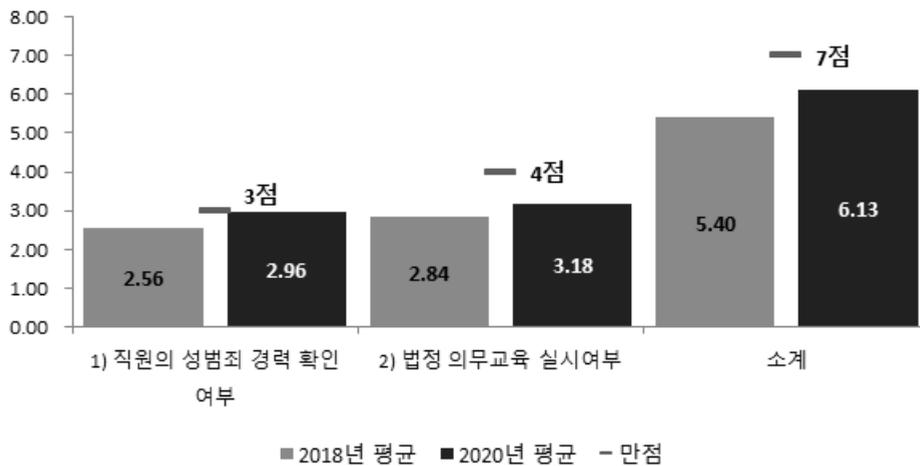
나. 직원운영

- 직원운영은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와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로 구성됨.
- 직원 운영은 총점 7점 중 평균 6.13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73점 높음.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와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모두 2018년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2-21 직원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3	2.56	2.96
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4	2.84*	3.18
소계	7	5.40	6.13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18평가지표의 3.2.2지표와 3.2.3지표를 환산하여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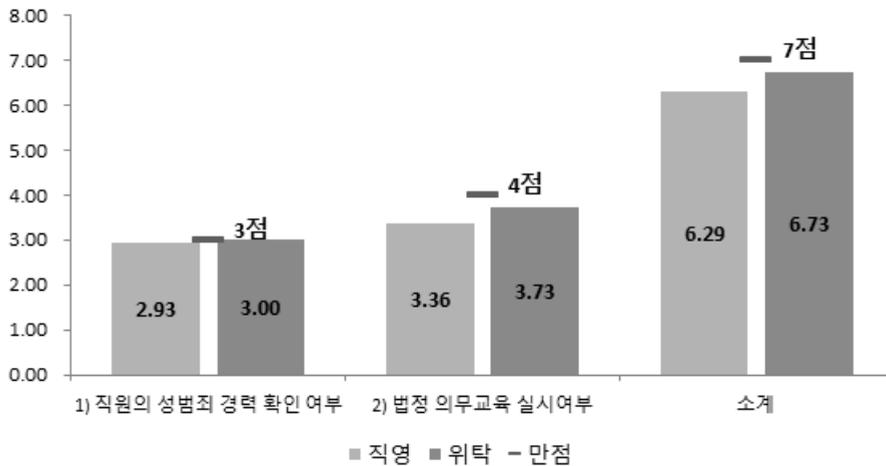
[그림 Ⅳ-2-17] 직원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직원운영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직원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직영시설은 7점 만점에 평균 6.29점, 위탁시설은 평균 6.73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Ⅳ-2-22 직원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3	2.93	3.00
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4	3.36	3.73
소계	7	6.29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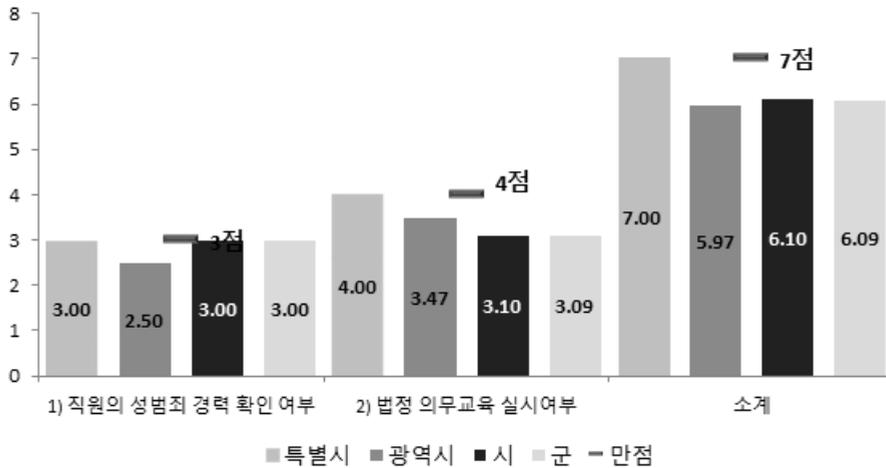
[그림 Ⅳ-2-18] 직원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직원운영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직원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7점 만점에 특별시가 평균 7.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평균 6.10점), 군(평균 6.09점), 광역시(평균 5.97)점으로 나타남. 세부지표별로도 특별시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23 직원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3	3	2.5	3	3
2)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4	4	3.47	3.1	3.09
소계	7	7.00	5.97	6.10	6.09



[그림 Ⅳ-2-19] 직원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5) 시설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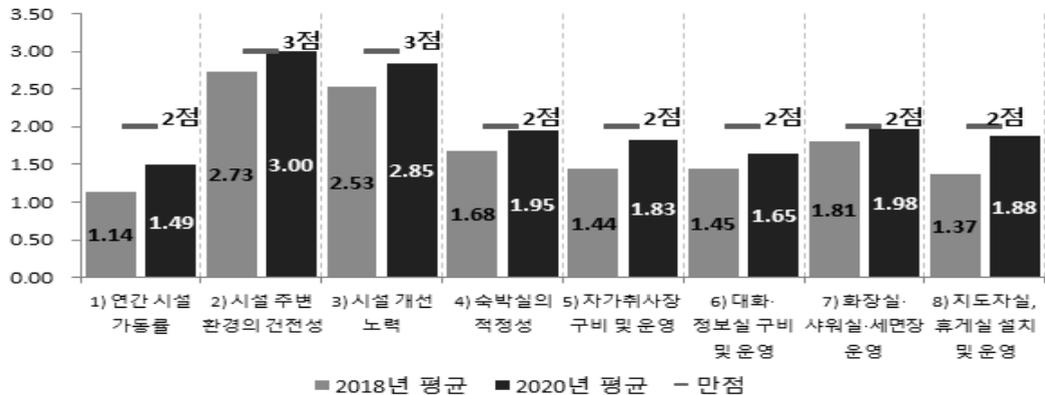
가. 시설관리

- 시설관리영역은 연간 시설 가동률,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시설 개선 노력, 시설관리의 적정성(숙박실의 적정성,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지도사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됨.
- 시설관리영역은 총점 18점 중 평균 16.62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2.47점 증가하였음. 세부 지표별로도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2-24 시설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연간 시설 가동률	2	1.14	1.49
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3	2.73	3.00
3) 시설 개선 노력	3	2.53	2.85
4) 숙박실의 적정성	2	1.68	1.95
5)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2	1.44	1.83
6)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2	1.45	1.65
7)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2	1.81	1.98
8) 지도사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2	1.37	1.88
소계	18	14.15	16.62

* : 2015년 평균 수치는 2017, 2019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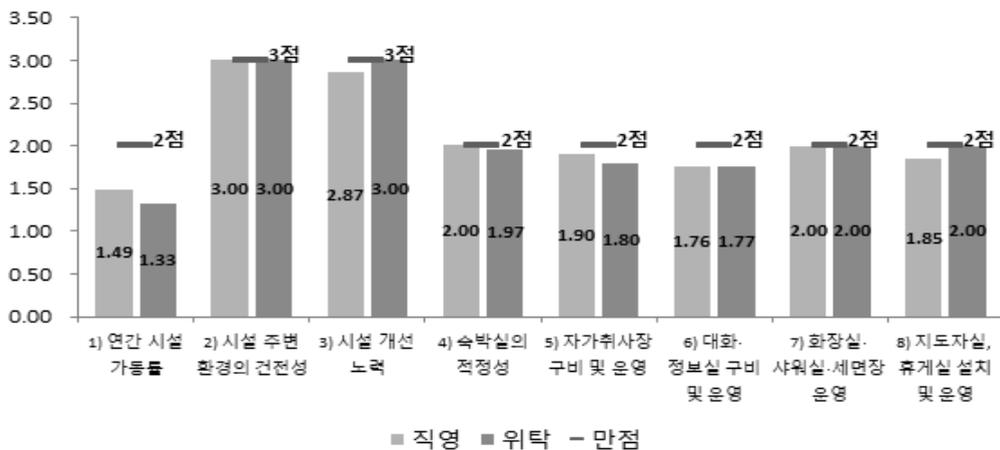
[그림 Ⅳ-2-20] 시설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시설관리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시설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8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평균 16.88점, 위탁시설은 평균 16.87점으로 위탁시설과 직영시설이 거의 비슷함. 세부 지표별로는 직영시설은 연간 시설 가동률, 숙박실의 적정성,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에서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반면, 위탁시설은 시설 개선 노력,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지도사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에서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25 시설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연간 시설 가동률	2	1.49	1.33
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3	3.00	3.00
3) 시설 개선 노력	3	2.87	3.00
4) 숙박실의 적정성	2	2.00	1.97
5)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2	1.90	1.80
6)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2	1.76	1.77
7)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2	2.00	2.00
8) 지도사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2	1.85	2.00
소계	18	16.88	1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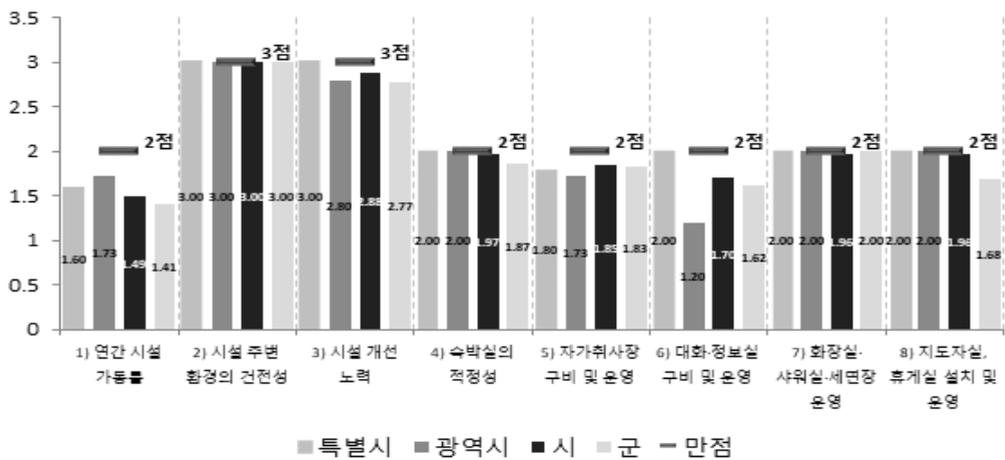
[그림 Ⅳ-2-21] 시설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시설관리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시설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8점 만점에 서울시가 평균 17.4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평균 16.81점), 광역시(16.46점), 군(16.18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만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특별시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26 시설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연간 시설 가동률	2	1.6	1.73	1.49	1.41
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3	3.00	3.00	3.00	3.00
3) 시설 개선 노력	3	3.00	2.80	2.88	2.77
4) 숙박실의 적정성	2	2.00	2.00	1.97	1.87
5)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2	1.80	1.73	1.85	1.83
6)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2	2.00	1.20	1.70	1.62
7)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2	2.00	2.00	1.96	2.00
8)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2	2.00	2.00	1.96	1.68
소계	18	17.40	16.46	16.81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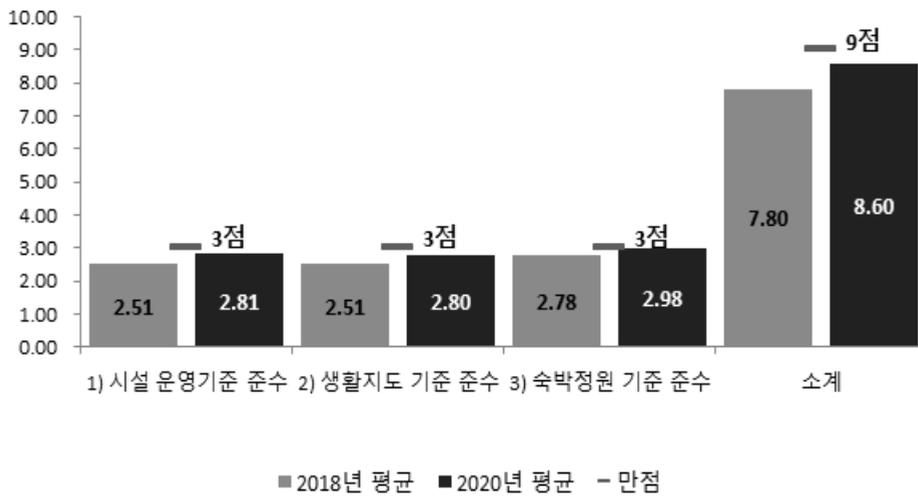
[그림 Ⅳ-2-22] 시설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나. 시설운영 관리

○ 시설 운영 관리는 총점 9점 중 평균 8.60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0.8점 높아졌음. 세부 지표별로도 모든 지표에서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의 평가결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2-27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시설 운영기준 준수	3	2.51	2.81
2) 생활지도 기준 준수	3	2.51	2.80
3) 숙박정원 기준 준수	3	2.78	2.98
소계	9	7.80	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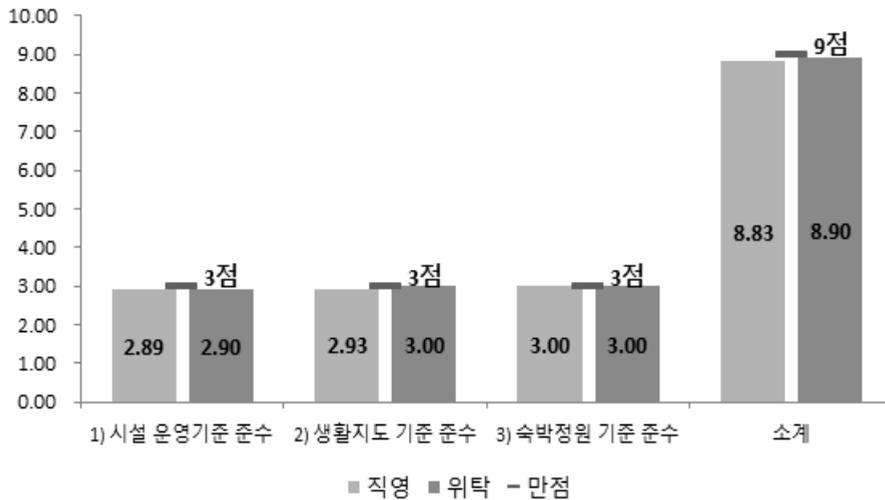
[그림 Ⅳ-2-23]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시설운영 관리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9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평균 8.83점, 위탁시설은 평균 8.90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서 0.07점 높아졌음. 세부 지표별로는 숙박정원 기준 준수는 2018년도의 평가결과와 같았으나 시설 운영기준 준수와 생활지도 기준 준수에서는 2018년 평가결과에 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2-28 시설운영 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시설 운영기준 준수	3	2.89	2.90
2) 생활지도 기준 준수	3	2.93	3.00
3) 숙박정원 기준 준수	3	3.00	3.00
소계	9	8.83	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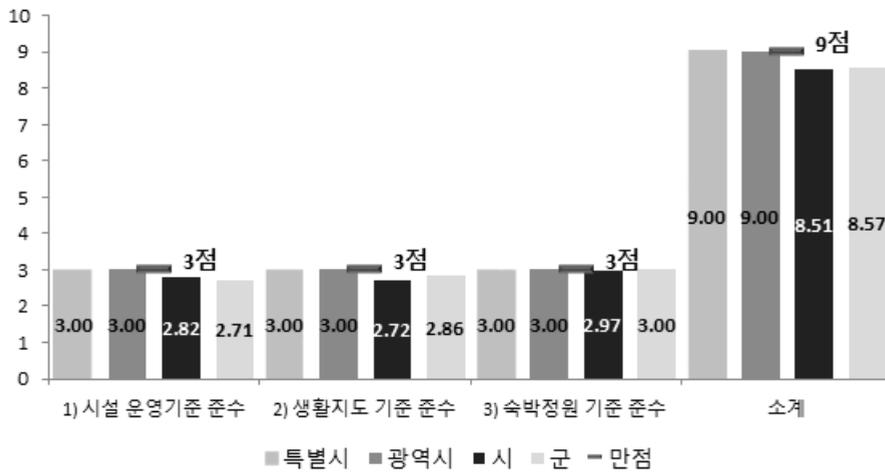
[그림 Ⅳ-2-24] 시설운영 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시설운영 관리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9점 만점에 특별시와 광역시가 각각 평균 9.0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8.57점), 시(평균 8.51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2-29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시설 운영기준 준수	3	3	3	2.82	2.71
2) 생활지도 기준 준수	3	3	3	2.72	2.86
3) 숙박정원 기준 준수	3	3.00	3.00	2.97	3.00
소계	9	9.00	9.00	8.51	8.57



[그림 Ⅳ-2-25] 시설운영 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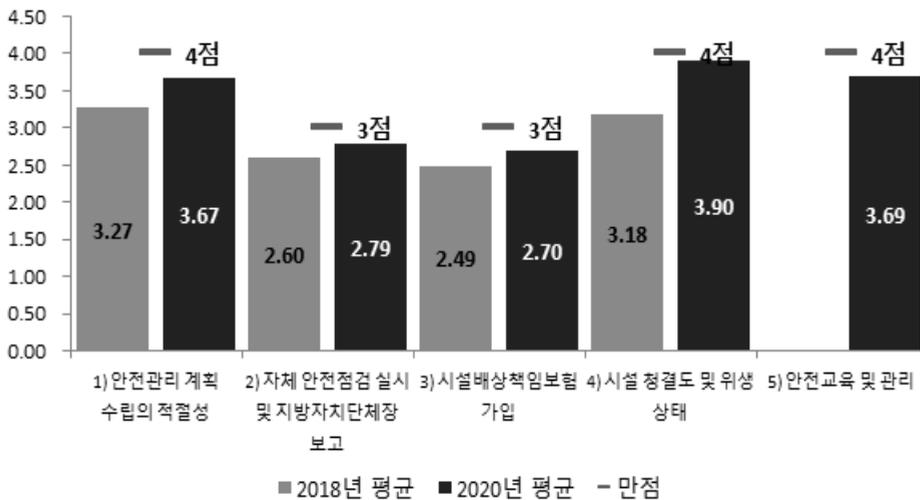
다. 안전 및 위생관리

○ 안전 및 위생관리는 총점 18점 중 평균 16.75점임.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의 평가결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2-30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4	3.27*	3.67
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3	2.60*	2.79
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3	2.49*	2.70
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4	3.18*	3.90
5) 안전교육 및 관리	4		3.69
소계	18		16.75

* : 2018년 평균 수치는 2020년과 같은 환산점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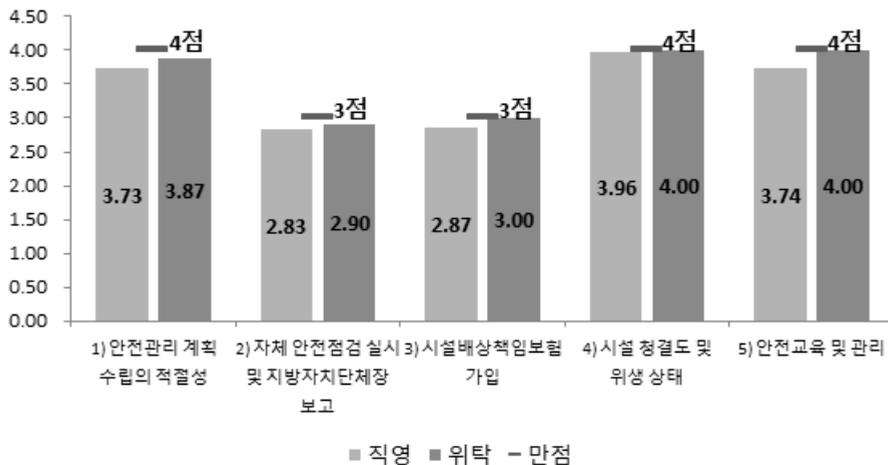
[그림 Ⅳ-2-26]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8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평균 17.13점, 위탁시설은 평균 17.77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서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도 모든 지표에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31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4	3.73	3.87
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3	2.83	2.90
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3	2.87	3.00
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4	3.96	4.00
5) 안전교육 및 관리	4	3.74	4.00
소계	18	17.13	1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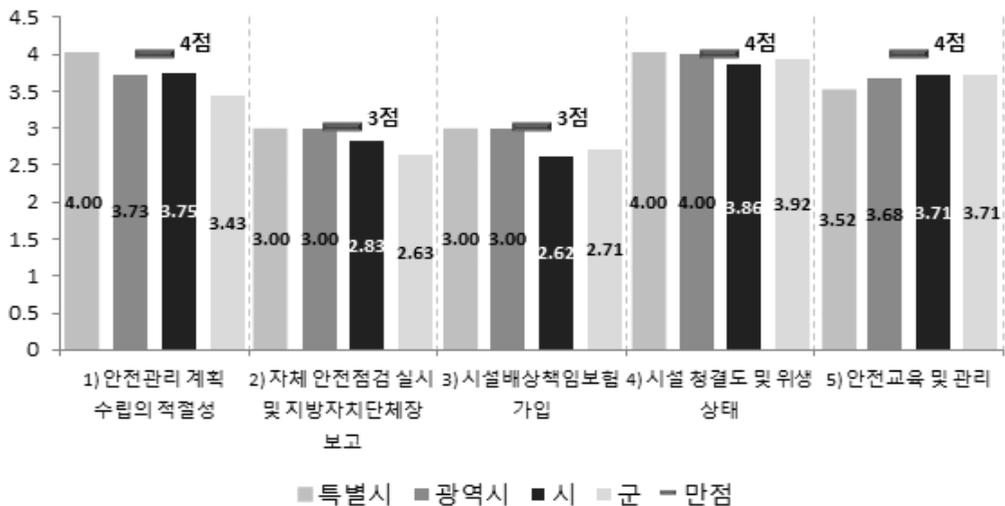
[그림 Ⅳ-2-27]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8점 만점에 특별시가 평균 17.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평균 17.41점), 시(평균 16.77점), 군(16.40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안전교육 및 관리 지표를 제외한 모든 세부 지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시와 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표-Ⅳ-2-32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4	4	3.73	3.75	3.43
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3	3	3	2.83	2.63
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3	3.00	3.00	2.62	2.71
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4	4.00	4.00	3.86	3.92
5) 안전교육 및 관리	4	3.52	3.68	3.71	3.71
소계	18	17.52	17.41	16.77	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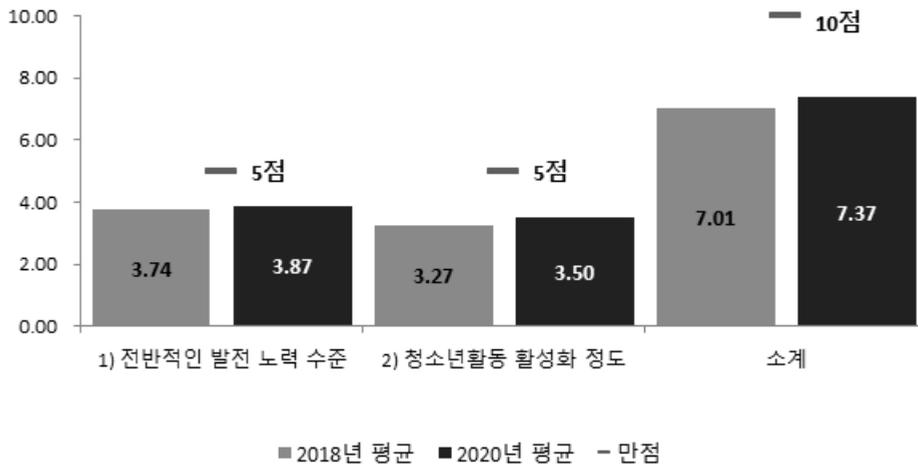
[그림 Ⅳ-2-28]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6) 시설운영 발전

- 시설운영 발전은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과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운영 발전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37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36점 증가하였음. 2018년도 평가결과에 비해서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은 평균 0.13점,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는 평균 0.2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2-33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3.74	3.87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3.27	3.50
소계	10	7.01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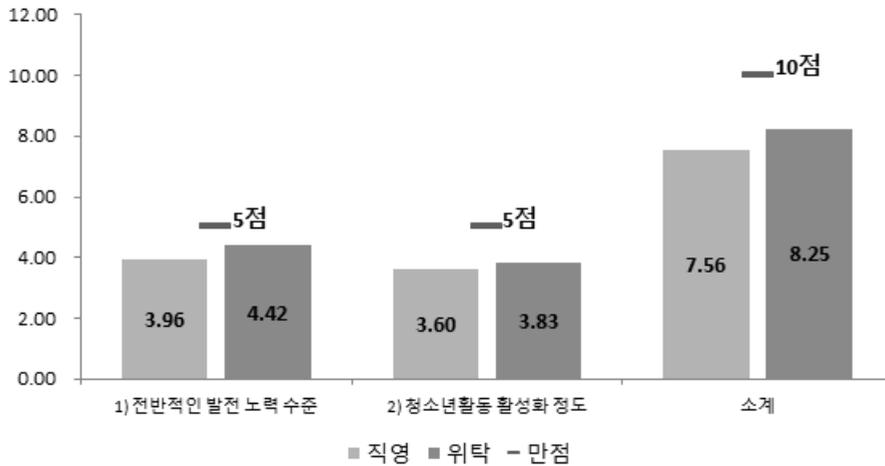
[그림 Ⅳ-2-29]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시설운영 발전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시설운영 발전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평균 7.56점, 위탁시설은 평균 8.25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해서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34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3.96	4.42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3.60	3.83
소계	10	7.56	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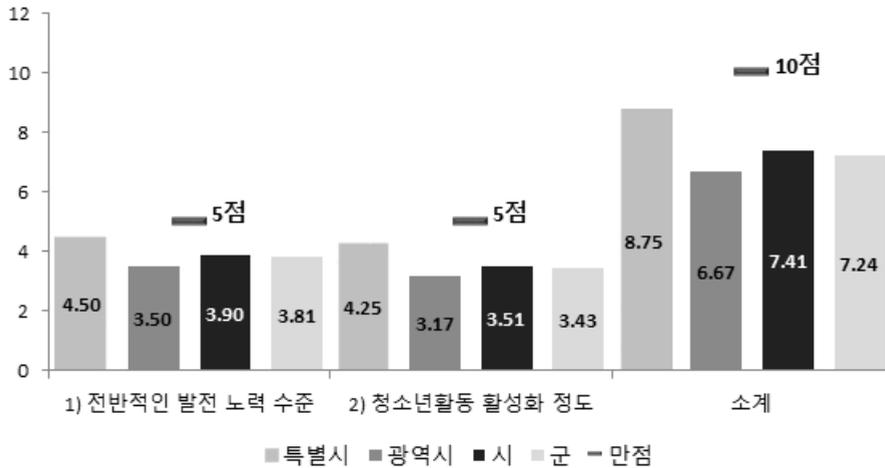
[그림 Ⅳ-2-30] 시설운영 발전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시설운영 발전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시설운영 발전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특별시가 평균 8.7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평균 7.41점), 시(평균 7.41점), 군(7.24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특별시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2-35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4.5	3.5	3.9	3.81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	5	4.25	3.17	3.51	3.43
소계	10	8.75	6.67	7.41	7.24



[그림 Ⅳ-2-31] 시설운영 발전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3 청소년야영장 평가결과

1)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평가등급별로 볼 때 전체 평가대상 25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은 10개소(40.0%)이며, 우수등급은 7개소(28.0%), 적정등급은 6개소(24.0%), 미흡등급과 매우미흡등급은 각각 1개소(4.0%)로 나타남.

표-Ⅳ-3-1 청소년야영장 평가등급별 기준 및 해당시설 수

구분		절대평가기준	시설 수
평가등급	최우수	90점 이상	10개소(40.0%)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7개소(28.0%)
	적정	70점 이상 ~ 80점 미만	6개소(24.0%)
	미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1개소(4.0%)
	매우미흡	60점 미만	1개소(4.0%)
	총계		

2) 시·도별 청소년야영장 평가결과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시·도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등급은 경기도가 5개로 가장 많고,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제주가 각각 1개였으며, 우수등급은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이 각각 1개씩인 것으로 나타남.

표-Ⅳ-3-2 시·도별 평가등급별 청소년야영장 수

시·도	등급					전체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강원	1	0	2	0	0	3
경기	5	1	0	0	0	6
경남	1	1	1	0	0	3
경북	1	1	0	0	0	2
부산	1	0	0	0	0	1
전남	0	1	2	0	1	4
전북	0	1	1	0	0	2
제주	1	1	0	0	0	2
충남	0	1	0	0	0	1
충북	0	0	0	1	0	1
전체	10	7	6	1	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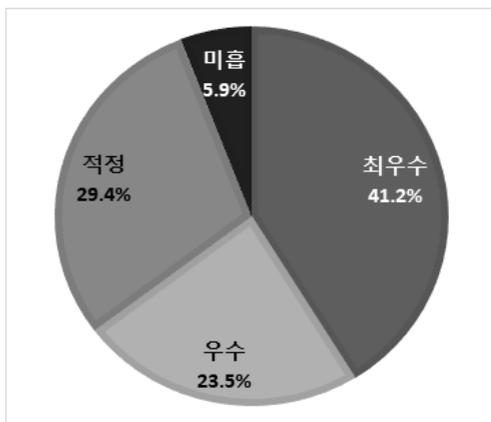
3)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결과

○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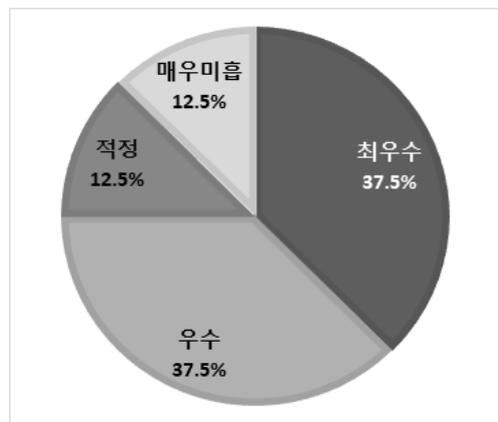
청소년야영장의 운영형태별 시설 수를 살펴보면, 25개 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32.0%(8개), 직영시설이 68.0%(17개)였음. 위탁시설 중에서 최우수시설 37.5%(3개), 우수시설 37.5%(3개), 적정시설 12.5%(1개), 매우미흡시설 12.5%(1개)임. 또한 직영 시설은 최우수시설 41.2%(7개), 우수시설 23.5%(4개), 적정시설 29.4%(5개), 미흡시설 5.9%(1개)로 나타남.

표-Ⅳ-3-3 청소년야영장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구분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	전체
직영	7	4	5	1	0	17
	41.2%	23.5%	29.4%	5.9%	0.0%	100.0%
위탁	3	3	1	0	1	8
	37.5%	37.5%	12.5%	0.0%	12.5%	100.0%
전체	10	7	6	1	1	25
	40.0%	28.0%	24.0%	4.0%	4.0%	100.0%



[직영]



[위탁]

[그림 Ⅳ-3-1] 청소년야영장 운영형태별 평가등급 비율

4)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1)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영역은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안전, 시설발전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야영장 평가의 전체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85.69점으로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평균 5.81점(8점 만점), 조직 및 인력은 평균 14.42점(17점 만점), 시설 및 안전은 평균 57.15점(65 만점), 시설발전 노력은 평균 8.32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각 평가영역을 100점 환산 점수로 볼 때,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평균 72.60점, 조직 및 인력은 평균 84.85점, 시설 및 안전은 평균 87.20점, 시설발전 노력은 평균 83.20점으로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가장 낮아 이 영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3-4 평가영역별 평가점수

평가영역	원점수			100점 환산점수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8	5.81	-2.19	72.60	-27.40
조직 및 인력	17	14.42	-2.58	84.85	-15.15
시설 및 안전	65	57.14	-7.86	87.90	-12.10
시설발전 노력	10	8.32	-1.68	83.20	-16.80
전체	100	85.69	-14.31		

○ 청소년야영장 전체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00점 환산 점수에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율(평균 61.60점), 시설발전 계획(평균 65.60점), 연간 시설 가동률(평균 64.00점)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낮아 이들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Ⅳ-3-5 청소년야영장 전체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원점수			백점환산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1.1. 청소년 이용실적	3	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1.85	-1.15	61.60	-38.40
1.2. 프로그램	5	1)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3.96	-1.04	79.20	-20.80
I.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8	5.81	-2.19	72.60	-27.40
2.1. 조직운영	6	1) 시설발전계획	3	1.97	-1.03	65.60	-34.40
		2) 시설홍보수준	3	2.66	-0.34	88.80	-11.20
2.2. 인력구성	11	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5	4.80	-0.20	96.00	-4.00
		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3	2.11	-0.89	70.40	-29.60
		3) 지도사의 윤리성	3	2.88	-0.12	96.00	-4.00
II. 조직 및 인력			17	14.42	-2.58	84.85	-15.15
3.1. 시설 및 설비 수준	17	1) 연간 시설 가동률	2	1.28	-0.72	64.00	-36.00
		2) 활동시설 설치여부	5	4.52	-0.48	90.40	-9.60
		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4.48	-0.52	89.60	-10.40
		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상태	5	4.76	-0.24	95.20	-4.80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원점수			백점환산	
			만점	점수	격차	점수	격차
3.2. 안전 및 위생관리	48	1) 대피시설 설치상태	6	5.66	-0.34	94.40	-5.60
		2) 비상설비 설치상태	6	4.85	-1.15	80.80	-19.20
		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6	5.04	-0.96	84.00	-16.00
		4)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6	4.75	-1.25	79.20	-20.80
		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6	5.23	-0.77	87.20	-12.80
		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6	5.52	-0.48	92.00	-8.00
		7) 안전교육 실시여부	6	5.23	-0.77	87.20	-12.80
		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6	5.81	-0.19	96.80	-3.20
Ⅲ. 시설 및 안전			65	57.14	-7.86	87.90	-12.10
4.1. 시설발전 노력	10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10	8.32	-1.68	83.20	-16.80
Ⅳ. 시설발전 노력			10	8.32	-1.68	83.20	-16.80
합계			100	85.69	-1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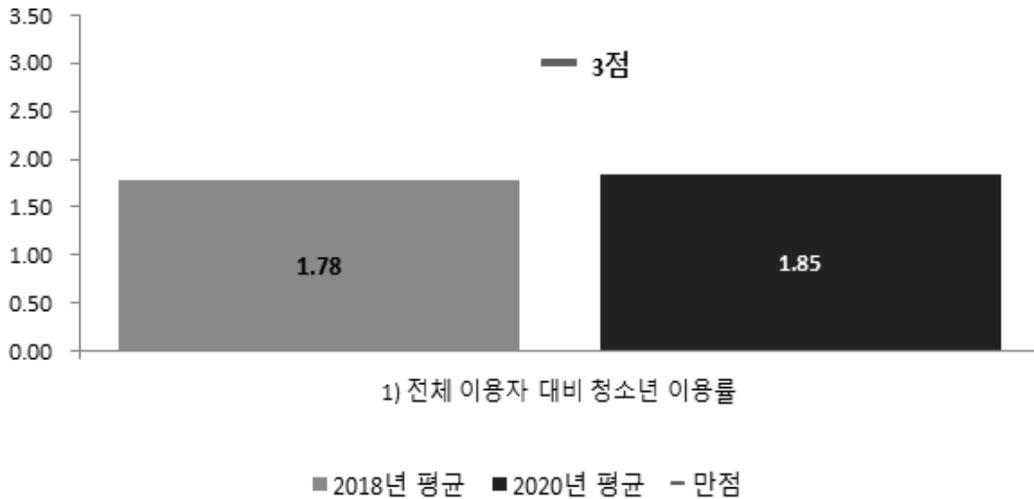
(2)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가. 청소년이용실적

- 청소년이용실적은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율을 지표로 구성하였음.
-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은 총점 3점 중 평균 1.85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 평균 1.78점에 비해서 평균 0.0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3-6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1.78	1.85
소계	3	1.78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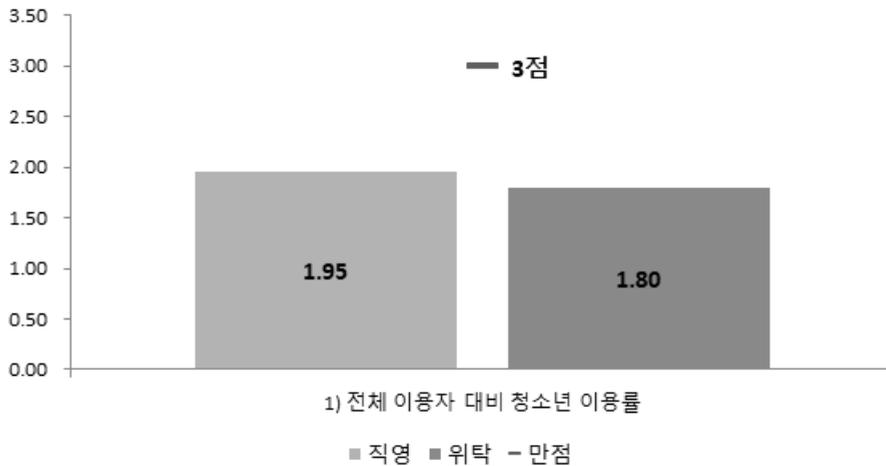
[그림 Ⅳ-3-2]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청소년이용실적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은 3점 만점에 직영시설이 평균 1.95점, 위탁시설이 평균 1.80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높게 나타남.

표-Ⅳ-3-7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1.95	1.80
소계	3	1.95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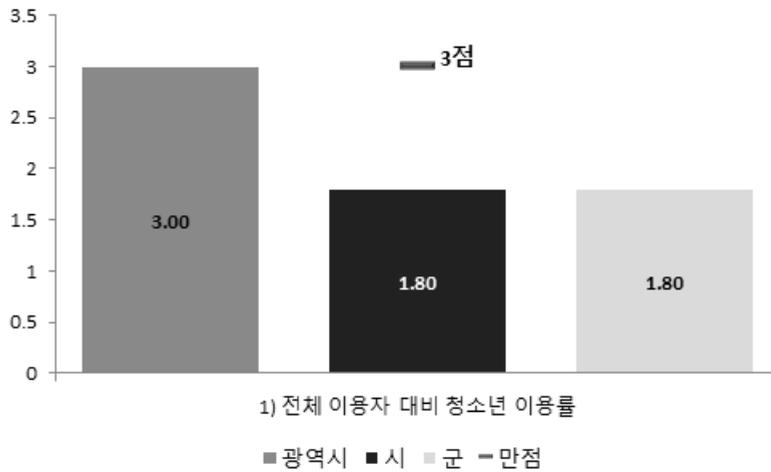
[그림 Ⅳ-3-3]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청소년이용실적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3점 만점에 광역시가 평균 3.00점으로 가장 높고, 시와 군이 각각 평균 1.80점으로 나타남.

표-Ⅳ-3-8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광역시	시	군
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	3.00	1.80	1.80
소계	3	3.00	1.8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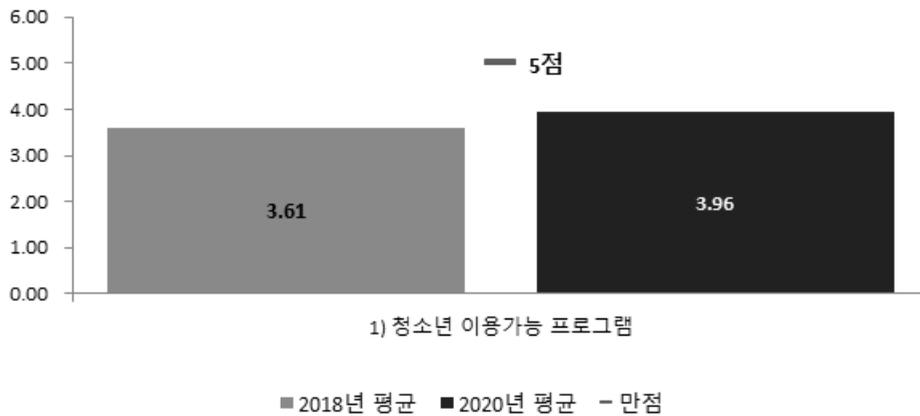
[그림 Ⅳ-3-4] 청소년이용실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나.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총점 5점 중 평균 3.96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3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IV-3-9 프로그램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3.61	3.96
소계	5	3.61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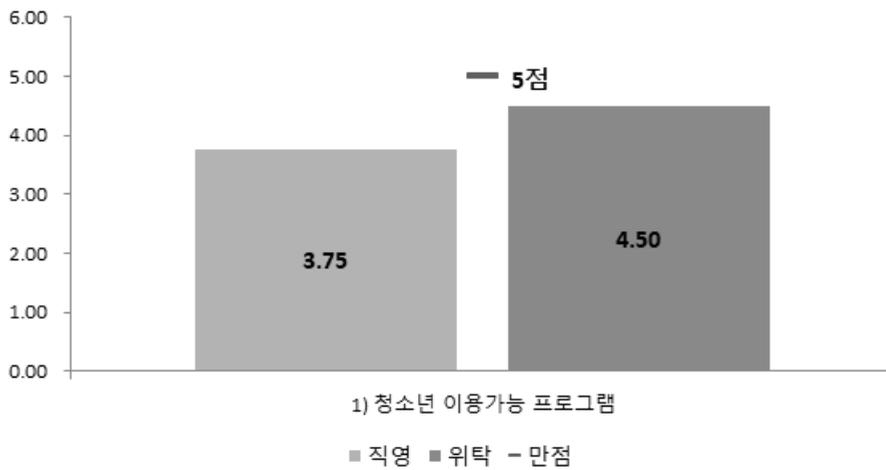
[그림 IV-3-5] 프로그램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직영시설이 평균 3.75점, 위탁시설이 평균 5.50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10 프로그램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3.75	4.50
소계	5	3.75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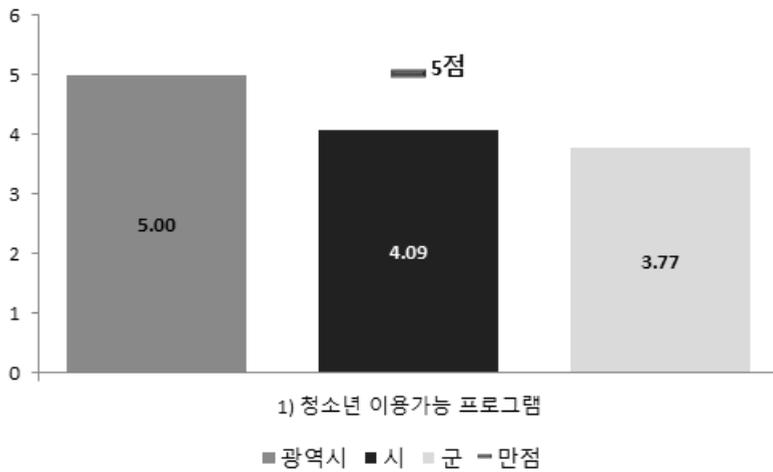
[그림 Ⅳ-3-6] 프로그램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기관 운영체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광역시가 평균 5.00점, 그 다음으로 시(평균 4.09점), 군(평균 3.77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3-11 프로그램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광역시	시	군
1)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5	4.09	3.77
소계	5	5	4.09	3.77



[그림 Ⅳ-3-7] 프로그램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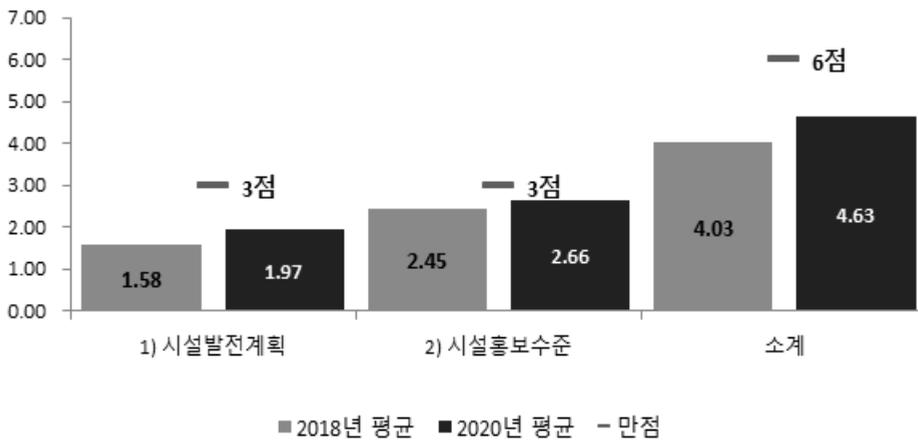
(3) 조직 및 인력

가. 조직운영

- 조직운영은 시설발전계획과 시설홍보수준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운영은 총점 6점 중 평균 4.63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 평균 4.03점에 비해서 평균 0.60점 증가하였음. 시설발전계획과 시설홍보수준 모두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3-12 조직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시설발전계획	3	1.58	1.97
2) 시설홍보수준	3	2.45	2.66
소계	6	4.03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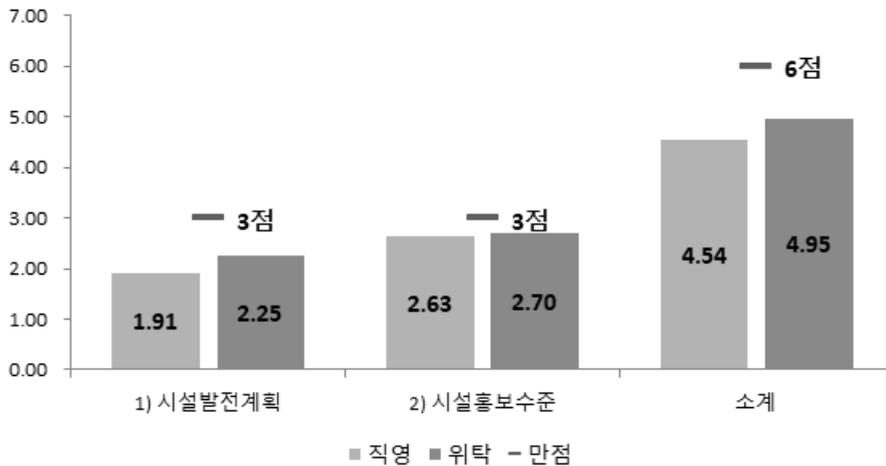
[그림 Ⅳ-3-8] 조직운영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조직운영

운영주체별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6점 중 직영시설이 평균 4.54점, 위탁시설이 평균 4.95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남. 세부지표에서도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13 조직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시설발전계획	3	1.91	2.25
2) 시설홍보수준	3	2.63	2.70
소계	6	4.54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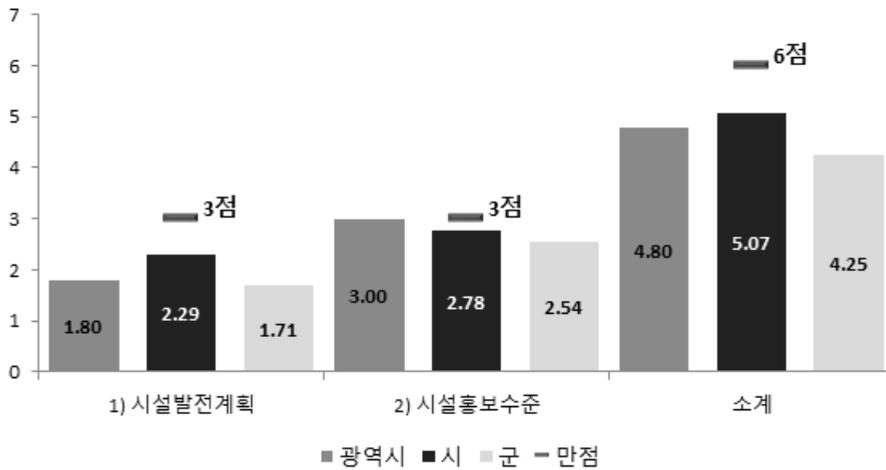
[그림 Ⅳ-3-9] 조직운영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조직운영

지역규모별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6점 중 시가 평균 5.0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평균 4.80점), 군(평균 4.25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지표별로는 시설발전계획은 시가 가장 높은 반면, 시설홍보수준은 광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14 조직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광역시	시	군
1) 시설발전계획	3	1.8	2.29	1.71
2) 시설홍보수준	3	3	2.78	2.54
소계	6	4.80	5.07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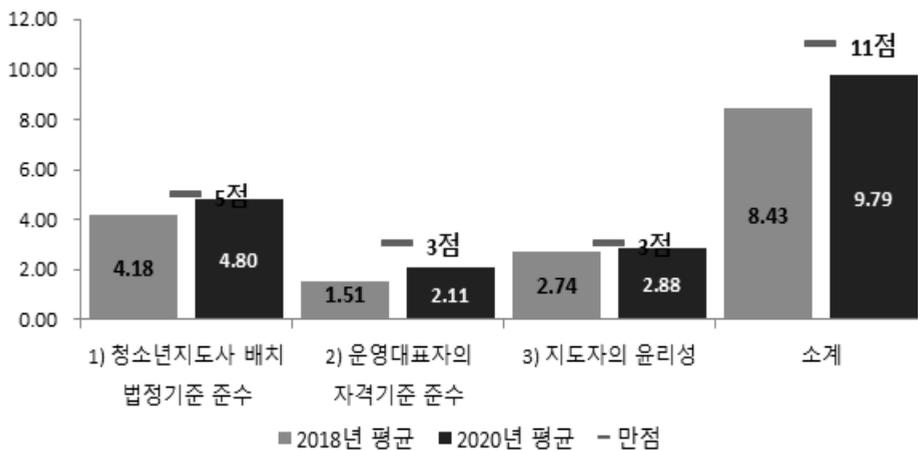
[그림 Ⅳ-3-10] 조직운영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나. 인력구성

- 인력구성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지도사의 윤리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인력구성은 총점 11점 중 평균 9.79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 평균 8.43점에 비해서 평균 1.36점 증가하였음. 세부지표별로도 모든 지표에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3-15 인력구성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5	4.18	4.80
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3	1.51	2.11
3) 지도사의 윤리성	3	2.74	2.88
소계	11	8.43	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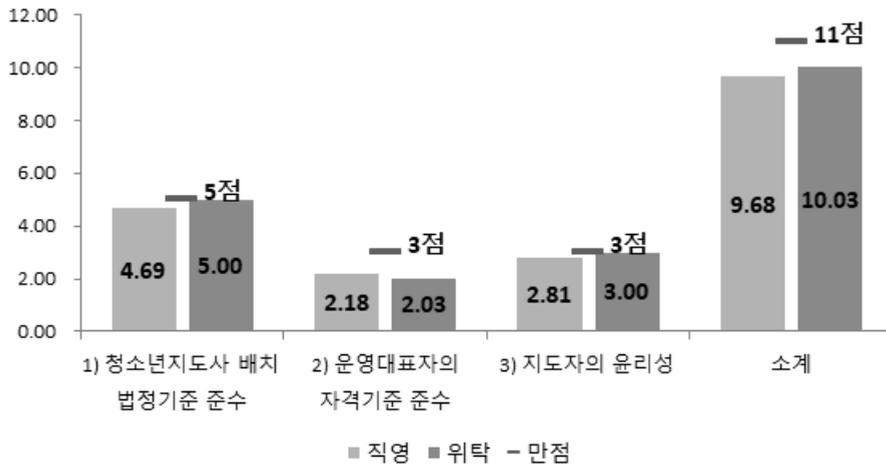
[그림 Ⅳ-3-11] 인력구성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인력구성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인력구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1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9.68점, 위탁시설은 평균 10.03점으로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음. 세부 지표별로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와 지도사의 윤리성은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반면,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는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16 인력구성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5	4.69	5.00
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3	2.18	2.03
3) 지도사의 윤리성	3	2.81	3.00
소계	11	9.68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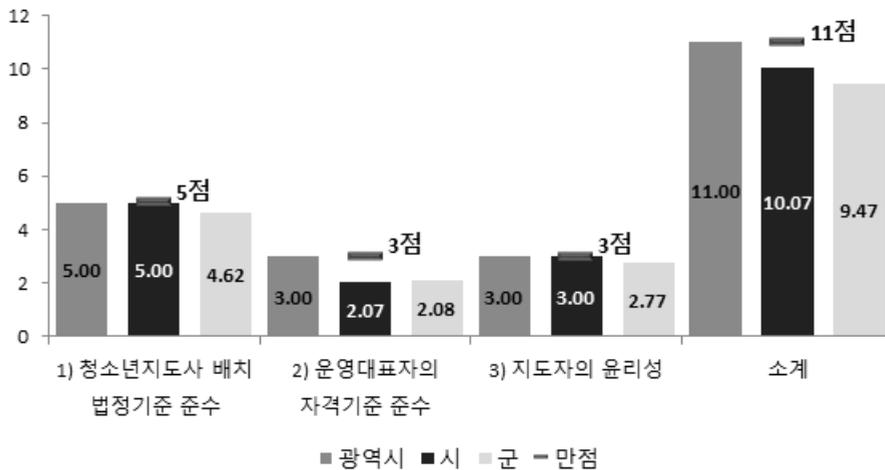
[그림 Ⅳ-3-12] 인력구성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인력구성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인력구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1점 만점에 광역시가 평균 11.0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평균 10.07점), 군(평균 9.47점)의 순임. 세부 지표별로도 광역시가 시, 군보다 높게 나타남.

표-Ⅳ-3-17 인력구성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광역시	시	군
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5	5	5	4.62
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3	3	2.07	2.08
3) 지도사의 윤리성	3	3.00	3.00	2.77
소계	11	11.00	10.07	9.47



[그림 Ⅳ-3-13] 인력구성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4) 시설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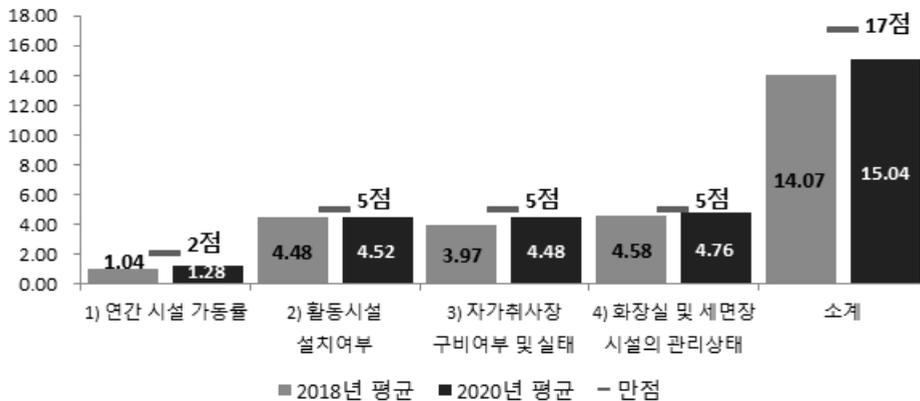
가. 시설 및 설비 수준

○ 시설 및 설비 수준은 연간 시설 가동률, 활동시설 설치여부,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상태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 및 설비수준은 총점 17점 중 평균 15.04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인 평균 14.07점에 비해서 평균 0.9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모든 지표에서 2018년도의 평가결과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3-18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연간 시설 가동률	2	1.04	1.28
2) 활동시설 설치여부	5	4.48	4.52
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3.97	4.48
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상태	5	4.58	4.76
소계	17	14.07	1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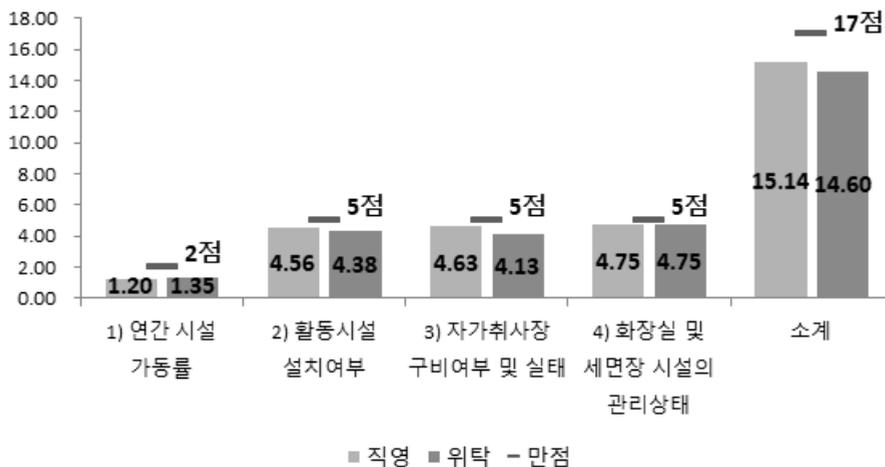
[그림 Ⅳ-3-14]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시설 및 설비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7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평균 15.14점, 위탁시설은 평균 14.60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활동시설 설치여부와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에서는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평가결과가 높았으나, 연간 시설 가동률에서는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평가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19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연간 시설 가동률	2	1.20	1.35
2) 활동시설 설치여부	5	4.56	4.38
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4.63	4.13
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상태	5	4.75	4.75
소계	17	15.14	1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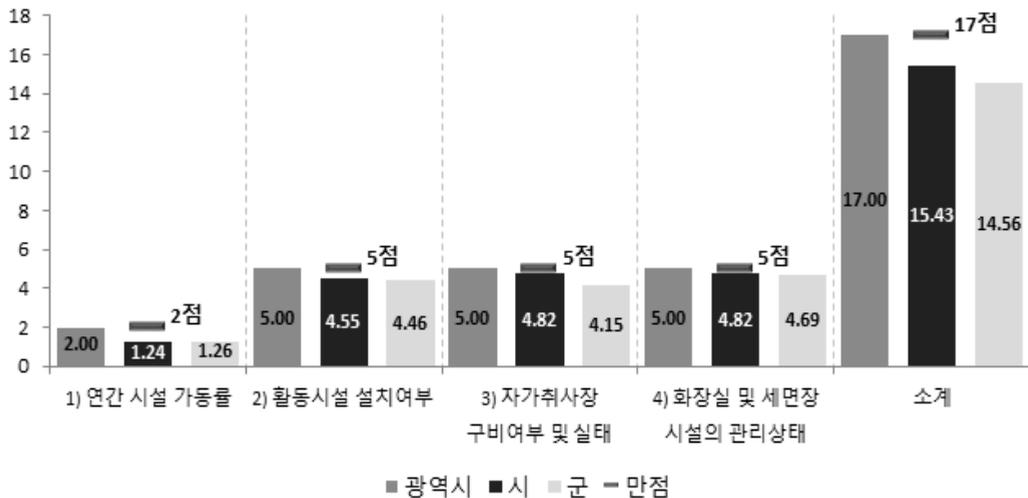
[그림 Ⅳ-3-15]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시설 및 설비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7점 만점에 광역시가 17.00점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평균 15.43점), 군(평균 14.56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광역시 시설이 시군의 시설에 비해서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20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광역시	시	군
1) 연간 시설 가동률	2	2	1.24	1.26
2) 활동시설 설치여부	5	5	4.55	4.46
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5.00	4.82	4.15
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상태	5	5.00	4.82	4.69
소계	17	17.00	15.43	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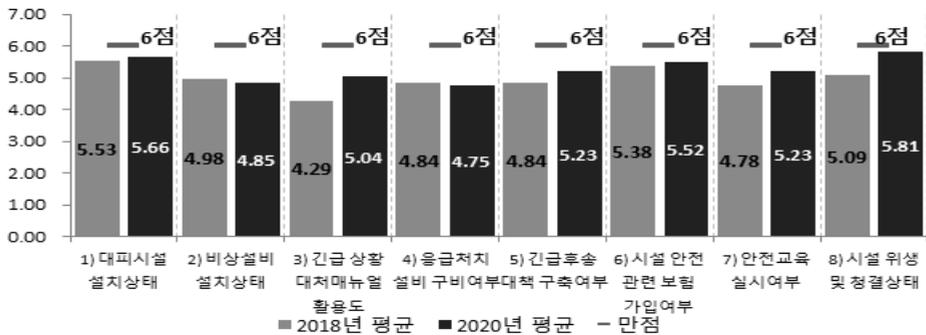
[그림 Ⅳ-3-16] 시설 및 설비 수준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나. 안전 및 위생관리

- 안전 및 위생관리는 대피시설 설치상태, 비상설비 설치상태,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의 지표로 구성됨.
-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는 총점 48점 중 평균 42.10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 에 비해서 평균 2.37점 높아짐. 세부 지표별로는 대피시설 설치상태,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는 2018년도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반면, 비상설비 설치상태와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는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3-21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대피시설 설치상태	6	5.53	5.66
2) 비상설비 설치상태	6	4.98	4.85
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6	4.29	5.04
4)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6	4.84	4.75
5)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6	4.84	5.23
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6	5.38	5.52
7) 안전교육 실시여부	6	4.78	5.23
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6	5.09	5.81
소계	48	39.73	4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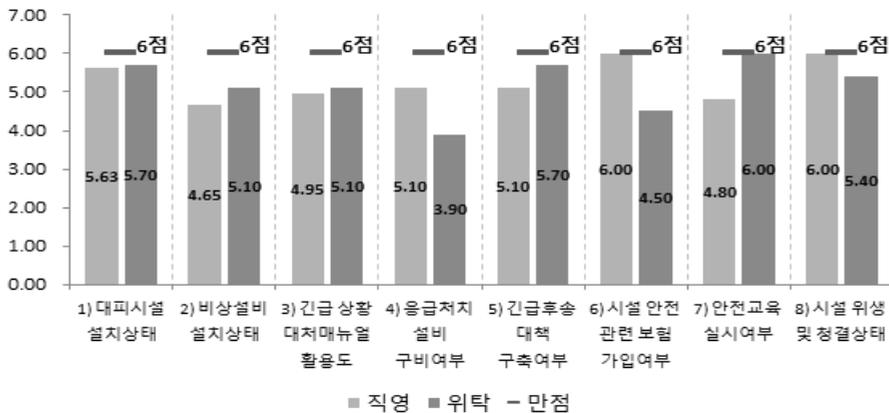
[그림 Ⅳ-3-17]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48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평균 42.23점, 위탁시설은 평균 41.40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는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반면, 대피시설 설치상태, 비상설비 설치상태,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안전교육 실시여부에서는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22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대피시설 설치상태	6	5.63	5.70
2) 비상설비 설치상태	6	4.65	5.10
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6	4.95	5.10
4)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6	5.10	3.90
5) 긴급후송 대책 구축여부	6	5.10	5.70
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6	6.00	4.50
7) 안전교육 실시여부	6	4.80	6.00
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6	6.00	5.40
소계	48	42.23	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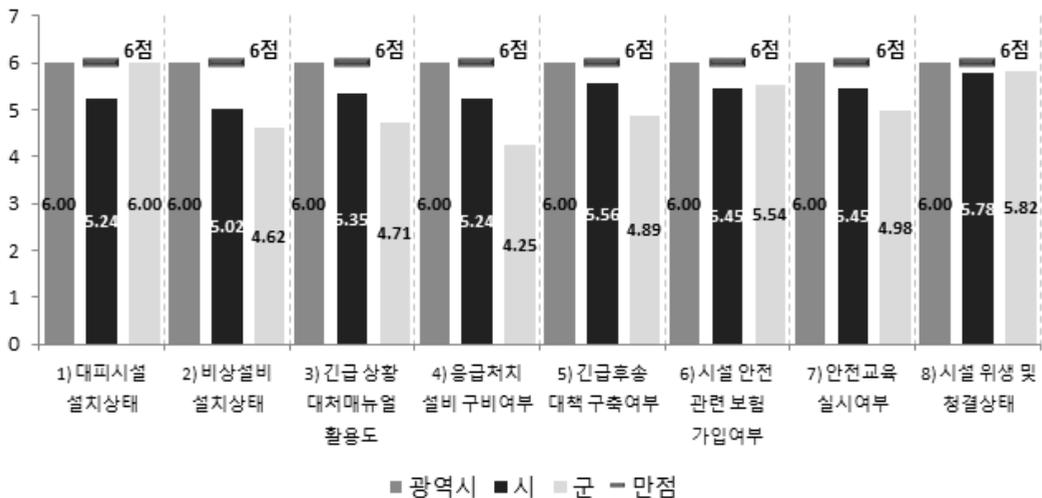
[그림 Ⅳ-3-18]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48점 만점에 광역시가 평균 48.0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평균 43.09점), 군(평균 40.81점)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광역시가 모든 지표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만, 대피시설 설치상태에서 군 지역은 광역시와 똑같이 평균 6.00점으로 나타남.

표-Ⅳ-3-23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광역시	시	군
1) 대피시설 설치상태	6	6	5.24	6
2) 비상설비 설치상태	6	6	5.02	4.62
3)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6	6	5.35	4.71
4)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6	6	5.24	4.25
5) 긴급후송 대책 구축여부	6	6.00	5.56	4.89
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6	6.00	5.45	5.54
7) 안전교육 실시여부	6	6.00	5.45	4.98
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6	6.00	5.78	5.82
소계	48	48.00	43.09	4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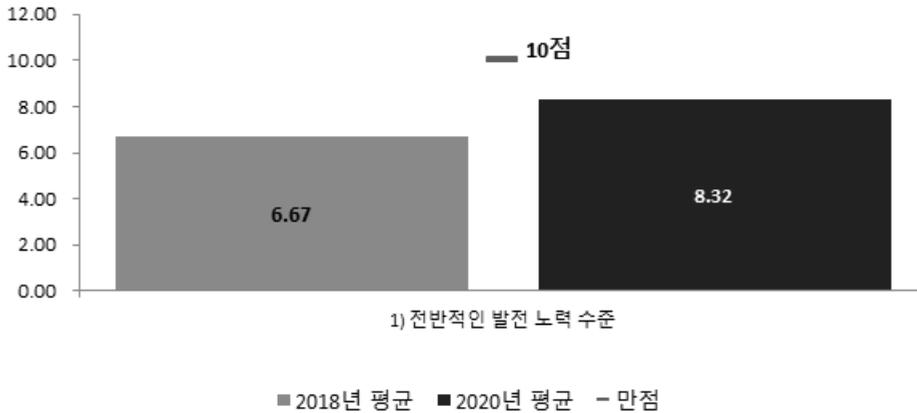
[그림 Ⅳ-3-19] 안전 및 위생관리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5) 시설발전 노력

- 시설발전 수준은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은 총점 10점 중 평균 8.32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1.65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Ⅳ-3-24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2018년 평균	2020년 평균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10	6.67	8.32
소계	10	6.67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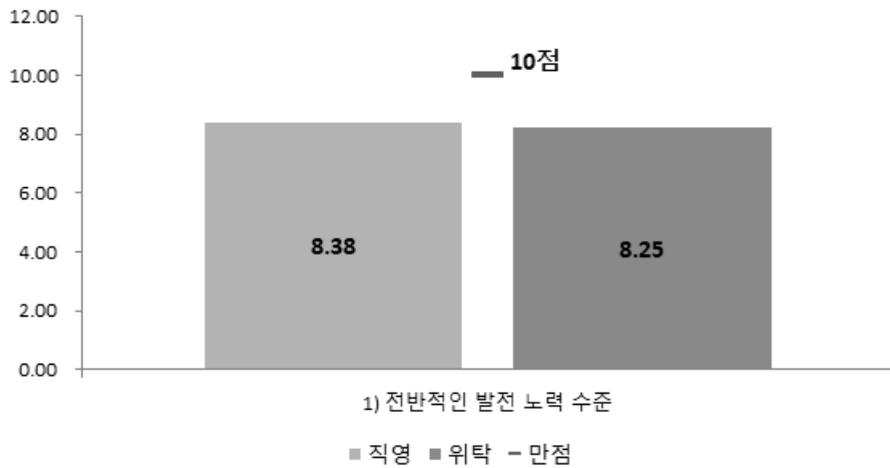
[그림 Ⅳ-3-20]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표별 평가결과

○ 운영주체별 시설발전 노력 평가결과

운영주체별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직영시설은 평균 8.38점, 위탁시설은 평균 8.25점으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Ⅳ-3-25 시설발전 노력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직영	위탁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10	8.38	8.25
소계	10	8.38	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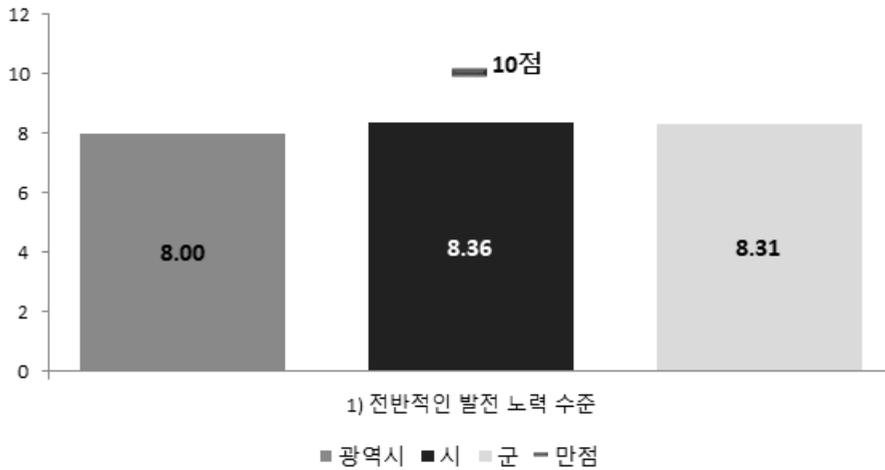
[그림 Ⅳ-3-21] 시설발전 노력 항목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지역규모별 시설발전 노력 평가결과

지역규모별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8점 만점에 시가 평균 8.3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평균 8.31점), 광역시(평균 8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3-26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지표	만점	광역시	시	군
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10	8	8.36	8.31
소계	10	8	8.36	8.31



[그림 Ⅳ-3-22] 시설발전 노력 항목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1 요약

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분석

(1) 청소년수련원

○ 평가대상 청소년수련원 개요

평가대상 청소년수련원은 전체 119개소로,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5개소(2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12.6%), 충북(10.1%), 전남(9.2%), 전북(8.4%), 강원(8.4%), 경북(8.4%), 충남(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별 현황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119개 청소년수련원 중 공공시설이 37.0%, 민간시설이 63.0%였음. 공공시설 중에서는 직영시설이 13.4%(16개소), 위탁시설이 23.5%(28개소)였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직영시설이 47.1%(56개소), 위탁시설이 16.0%(19개소)로 나타남.

○ 운영기간별 현황

111개 시설 중 5년 이하 시설이 2.7%(3개소), 6~10년의 시설이 25.2%(28개소), 11~15년의 시설이 16.2%(18개소), 16년 이상의 시설이 55.9%(62개소)로 16년 이상 된 청소년수련원이 과반수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탁기간별 현황

48개 시설 중에서 5년 이하가 37.5%(18소), 6~10년의 시설이 29.2%(14개소), 11~15년의 시설이 8.3%(4개소), 16년 이상의 시설이 25.0%(12개소)로 10년 이하의 위탁시설이 과반수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건물동수
청소년수련원의 건물 동 수는 최대 69개동이고, 최소 1개 동으로 평균 8.10개 동인 것으로 나타남.
- 부지면적
청소년수련원의 부지면적은 평균 86,462.7㎡이며, 최대 1,330,581.0㎡, 최소 4267.0㎡로 나타남.
- 연건축면적
청소년수련원의 연건축면적은 평균 9,040.0㎡이며, 최대 314,607.0㎡, 최소 981.9㎡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운영일수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운영일수는 2019년에 평균 267.8일로 2018년(268.0일)과 약간 적었으며, 최대 365일에서 최소 0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청소년이용자수는 2019년에 평균 34,7953.3명으로 2018년에 비해 38.5명 감소하였으며, 최대 589,769명에서 최소 0명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원의 직원 현황
2019년의 청소년수련원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32.1명이고 정규직 직원은 23.4명, 계약직 직원은 8.6명으로 나타남. 2018년에는 평균 32.8명이고, 정규직 직원 23.7명, 계약직 직원 8.9명으로 2019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원의 1급 지도사 수
2019년도 청소년수련원의 1급 지도사 수는 정규직이 평균 0.81명, 계약직이 0.04명임. 2018년에는 정규직이 평균 0.84명, 계약직이 0.01명으로, 2019년에 정규직 1급 지도사 수가 약간 감소한데 비해서 계약직 1급 지도사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원의 2급 지도사 수
2019년도 청소년수련원의 2급 지도사 수는 정규직이 평균 3.94명, 계약직이 0.33명임. 2018년에는 정규직이 평균 4.08명, 계약직이 0.35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정규직은 1.42명, 계약직은 0.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원의 3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수련원의 3급 지도자 수는 정규직이 평균 1.00명, 계약직이 0.21명 이고, 2018년도에는 정규직이 평균 0.88명, 계약직이 0.17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정규직인 0.12명, 계약직은 0.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유스호스텔

○ 평가대상 유스호스텔 개요

평가대상 유스호스텔은 전체 70개소로,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10개소 (1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과 제주가 각각 9개소(12.9%), 경기 8개소 (11.4%), 강원과 전남이 각각 6개소(8.6%), 충남 5개소(7.1%) 등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별 현황

유스호스텔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이 18.6%(13개소), 민간시설이 81.4%(57개소)로 민간시설이 공공시설보다 약 4배 정도 많았음. 공공시설 중에서는 직영시설이 10.0%(7개소), 위탁시설이 8.6%(6개소)였으며, 민간시설 중에서는 직영 시설이 72.9%(51개소), 위탁시설이 8.6%(6개소)로 나타남.

○ 운영기간별 현황

5년 이하의 시설이 21.0%(13개소), 6~10년의 시설이 25.8%(16개소), 11년~15년의 시설이 11.3%(7개소), 16년 이상의 시설이 41.9%(26개소)로 11년 이상의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위탁기간별 현황

5년 이하의 시설이 50.0%(6개소), 6~10년의 시설이 16.7%(2개소), 11년 이상의 시설이 33.3%(4개소)로 과반수 이상의 시설이 5년 이하의 위탁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 건물 동 수

유스호스텔의 건물 동 수는 2019년도에 평균 2.65개동이고, 최대 11개동, 최소 1개동이였으며, 2018년도에는 평균 3.03개동이고, 최대 25개동, 최소 1개동인 것으로 나타남.

- 부지면적
유스호스텔의 부지면적은 2019년에 평균 14,929.49㎡이며, 최대 170,042㎡, 최소 275㎡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평균 15,026.97㎡이며, 최대 170,042㎡, 최소 275㎡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평균 부지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연건축면적
유스호스텔의 연건축면적은 2019년에 평균 5,984.81㎡이며, 최대 85,541㎡, 최소 360㎡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평균 5,955.05㎡이며, 최대 85,541㎡, 최소 360㎡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평균 연건축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연간운영일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연간운영일수는 평균 310.73일로 2018년의 301.63일보다 약 8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9년도 최대 운영일수는 365일이고 최소 운영일수는 7일로 나타남.
-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청소년이용자수는 평균 20,822.52명으로 2018년도 이용자수 20,336.52명에 비해 4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9년도 청소년이용자수는 최대 252,932명, 최소 0명으로 나타남.
- 직원 현황
2019년 직원 현황은 평균 51.69명으로 2018년의 53.23명에 비해 1.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총인원 중에서 정규직은 2018년도에 평균 46.23명에서 2019년에 43.24명으로 약 3명 감소하였으며, 계약직은 2018년도에 평균 8.68명에서 2019년도에 8.56명으로 0.12명으로 감소하여 정규직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 1급 지도사 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1급 지도사 수는 정규직이 평균 0.15명, 계약직이 평균 0.03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3명 증가하였고, 계약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급 지도사 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2급 지도사 수는 정규직이 평균 1.47명, 계약직이 0.26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2명 증가하였고, 계약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급 지도사 수

2019년도 유스호스텔의 3급 지도사 수는 정규직이 평균 0.41명, 계약직이 평균 0.06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2명 증가하였으나, 계약직은 0.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청소년야영장

○ 평가대상 청소년야영장 개요

평가대상 청소년야영장은 전체 10개소로,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개소(2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남 4개소(16.0%), 강원과 경남이 각각 3개소(12%), 경북, 전북, 제주가 각각 2개소(8.0%)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별 현황

총 24개 시설 중 공공시설이 9개(27.5%), 민간시설이 15개(62.5%)로 민간시설이 공공시설보다 많았고, 직영시설이 16개소(66.7%), 위탁시설이 8개소(33.3%)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기간별 현황

5년 이하의 시설이 2개소(10.5%), 6~10년의 시설이 4개소(21.1%), 11~15년의 시설이 6개소(31.6%), 16년 이상의 시설이 7개소(36.8%)로 10년 이상의 시설이 약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탁기간별 현황

5년 이하의 시설이 3개소(30.0%), 6~10년의 시설이 3개소(30.0%), 11년 이상의 시설이 4개소(40.0%)로 나타남.

○ 건물동수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건물 동수를 살펴보면, 평균 5.68개동이고, 최대 29개동, 최소 1개동이며, 2018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남.

○ 부지면적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부지면적은 평균 43,750.23㎡이며, 최대 289,342㎡, 최소 4,140㎡로 2018년에 비해서 평균 부지면적이 100.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건축면적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연건축면적은 평균 1,375.44㎡이며, 최대 6,124㎡, 최소 160㎡로 2018년에 비해서 연건축면적이 평균 2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간운영일수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연간운영일수는 평균은 201.04일이며, 최대 365일, 최소 5일로 2018년에 비해서 연간운영일수가 평균 3.8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2019년 청소년야영장의 연간 청소년이용자수는 평균은 5,483.54명이며, 최대 41,460명, 최소 275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85.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직원 현황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4.57명이고 이중 정규직이 2.99명, 계약직이 2.26명으로 나타남. 2018년도에 비해서 총인원은 평균 0.3명 증가하였고, 정규직은 0.05명, 계약직은 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1급 지도자수는 정규직이 평균 0.29명, 계약직이 0명으로 2018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4명 증가하였으며, 계약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2급 지도자수는 정규직이 평균 0.88명, 계약직이 0.17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정규직은 0.04명 감소하였으나, 계약직은 0.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급 지도자 수
2019년도 청소년야영장의 3급 지도자수는 정규직이 평균 0.25명, 계약직이 0.25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계약직은 변화가 없고, 정규직은 0.1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 분석

(1) 청소년수련원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 평가등급별로 볼 때 전체 평가대상 119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은 83개소(69.7%)이며, 우수시설은 24개소(20.2%), 적정시설은 3개소(2.5%), 미흡시설은 4개소(3.4%), 매우미흡시설은 5개소(4.2%)로 나타남.

○ 시·도별 평가결과

- 시·도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등급의 경우에 경기지역이 1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11개), 충북(9개), 강원(8개)과 충남(8개), 충남(6개), 경북(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우수등급도 경기지역이 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4개), 충북(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 청소년수련원 운영형태별 시설수를 살펴보면, 전체 119개 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40.3%(48개), 직영시설이 59.7%(71개)였음. 위탁시설 48개 중에서 최우수시설은 70.8%(34개), 우수시설은 27.1%(13개), 적정시설은 0%(0개), 미흡시설은 2.1%(1개), 매우 미흡 시설은 0.0%(0개)임. 직영시설은 71개 중에서 최우수시설은 69.0%(49개), 우수시설은 15.5%(11개), 적정시설은 4.2%(3개), 미흡시설은 4.2%(3개), 매우미흡시설은 7.0%(5개)로 나타남.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영역은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운영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수련원 평가의 전체 평균총점은 100점 만점에 90.42점으로 운영 및 관리는 9.53점(11점 만점),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19.04점(21점 만점), 인사 및 조직은 25.10점(28점 만점), 시설 및 안전은 28.25점(30점 만점), 시설운영발전은 8.50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각 평가영역을 100점 환산 점수로 볼 때, 시설기준 및 안전이 94.1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90.68점), 인사 및 조직(89.66점), 운영 및 관리(86.59점), 시설운영발전(85.04점)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3.1.1. 직원확보의 수준(67.90점)이나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79.96점),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80.59점), 5.1.2.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82.35점)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운영 및 관리

- 기관 운영계획은 총점 4점 중 평균 3.21점으로 2018년의 평균 점수 2.95점에 비해서 평균 2.6점 증가하였음.
- 기관 운영체제는 총점 7점 중 평균 6.31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1.02점 높아져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은 평균 1.83점, 회계 관리의 체계성은 평균 3.58점, 시설의 홍보 수준은 평균 0.09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특히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 청소년이용은 총점 8점 중 평균 7.35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소폭(평균 0.0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지표별로는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은 평균 2.64점, 청소년의 안전관리는 평균 4.71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각각 평균 0.02점, 평균 0.03점 증가하였음.
- 프로그램 운영은 총점 13점 중 평균 11.7점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는 평균 3.70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평균 0.08점 증가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전문성도 평균 4.62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0.2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사 및 조직

- 직원 확보는 총점 13점 중 평균 11.09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 10.05점에 비해서 평균 1.04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직원확보는 직원확보의 수준은 평균 2.04점,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는 평균 4.66점,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는 평균 4.39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각각 평균 0.24점, 평균 0.22점, 평균 0.48점 증가하였음.
- 직원교육 및 복지는 총점 15점 중 평균 14.01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평균 0.3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2018년 평가에 비해서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은 평균 0.01점 감소한 반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와 직원의 복리후생은 각각 평균 0.22점, 평균 0.1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및 안전

- 시설환경은 총점 9점 중 평균 8.48점으로 2018년도의 8.39점에 비해서 0.09점 높게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는 시설기준은 평균 4.66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0.06점 감소한데 반해서 생활관의 쾌적성은 평균 3.92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0.1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관리는 총점 21점 중 평균 19.77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0.5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안전교육 및 관리 지표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 단체장 보고,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지표 점수는 2018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운영 발전

- 시설운영 발전의 총점 10점 중 평균 8.51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 8.31점에 비해서 0.19점 높음. 세부 지표별로도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2) 유스호스텔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 평가등급별로 볼 때 전체 평가대상 70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은 33개소(47.1%)이며, 우수등급은 17개소(24.3%), 적정은 8개소(11.4%), 미흡은 5개소(7.1%), 매우미흡은 7개소(10.0%)로 나타남.

○ 시·도별 평가 결과

- 시·도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등급의 경우에 경북이 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5개)과 제주(5개), 서울(4개), 충남(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우수등급의 경우에는 경남이 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3개), 경북(2개), 전남(2개), 전북(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우수시설 수만을 볼 때는 경북지역이 가장 많았으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최우수시설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 유스호스텔의 운영형태별 시설수를 살펴보면, 70개 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18.6%(13개), 직영시설이 81.4%(57개)였음. 위탁시설 중에서 최우수시설은 61.5%(8개), 우수시설은 15.4%(2개), 적정시설은 23.1%(3개)임. 직영시설은 최우수 시설이 43.9%(25개)였고, 우수시설은 26.3%(15개), 적정시설은 8.8%(5개), 미흡시설은 8.8%(5개), 매우 미흡시설은 12.3%(7개)로 나타남.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 평가영역은 운영 및 관리 체계,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 운영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유스호스텔 평가의 전체 평균총점은 100점 만점에 84.41점으로 운영 및 관리체계는 9.68점(14점 만점),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14.73점(18점 만점), 인사 및 조직은 10.67점(13점 만점), 시설 및 안전은 41.97점(45점 만점), 시설 운영 발전은 7.37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각 평가영역을 100점 환산 점수로 볼 때, 시설기준 및 안전이 평균 93.2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은 80점 대였으나 시설 운영 발전과 운영 및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남. 평가영역은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기준 및 안전, 대외협력 및 홍보,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유스호스텔 전체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에 대한 점수는 57.4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과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의 점수도 60점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회계관리의 체계성, 전체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연간 시설 가동률,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도 70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 나타남.

○ 운영 및 관리체계

- 기관 운영계획은 총점 3점 중 평균 1.97점으로 2018년도의 평균 1.71점에 비해서 0.26점 증가하였지만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은 평균 0.64점, 연간 운영계획의 체계성은 평균 1.33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각각 평균 0.10점, 평균 0.1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운영체계는 총점 11점 중 평균 7.71점으로 나타남. 2018년 평가 결과에 비해서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과 회계관리의 체계성 점수는 낮았고, 시설의 홍보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 청소년이용은 총점 13점 중 평균 10.35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88점 증가하였음. 세부 지표별로도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여행 지표는 총점 5점 중 평균 4.37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3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사 및 조직

- 직원확보 항목은 총점 6점 중 평균 4.53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1.07점 높았음. 세부지표별로도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원 운영은 총점 7점 중 평균 6.13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73점 높음.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와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모두 2018년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및 안전

- 시설관리영역은 총점 18점 중 평균 16.62점으로 2018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2.47점 증가하였음. 세부 지표별로도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운영 관리는 총점 9점 중 평균 8.60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0.8점 높아졌음. 세부 지표별로도 모든 지표에서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의 평가결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안전 및 위생관리는 총점 18점 중 평균 16.75점임.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의 평가결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시설운영 발전

- 시설운영 발전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37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36점 증가하였음. 2018년도 평가결과에 비해서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은 평균 0.13점,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도는 평균 0.2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청소년야영장

○ 평가등급별 기준 및 현황

- 평가등급별로 볼 때 전체 평가대상 25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은 10개소(40.0%)이며, 우수등급은 7개소(28.0%), 적정등급은 6개소(24.0%), 미흡등급과 매우미흡등급은 각각 1개소(4.0%)로 나타남.

○ 시·도별 평가등급

- 시·도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등급은 경기도가 5개로 가장 많고,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제주가 각각 1개였으며, 우수등급은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이 각각 1개씩인 것으로 나타남.

○ 운영형태별 등급별 시설 수

- 청소년야영장의 운영형태별 시설수를 살펴보면, 25개 시설 중에서 위탁시설이 32.0%(8개), 직영시설이 68.0%(17개)였음. 위탁시설 중에서 최우수시설 37.5%(3개), 우수시설 37.5%(3개), 적정시설 12.5%(1개), 매우미흡시설 12.5%(1개)임. 또한 직영시설은 최우수시설 41.2%(7개), 우수시설 23.5%(4개), 적정시설 29.4%(5개), 미흡시설 5.9%(1개)로 나타남.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결과 개요

- 평가영역은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안전, 시설발전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야영장 평가의 전체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85.69점으로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평균 5.81점(8점 만점), 조직 및 인력은 평균 14.42점(17점 만점), 시설 및 안전은 평균 57.15점(65 만점), 시설발전 노력은 평균 8.32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각 평가영역을 100점 환산 점수로 볼 때,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은 평균 72.60점, 조직 및 인력은 평균 84.85점, 시설 및 안전은 평균 87.20점, 시설발전 노력은 평균 83.20점으로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가장 낮아 이 영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야영장 전체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 100점 환산 점수에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평균 61.60점), 시설발전 계획(평균 65.60점), 연간 시설 가동률(평균 64.00점)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낮아 이들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은 총점 3점 중 평균 1.85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 평균 1.78점에 비해서 평균 0.0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은 총점 5점 중 평균 3.96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0.3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및 인력
 - 조직운영은 총점 6점 중 평균 4.63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 평균 4.03점에 비해서 평균 0.60점 증가하였음. 시설발전계획과 시설홍보수준 모두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인력구성은 총점 11점 중 평균 9.79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 평균 8.43점에 비해서 평균 1.36점 증가하였음. 세부지표별로도 모든 지표에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및 안전
 - 시설 및 설비수준은 총점 17점 중 평균 15.04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인 평균 14.07점에 비해서 평균 0.9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세부 지표별로도 모든 지표에서 2018년도의 평가결과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는 총점 48점 중 평균 42.10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2.37점 높아짐. 세부 지표별로는 대피시설 설치상태, 긴급 상황 대처매뉴얼 활용도, 긴급후송대책 구축여부,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는 2018년도 평가결과에 비해서 높아진 반면, 비상설비 설치상태와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는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시설발전 노력

-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은 총점 10점 중 평균 8.32점으로 2018년도의 평가결과에 비해서 평균 1.65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2 결론

-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 평가단 구성, 평가일정, 평가진행, 결과 평정, 기타 의견 순으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제시내용은 연구진 및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것임.

1)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

- 종합평가 의무화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나 현재 평가지표는 법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평가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음. 따라서 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과 같은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의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결과 등급이 우수이상(절대평가기준 점수 80점 이상)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평가기준 자체가 변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평가결과 최우수시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여 최우수시설이란 이름이 상징하는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점, 시설 평가 기준과 영역이 단순 평가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시설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드러내는 지표로서의 성격이 취약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이의 점진적 개선이 요구됨.
- 국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투자자로 설치·운영되는 수련시설을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공공시설처럼 관리하는 것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는 한계가 있음. 특히 법적기준 준수 이외에 회계(정보공개, 경영평가, 외부감사 등의 적용), 중장기발전계획, 연간사업계획 등의 지표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동일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향후 차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단 구성

- 현재 평가지표 체계에서는 평가단 구성(평가위원의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성 수준)에서는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음. 하지만, 평가위원 개인의 현장평가 진행방식이나 피평가자 대응방식 등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는 평가위원 설명회를 통한 안내, 현장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지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향후 현장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용이 원활하고, 현장 이해역량이 높은 평가위원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평가진행 후 평가단은 평가과정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사후 공유하고, 다음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축적하고 사례집 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일정

-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일정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잡기 어려운 특이성이 있었으며,
- 자연권시설의 특성상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고, 시설과 시설간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음. 시설별로 불가능한 일정들을 고려하다보면 평가일정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는 팬데믹의 극복과 함께 곧 개선될 것으로 보임.

4)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진행

- 실제 평가 진행시 자연권의 경우 비어있는 시설이나 현장에서 평가준비가 소홀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 외에도 가점 혹은 감점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지표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함.
- 평가 진행에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공공시설, 예를 들어 시청에서 행정업무처리하고, 현장은 시설만 관리 /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장에 문서가 없는 경우가 있음. 평가안내 공문 발송 시에 이런 시설에서는 평가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현장평가 장소에 비치하도록 안내가 필요함

- 평가진행시 이전 평가자와 점수가 다른 경우 현장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평가자 개인의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안내가 필요함

5)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 평정

- 평가대상 청소년수련시설 대부분이 최우수기관으로 평정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 장기적으로 현재의 평가결과 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숙박형 시설 평가등급이 시설존폐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여,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와 평정을 느슨하게 한 결과로 판단됨. 이를 개선하려면 숙박형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인증평가 형태(Pass or Non-Pass)를 도입할 수 있음.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를 법적 기준 유무에 따라 인증 형태로 전환하는 것임. 이 경우 인증된 시설을 대상으로 질적 평가를 통해 일정 수의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함. 둘째, 최우수기관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음. 최우수 기관이라는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도록 전체 평가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방안임. 셋째, 평가등급 축소임. 평가등급을 현재의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간략화하고, 평가인증시설에 약 60-70% 이상의 시설들이 분포될 수 있도록 정규분포에 초점을 맞추되, 미흡시설은 평정이 아닌 평가 후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우수시설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지표는 추후 개발하도록 하는 것임.

6) 기타 의견

- 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기회 확대 : 평가 후 지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들을 그렇지 못한 시설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2-3시간이라도 우수시설 중심의 컨설팅 혹은 지역별 사례 공유의 기회 제공

-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 :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 유스호스텔의 경우 기관운영의 체계성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특히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공공과 민간시설 분리 평가 고려 : 수련시설 평가체계를 당일형(생활권)과 숙박형(자연권),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평가목적, 방향, 지표, 평가방법 등) 구성
- 평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강화 :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연간운영계획 등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 강화 필요

연구보고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인 쇄 2021년 3월 12일

발 행 2021년 3월 1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 866-6384 대표 이호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